

청소년의 한 걸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 걸음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의정활동 보고서

2019. 3. ~ 2020. 2.



# CONTENST

## 인사말

발간사(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	04
격려사(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	05

##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소개

소개 .....	08
----------	----

## 외보

의정활동 .....	12
------------	----

## 행복의회 규정

1. 운영규정 .....	16
2. 윤리헌장 .....	24
3. 행동강령 .....	25

## 행복의회 의정활동 연형

1. 기초 지자체 중 전국 최초 후보 개인에게 투표하는 온라인 선거를 통한 선출직 의원제 시행 ..	28
1-1.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선거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	28
1-2. 2차 면접심사 및 청소년 선거 오리엔테이션 .....	28
1-3.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선거 운영 .....	30
1-4.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	31
1-5. 당선증 교부식 .....	32
1-6. 의제발굴 워크숍 .....	33
2. 국내·외 청소년 의회(참여기구) 네트워크 구축 .....	35
2-1. 국제 청소년 교류활동 .....	35
2-2. G4 청소년 정상회담 in 성남 .....	36
2-3. 교류 워크숍 .....	38
2-4. 성남시 청소년 토크콘서트 .....	39
2-5. 제안대회 설명회 및 모두의 참여 연합 워크숍 .....	41
2-6. 제3회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 in 성남 .....	43
2-7.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	44

3. 청소년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단 운영 .....	47
4.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책제안 추진 .....	48
4-1.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 정책주장대회 .....	51
4-2. 국민생각함 청소년·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	52
4-3.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53
4-4. 제4대 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	54
4-5. 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 .....	56
5. 지속적인 의제연구 및 제안을 통한 정책 반영 .....	58
6. 역량 및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 구성·운영 .....	60

### 정책제안

조례 제안	1. 성남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64
	2. 성남시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70
	3. 성남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 점포 점자메뉴판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	75
	4. 성남시 청소년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79
	5. 성남시 청소년 인권 조례 .....	88
	6.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101
	7.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	106
	8.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12

정책 제안	1.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 .....	117
----------	----------------------	-----

자유 발언	1.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제안 (성남시 중·고등학교 건강매점 설치 및 아침 간편식 제공) .....	128
	2. 성남시 어린이집 성 관련 사건과 제도적 해결 방안 .....	135

### 행복의외전제 회의록

회의록 .....	138
-----------	-----

### 부록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현황 .....	170
--------------------------------	-----



발간사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대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의장 김대희입니다.

먼저 지역 청소년들을 대표하고 의견을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늘 노력해주신 행복의회 의원님들과 그 행복의회를 늘 응원해주시고 커다란 버팀목이자 깊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선생님들, 지역 청소년들과 행복의회를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쏟아주신 성남시의회 의원님들과 성남시청 관계자님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읽고 계신 이 보고서는 제4대 행복의회의 지난 1년간의 활동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담긴 활동들에 행복의회 의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서려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고, 시민이 시장인 성남시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달려온 한해였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과 ‘성남시 청소년 인권 조례’를 비롯한 다양각색의 청소년 정책과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와 같은 청년 정책부터 ‘길거리 흡연부스 증설’과 같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까지, 행복의회에서 최대한 다양한 연령과 많은 시민들의 고민과 불편함을 듣고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과 함께 대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세계적으로 견문을 넓혔고, 이러한 교류 활동들이 이번 4대 행복의회의 정책의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이 있었기에 행복의회가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9년은 행복의회를 비롯한 청소년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해였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한 만 18세 선거권으로부터, 앞으로의 청소년들은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막중해진 선택의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청소년계의 크나큰 발전에 맞춰, 행복의회도 더욱 확실한 대표성과 중대한 임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차기 행복의회 의원 선거에 오프라인 투표를 도입했습니다. 강화된 선거 과정을 통해 더욱 뚜렷한 대표성을 가진 행복의회가 되리라 자신합니다.

더욱 민주적인 성남시를 위해, 앞으로 발전해 나갈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해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분들께 크나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복의회도 그 관심에 부응하여 더욱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02.22.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김대희

격려사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반갑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은수미입니다.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정활동 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시민이 시장인 성남’ 구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주신 청소년 의원 여러분의 귀중한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1년간 성남시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깨어있는 시민으로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주신 덕분에 우리시가 진정한 시민자치 사회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4대 행복의회는 청소년 선거 제도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보장하고, 국내를 넘어 국외 청소년 의회들과 교류하는 등 활동의 영역을 확장한 바 있습니다.

또 토크콘서트, 정책제안대회, 참여예산, 본회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 실현을 위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펼쳐오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 의견수렴, 의제 발굴과 연구, 정책 제안 등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민주시민 역량을 향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의 경험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지역의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일련의 소통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역량이 향상되는 귀중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 문제에 대한 청소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는 청소년 관련 현안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바쁜 학업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성남시와 청소년들을 위한 귀중한 활동을 이어간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힘찬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02.22.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은수미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행복의회 소개**





##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소개

### 01 “행복의회”란?

성남시 청소년의 교육, 환경, 인권, 행복 등 청소년과 관련된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정책참여 기구입니다.

### 02 추진경과(History)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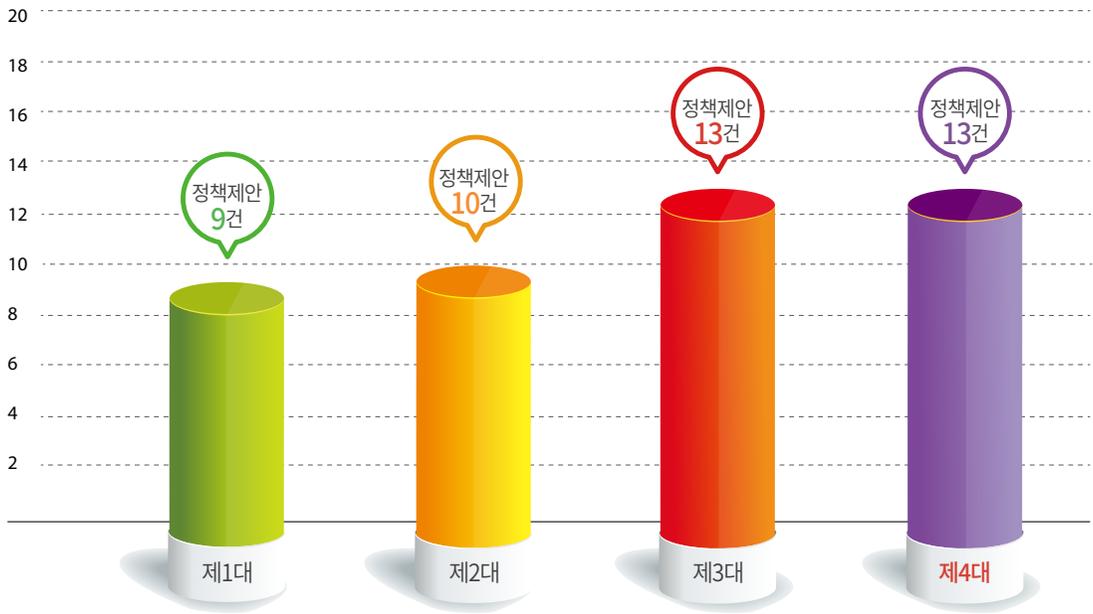
• 연혁

일정	추진내용
2014. 11. 10.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조례 제정(성남시조례-제2812호)
2015. 5. 1.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위탁 협약 체결(성남시)
2015. 7. 1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제1대 청소년의원 위촉(40명)
2015. 11. 7. ~ 11. 8.	성남시 청소년 제안주간 주관
2016. 5. 7.	성남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실시(의정활동 자문)
2016. 5. 17.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본회의 개최(조례2건, 의안7건)
2016. 8. 10.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실시(김병욱 의원 초청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6. 10. 29. ~ 11. 5.	2016. 청소년제안주간(정책 제안대회) 주관 운영(홍보, 사전준비 등) 청소년 100인 포럼 및 정책 제안대회 운영
2016. 11. 12.	제7회 전국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참가(경기도 교육감상 수상)
2017. 1. 10.	제1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해단식
2017. 3. 11.	제2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위촉(31명)
2017. 5. 27.	청소년 사회참여 “토크 콘서트” 개최(청소년 정책제안활동)
2017. 8. 25.	“성남시 시민참여 예산”에 대한 청소년 참여방안 및 예산 심의권 제안 성남시 예산법무과 방문(의견전달)
2017. 11. 4.	제3회 성남시 청소년정책제안포럼 운영
2017. 11. 11.	제7회 성남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운영
2017. 12. 20.	제2대 행복의회 “본회의” 운영(조례4건 등 총 10건 정책제안)
2018. 2. 24.	제2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해단식
2018. 3. 10.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위촉(28명)
2018. 5. 11. ~ 5. 15.	성남시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공약제안서 전달(귀갓길 안전 등 4건)
2018. 5. 19.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 토크콘서트&원탁토의 「지금 말하러 갑니다」 개최
2018. 5. 24.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참가, 우수정책제안상 수상
2018. 6. 21.	성남시 시민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 은상 수상
2018. 8. 8.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청소년참여예산제 관련
2018. 9. 1.	제3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포럼 운영
2018. 9. 12.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의 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등 7건)

2018. 11. 10.	제8회 성남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운영
2018. 12. 21.	제3대 행복의회 “본회의” 운영(조례7건 및 정책 1건 등 8건 정책제안)
2019. 2. 15.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해단식
2019. 3. 16.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당선증 교부(34명)
2019. 8. 17.	성남시 청소년 토크콘서트 참여
2019. 10. 23.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운영
2019. 11. 9.	제9회 성남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운영 및 정책제안서 전달
2019. 12. 20.	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 운영(조례8건 및 정책 1건 등 9건 정책제안)

• 추진성과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책제안 추진





##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소개



지속적인 의제연구 및 제안을 통한 정책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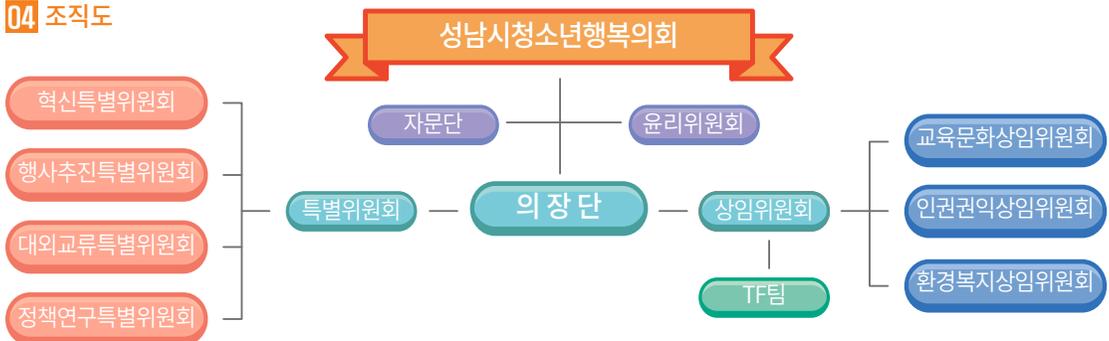


### 03 운영방향/내용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은수미)이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권역/교급별로 균등한 비율로 선발된 청소년 의원들이 각각 교육·문화, 환경·복지, 인권·권익 등 3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현안논의뿐 아니라 행복의회 내에서의 자치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내 운영을 위하여 혁신, 대외교류, 행사추진, 미디어 특별위원회 등 총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유연성 있게 관리하여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 04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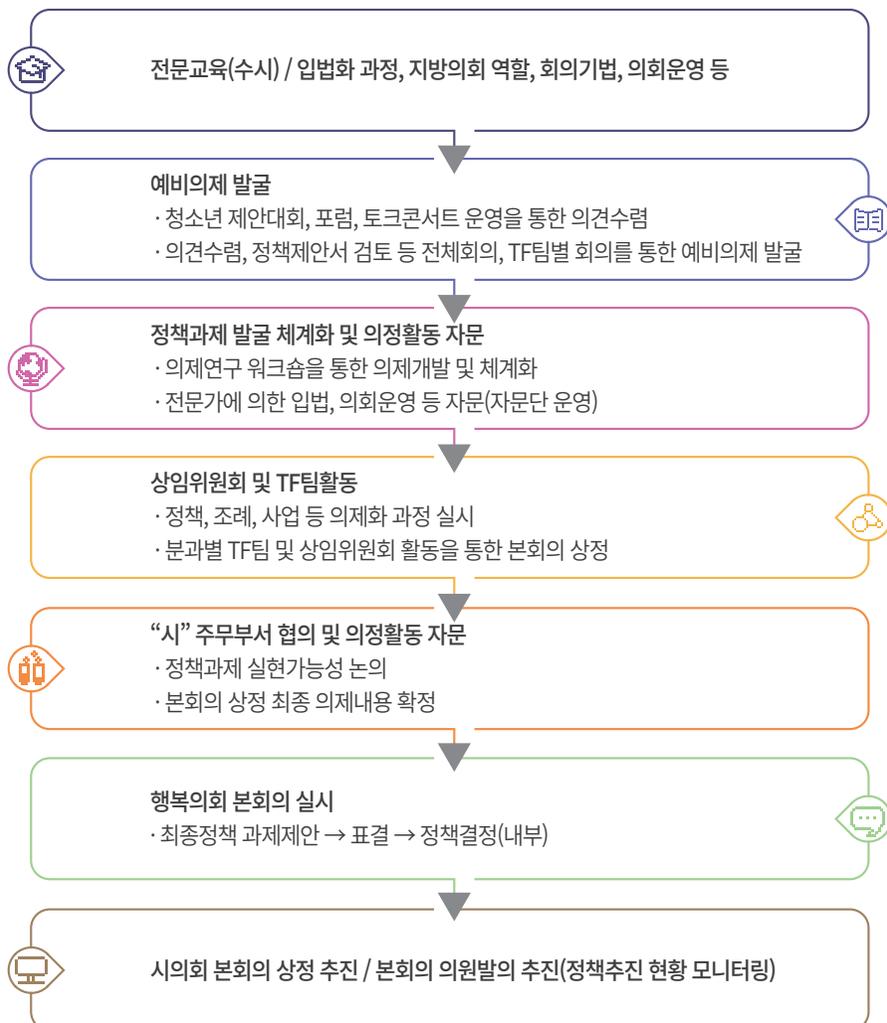


### 05 역할

- 성남시 청소년 대표활동 및 청소년정책제안, 모니터링
- 성남시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및 시정 정책 반영
- 성남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예산, 입법제안
- 성남시 청소년 의견수렴 및 현안조사

- 성남시 청소년 제안대회, 원탁토론회 개최 등 청소년 참여의 장 발굴
- 상임위원회 활동
  - 교육문화·인권권익·환경복지 분야에 관한 사안심의
- 특별위원회
  - 혁 신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규정 검토 및 보완, 평가주관
  - 행사추진 : 청소년 제안축제 추진 운영, 사회참여 관련대회 참여 등
  - 대외교류 : 타 시도 교류, 관내 중·고 학생회 교류 등
  - 정책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창구 운영 및 관리 등
- 윤리위원회 : 의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심사
- TF팀 :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의제 발굴 및 연구, 정책제안

## 06 운영절차(정책반영)



# 제4대 의정활동 화보

기초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개인에게 투표하는 온라인 선거를 통한 선출직 의원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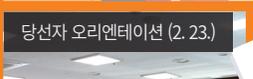
선거 프로빌 촬영 (1. 19.)



청소년 선거 오리엔테이션 (1. 19.)



당선증 교부식 (3. 16.)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2. 23.)



당선증 교부식 (3. 16.)



의제발굴 워크숍 (3. 16~17.)

제4대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의제발굴 워크숍



## 국내·외 청소년 의회 (참여기구) 네트워크 구축



G4 청소년 정상회담 in 성남(7.26.)



국제 청소년 교류활동(6.24.)



교류 워크숍(7.26~27.)



성남시 청소년 토크콘서트(8.17.)



제안대회 설명회(8.31.)



모두의 참여 연합 워크숍(8.31.)



제3회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 in 성남(10.31.)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11.9.)

청소년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단 운영



제4대 행복의회 자문단 위촉식(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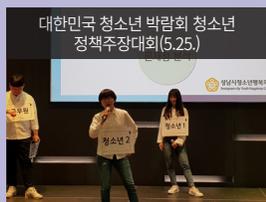
제4대 행복의회 자문단 위촉식(3.16.)



제4대 행복의회 자문단 위촉식(3.16.)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책제안 추진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  
정책주장대회(5.25.)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  
정책주장대회(5.25.)



제4대 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10.23.)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  
정책주장대회(5.25.)



제4대 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10.23.)



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12.20.)



제4대 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10.23.)



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  
(12.20.)



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12.20.)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행복의회 규정**



02

2015. 8. 1. 제정	2017. 6. 10. 6차 개정
2015. 8. 15. 1차 개정	2017. 10. 14 7차 개정
2016. 6. 4. 2차 개정	2018. 5. 12. 8차 개정
2016. 8. 6. 3차 개정	2018. 11. 24. 9차 개정
2016. 12. 10. 4차 개정	2019. 1. 12. 10차 개정
2017. 5. 13. 5차 개정	2019. 4. 20. 11차 개정

## 0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규정 [시행 2015.8.1.] [2015.8.1. 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의회는 “성남시 청소년 행복 의회”(이하 “행복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5. 8. 15.>

#### 제2조(소재)

행복의회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둔다.

#### 제3조(목적)

- ① 행복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규정은 행복의회의 조직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역할)

- ① 성남시 청소년 대표 활동 및 청소년 정책제안, 모니터링 등
- ② 성남시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및 시정 정책 반영
- ③ 성남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예산, 입법 제안
- ④ 성남시 청소년 의견수렴 및 현안조사
- ⑤ 성남시 청소년 제안대회, 원탁토론회 개최 등 청소년 참여의 장 발굴

#### 제5조(지위)

- ① 성남시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지위
- ② 성남시의 청소년 대표로서의 지위

### 제2장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의원

#### 제6조(자격) <개정 2016. 6. 4.> <개정 2016. 8. 6.> <개정 2019. 4. 20>

행복의회 의원의 자격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14세~19세)으로 활동할 수 있다.

#### 제7조(구성)

행복의회 의원은 시 관내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고, 연령이나 거주 지역 및 성별 등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6. 8. 6.>

- ① 행복의회란 성남시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0>
- ②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8. 15.> <개정 2019. 4. 20.>

**제8조(임기)**

-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행복의회 제1대 청소년의원의 경우, 조례에 의거한 모집시기가 5월경이므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설정하도록 한다.

**제9조(의원의 자격상실)**

의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행복의회 의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제명·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0>
  - 1. <삭제 2019. 4. 20.>
  - 2.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에 대해서 참가율이 저조한 자 <개정 2016. 8. 6.>
  - 3. 범죄, 의회 명의를 활동 등으로 의회의 명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정활동 보고서 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자
  - 4. 이 외의 다른 사항에 관한 것은 윤리 위원회 판단규정, 운영규정 등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4. 20.>
-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불참 시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6. 12. 10.>
  - 1. 불참사유에 따른 불참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의원들의 불참사유서 및 증빙자료들을 보관·관리하여 해당 의원의 윤리위원회가 소집될 시 판단의 근거로서 참고한다.
- <삭제 2016. 12. 10.>
- ③ 의원 본인이 제명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9. 4. 20.>
- ④ 제3항에 따른 “제명 의사”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사임한다. <개정 2019. 4. 20.>
  - 1.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하게 사임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2. <삭제 2016. 12. 10.>
- ⑤ 그 외 지침 사항 <개정 2017. 6. 10.> <개정 2018. 5. 12.>
  - 1. <삭제 2017. 6. 10.>
  - 2. 본회의,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 5분 전 입실을 원칙으로 한다.
  - 3. 개인적 사유에 의해 불참할 시에는 회의 개의 최소 1일 이전, 윤리위원회에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5. 12.>
  - 가. 의원은 불참 이후 7일 이내에 자신이 불참한 회의에 대한 불참증빙서류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2.>
  - 4. 단, 질병으로 인한 불참 시에는 다음을 따른다.
    - 가. 의원은 회의 개의 익일 오전 12시까지 윤리위원회에 불참을 공지한다.
    - 나. 약 복용기간이 개의 날짜에 포함될 경우 질병에 의한 불참으로 간주한다.
    - 다. 전염성이 있는 질병 혹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하는 중증 이상의 질병일 경우, 의원은 다음 회의 폐의까지 불참증빙서류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의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6. 12. 10.>**

- ① 성남시 청소년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알 의무를 가지며, 그에 따른 의견 반영 및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 ② 행복의회의 의원은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발언권 및 결의권을 가지며 본 의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③ 행복의회의 의원은 본 의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④ 행복의회의 의원은 본 의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의무를 가진다.
- ⑤ 행복의회의 의원은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본 의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 ⑥ 행복의회의 의원은 합법적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떤 불이익과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⑦ 행복의회의 의원은 사상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 ⑧ 행복의회의 의원은 의회 활동에 불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불참할 경우에는 불참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6. 12. 10.>

제11조(의원의 표창) <개정 2016. 8. 6.>

의원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성남시, 성남시청소년재단, 행복의회 윤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① 행복의회는 의장, 고등부의장, 중등부의장, 서기, 교육문화상임위원장, 인권권익상임위원장, 환경복지상임위원장 혁신특별위원장, 대외교류특별위원장, 정책연구특별위원장, 행사추진특별위원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5. 8. 15.> <개정 2016. 6. 4.> <개정 2017. 5. 13.> <개정 2019. 4. 20.>

② 행복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5. 8. 15.>

제13조(청년 정책자문위원) <신설 2018. 5. 12.>

① 행복의회는 ‘청년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청년 정책자문위원은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청년 정책자문위원은 의제 상정권을 갖는다. 다만, 의장의 재가를 거친 후 의장 발의로 상정한다.

④ 청년 정책자문위원은 회의 참석권과 회의에서의 발언권을 갖는다. 다만, 의장의 회의진행을 방해해선 안된다.

⑤ 의장은 청년 정책자문위원의 의제 상정안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⑥ 청년 정책자문위원의 역할은 정책자문에 한정한다. 그 외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간사·의장단의 협의 후에 청년 정책자문위원에게 의회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자격)

① 의장 및 부의장은 행복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② 각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행복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5. 8. 15.>

③ 각 특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행복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7. 5. 13.>

④ 각 TF팀 팀장 및 팀원은 행복의회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9. 04. 20.>

제1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제8조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6. 12. 10.>

제16조(지위)

① 의장은 행복의회를 대표하며, 본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8. 15.>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서기는 정기 및 임시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④ 각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며, 상임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며, 행복의회 내의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한다.
- ⑤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 임시회의 때 상임위원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 임시회의 때 상임위원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각 특별위원장은 각 특별위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며, 특별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며, 행복의회 내의 각 특별위원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7. 5. 13>
- ⑧ 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각 특별위원회별 임시회의 때 특별위원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5. 13>

#### 제17조(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 <개정 2017. 5. 13>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 ① 행복의회의 전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 의결한다.
- ② 규정 개정안은 발의하여 상정한다.
- ③ 행복의회 전체 예산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본 의회에 상정한다.
- ④ 행복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행복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 제18조(비상대책위원회) <신설 2016. 6. 4.> <개정 2016. 8. 6.>

- ① 의장이 궐위되거나 의장단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등 행복의회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위원의 3분의 2가 동의할 때 성립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전임 의장단은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장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장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전체회의에서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19조 (불신임) <신설 2016. 6. 4.> <개정 2017. 6. 10.> <개정 2017. 10. 14.> <개정 2018. 11. 24.>

- ① 전체위원의 3분의 2가 동의할 때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통과된다.
- ③ 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불신임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을 시, 제소를 당한 사람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즉시 지위를 상실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 ⑤ 윤리위원회는 불신임안 가결 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

## 제4장 활동과 역할

### 제20조(활동의 권한) <개정 2017. 5. 13>

행복의회의 활동 전반의 집행은 의장이 맡는다. 단, 의장이 궐위 시 부의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부의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부의장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21조(활동의 권한)

행복의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 자치에 의한 의회 운영
  1. 상임위원회의, 본회의, 임시회의 운영
- ② 청소년 참여를 통한 정책 개발 활동
  1. 청소년 정책 개발 및 제안
  2. 의제 발굴 및 의제 모니터링
  3. 청소년 원탁토론회, 성남시 청소년 제안대회, 아이디어공모전 등 개최
  4. 성남시 청소년 의견 수렴 및 반영 채널 구축
  5. 성남시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등
- ③ 청소년 의회 교류 및 홍보활동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2. 타 지역, 타 국가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와의 교류활동 등

### 제22조(위원회의 종류) <신설 2016. 6. 4.>

행복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종으로 한다. <신설 2016. 6. 4.>

### 제23조(특별위원회) <신설 2016. 6. 4.> <개정 2018. 5. 12>

- ① 행복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의 가입과 탈퇴는 자율적으로 하되, 가입·탈퇴 시에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가입신청서 혹은 탈퇴사유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8. 5. 12.>
- ④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10.>
- 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제24조(윤리위원회) <신설 2016. 6. 4.> <개정 2016. 8. 6.> <개정 2017. 6. 13.> <개정 2018. 5. 12>

- ① 의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모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각 한 명씩 선출하여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위원회에서 윤리위원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따르지 않는다.
- ③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TF팀) <신설 2018. 5. 12> <개정 2019. 1. 12>**

- ① TF팀은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그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다.
- ② TF팀에서 발의한 정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 ③ TF팀은 가입과 탈퇴를 자율적으로 하고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모든 의원이 필수적으로 1개 이상의 TF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 ④ TF팀에 가입·탈퇴 시에는 해당 TF팀 팀장에게 가입신청서 혹은 탈퇴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⑤ TF팀은 TF팀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신설과 폐지는 자유롭다.
- ⑥ TF팀은 팀장 1인과 서기 1인을 둔 1인 이상의 체제로 구성한다.  
가. 팀장과 서기는 중임이 가능하다.
- ⑦ TF팀 내 불성실한 의원에 대한 제소 발생 시 해당 TF팀 내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소속 의원의 2/3이 찬성했을 시 퇴출한다.
- ⑧ 어느 TF팀에도 소속되지 않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6조(의원의 타위원회 및 TF팀 출석과 발언) <신설 2016. 6. 4.> <개정 2018. 5. 12.>**

- ① 의원은 타 위원회 및 TF팀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8. 5. 12.>

**제27조(상임위원회의 직무) <개정 2015. 8. 15.> <개정 2016. 6. 4.> <개정 2018. 5. 12.>**

행복의회의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① 교육문화상임위원회
  1. 교육·문화에 관한 사안심의 <개정 2018. 5. 12.>
- ② 인권권익상임위원회
  1. 인권·권익에 관한 사안심의 <개정 2018. 5. 12.>
- ③ 환경복지상임위원회
  1. 환경·복지에 관한 사안심의 <개정 2018. 5. 12.>
- ④ <삭제 2016.6.4.>

**제28조(회의) <개정 2016. 6. 4.> <개정 2016. 8. 6.> <개정 2016. 12. 10.> <개정 2017. 5. 13>**

행복의회의 회의에는 본회의,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의를 둔다.

- ① 본회의
  1. 본회의는 연1회 이상씩 집회하며, 최종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기능을 한다. 의장단의 참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을 준수한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은 입법청원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다. <개정 2016. 12. 10.>
- ②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
  1.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는 월2회를 주기로 회의 중, 의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하여 공고한다.
- ③ 임시회의
  1.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활동 및 회의가 계획되고 실행되는 경우
    - 2) 회의의 위원 과반수 필요성을 느낄 경우
  2.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간사가 소집한다.
    - 1) 행복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논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29조(의결) <개정 2016. 8. 6.> <개정 2016. 12. 10.> <개정 2017. 5. 13> <개정 2019. 4. 20.>**

행복의회의 본회의와 전체회의,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행복의회 규정 개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및 의장, 부의장 해촉은 의원투표로 의결한다.
- ② 각 상임위원회별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보고한다.
- ③ 각 특별위원회별 사업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보고한다.
- ④ 전체회의, 상임위원회회의 의안은 회의 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상정해야 할 경우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 상정할 수 있다.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규정 개정안: 2일
  2. 제정 조례안 및 추진 사업안: 2일
  3. 행복의회에서 추진할 의제: 2일
- ⑤ 전체회의, 상임위원회회의 의안은 의원에게 하루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장 의장단 선거 <개정 2015. 8. 15.>

#### 제30조 <삭제 2015. 8. 15.>

#### 제31조(선거권)

행복의회의 의원은 당대의 선거권을 가진다.

#### 제32조(선거 시기) <개정 2016. 8. 6.> <개정 2016. 12. 10.>

행복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거는 위촉워크숍 직후 전체회의에서 실시한다.

- ① 위촉워크숍은 아래의 각 호를 따른다.
  1. 위촉워크숍의 시기는 행복의회 위촉식 후 1달 이내로 한다.
  2. 토론 및 정책 개발을 비롯한 향후 의제발굴로 일정을 구성하고, 해산 전 워크숍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 ② 의장단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3조(선거) <개정 2016. 8. 6.> <개정 2016. 12. 10.>

행복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거는 직접·보통선거 및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① 의장, 부의장은 전체회의에서 행복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진행한다.<신설 2015. 8. 15.>
-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진행한다.<신설 2015. 8. 15.>
- ③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궐위 시 빠른 시일 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 ④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특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진행한다.<신설 2017. 5. 13>

#### 제34조(당선자 결정)

당선자 결정은 다득표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진행한다.

## 제6장 통례적용

### 제35조(통례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례에 의하고, 통례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의회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 8. 1.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정)

- ① 본 규정은 2015. 8. 15. 일부 개정됨.
- ② 본 규정은 2016. 6. 4. 일부 개정됨.
- ③ 본 규정은 2016. 8. 6. 일부 개정됨.
- ④ 본 규정은 2016. 12. 10. 일부 개정됨.
- ⑤ 본 규정은 2017. 5. 13. 일부 개정됨.
- ⑥ 본 규정은 2017. 6. 10. 일부 개정됨.
- ⑦ 본 규정은 2017. 10. 14. 일부 개정됨.
- ⑧ 본 규정은 2018. 5. 12. 일부 개정됨.
- ⑨ 본 규정은 2019. 1. 12. 일부 개정됨.

### 제3조(특별위원회 활동기한)

- ① 혁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7. 4. 1.부터 2020. 2. 28.로 정한다.
- ② 대외교류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7. 4. 1.부터 2020. 2. 28.로 정한다.
- ③ 의제발굴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6. 3. 1.부터 2016.12. 31.로 정한다. <폐지>
- ④ 행사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7. 4. 1.부터 성남시청소년제안주간 폐막일까지로 정한다.
- ⑤ 미디어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17. 4. 8.부터 2019. 2. 28.로 정한다. <폐지>
- ⑥ 정책연구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19. 4. 1.부터 2020. 2. 28.로 정한다.

### 제4조(특별위원회의 직무) <신설 2017. 4. 8.> <개정 2019. 1. 12.>

행복의회의 특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① 혁신특별위원회
  1. 행복의회 규정 개정
  2. 행복의회 모니터링
- ② 대외교류특별위원회
  1. 타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 추진

- 2. 행복의회 홍보
- ③ 행사추진특별위원회
  - 1. 행복의회 내의 행사 추진
- ④ 정책연구특별위원회
  - 1. 청소년 의견 수렴
  - 2. 행복의회 소통창구 운영 및 관리

## 02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윤리헌장

우리는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하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원임을 명심하고 청소년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양심에 따라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여 청소년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이어나가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 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윤리헌장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제1장 (목표)

-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성남시 청소년의 의사표명을 통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존재한다.
  - ① 의원은 역시 청소년의 일원으로서 의원 개인의 자아실현에도 힘쓴다.
  - ②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언급된 모든 가치의 실현을 지향한다. 특히 제12조 견해의 표시, 제13조 표현의 자유, 제14조 사상·양심에 대한 자유, 제 15조 모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 제2장 (활동자세)

- 1. 의원은 성남시 청소년의 의결권과 참여권을 위임받은 대변인으로서 공사(公私)를 구분하여 사적인 감정으로 당파를 나누어 다루지 않는다.
- 2.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성남시 청소년을 대변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구로서, 성남시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활발히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제3장 (청소년 교류)

- 1. 의원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청소년이 스스로의 행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
- 2. 의원은 성남시의 다양한 청소년과 관계를 가지고 소통한다.

### 제4장 (품위)

-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모인 집단으로서 의원은 성남시청소년의 명예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성남시 청소년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 2. 의원은 시민의식에 준하는 행동을 한다.

### 제5장 (투명성)

- 1. 의정 전반에 있어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제6장 (평등)

-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모든 의원은 평등함을 근간에 둔다.

### 03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행동강령

#### 제1장 (근간)

- ① 이 영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의원은 자신에 의해 다른 의원이 부당한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영은 차후 필요시 상황에 맞게 추가할 수 있다.

#### 제2장 (활동자세)

- ④ 의원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사업상 객체가 아닌 청소년 권리실현의 주체임을 명심하고, 의원의 결정사안(일정, 사업 추진, 의제 발굴 등)은 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의회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
  - 나. 청소년의 대표자로서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 다. 청소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실현한다.
- ⑤ 특별한 사유 없이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가. 특별한 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에서 밝힌다.
- ⑥ 의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위기 조성을 금지한다.
  - 가.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다.
  - 나. 정책 형성 및 과정 전반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다. 의원은 의회 활동 시, 개인적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권리 남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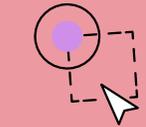
- ⑦ 개인의 영달, 사욕을 위하여 의원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 가. 의회 내에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우리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수혜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나.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4장 (평등)

- ⑧ 의원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가. 의원 간의 인신공격 및 회의 중 비속어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 나. 연소(年少) 의원들 또한 연장(年長) 의원들과 같은 수준의 활동량을 충족할 의무를 지닌다.
  - 다. 우리는 나이나 성별을 근거로 위계서열을 조성하지 아니하며 종교, 신념 또는 사상, 생활수준, 성적 지향, 학력 수준, 장애 또는 질병 등을 근거로 다른 의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 라. 의원 상호 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기회 균등을 보장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르는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 제5장 (품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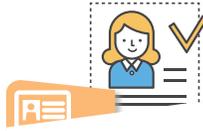
- ⑨ 의원은 의회를 대표하여 의회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하지 아니한다.
  - 가. 의원이 의회를 대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정활동 현황**



**01** 기초 지자체 중 전국 최초 후보 개인에게 투표하는 온라인 선거를 통한 선출직 의원제 시행



**1차 서류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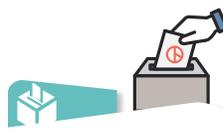
- 서류 전형
- : 학교/기관/포래추천
- 심사 기준에 의거한
- 면접 대상자 선정



**2차 면접심사 및 오리엔테이션**

**40%**

- 청소년 선거 안내
- 프로필 사진 촬영
- 공약 확인
- 면접심사 등



**3차 청소년 선거**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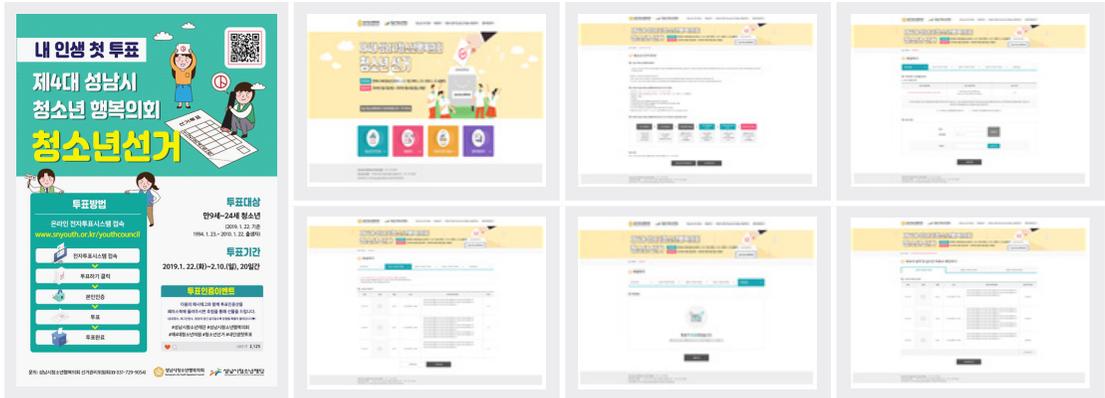
- 온라인 선거 진행
- 3,681명 참여
- 지역구별 의원 구성



**최종 당선자 공고**

- 35명 선출 및 당선증 교부
- 수정구 : 6명
- 중원구 : 13명
- 분당구 : 16명

**1-1**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선거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http://www.snyouth.or.kr/youth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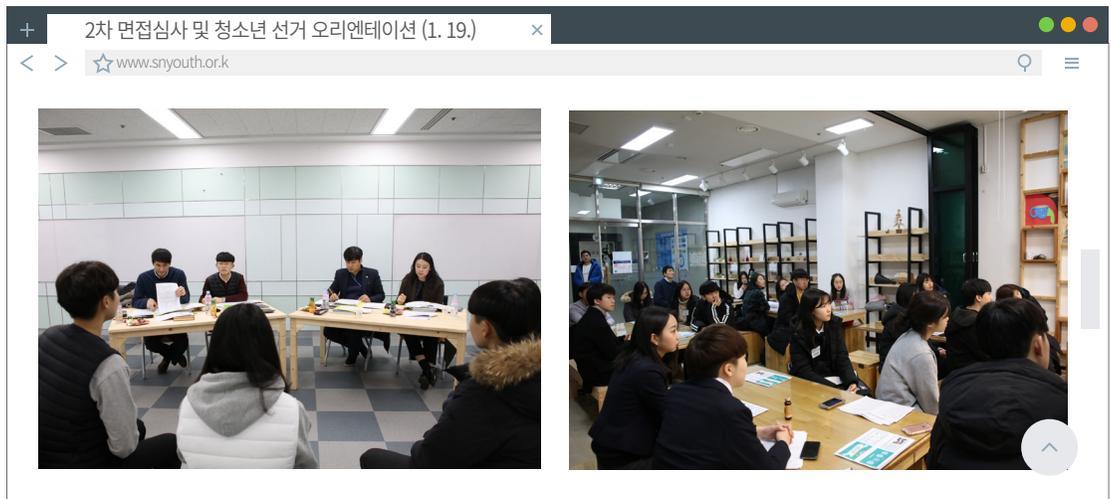
**1-2** 2차 면접심사 및 청소년 선거 오리엔테이션

| 개요 |

- 일 시 : 1. 19.(토) 10:00~16:00
- 장 소 : 중원청소년수련관 1층 어울림실 등
- 대 상 : 제4대 행복의회 서류합격자
- 인 원 : 41명(1명 불참)
- 내 용 : 청소년 선거 안내, 프로필 사진 촬영, 공약 확인, 면접심사 등

| 세부추진내용 |

시간	내용	비고
09:00 ~ 10:00	청소년 접수 및 자리안내	
10:00 ~ 10:30	1차 오리엔테이션 진행	분당구
10:30 ~ 12:30	① 선거 공약 확인 및 동의서 제출	
	② 1차 조별 면접 진행	
	③ 선거 프로필 촬영	
12:30 ~ 13:00	점심시간 및 휴식	
13:00 ~ 13:30	2차 오리엔테이션 진행	수정·중원구
13:30 ~ 16:00	① 선거 공약 확인 및 동의서 제출	
	② 1차 조별 면접 진행	
	③ 선거 프로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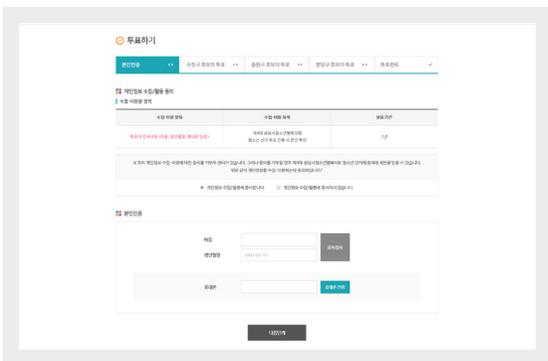
### 1-3)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선거 운영

#### | 개요 |

- 투표대상 : 만9세~24세 청소년(2019.1.22. 기준 1994.1.23.~2010.1.22.출생자)
- 투표기간 : 1. 22.(화) ~ 2. 10.(일), (20일간)
- 참여인원 : 청소년 3,681명
- 투표방법 :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 접속 ⇒ 투표하기 클릭 ⇒ 본인인증 ⇒ 투표 (지역구별 2표씩, 총 6표) ⇒ 투표완료 (<http://www.snyouth.or.kr/youth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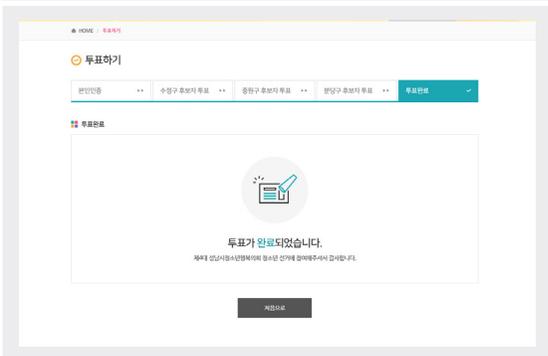
1.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 접속⇒ 투표하기 클릭  
([www.snyouth.or.kr/youthcouncil](http://www.snyouth.or.kr/youthcouncil))



2.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여부 체크 후  
본인 인증 ⇒ 다음단계 클릭



3. 지역구 별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하고 각 지역구마다  
투표 할 후보자 2명을 선택 후 다음 단계 클릭



4. 모든 지역구 투표 시 투표 완료!

#### | 추진성과 |

- 18세 선거권 확대에 대한 예비적 경험 실현
- 성남시 청소년의 대의 정치 및 간접 민주주의 경험을 통한 참여, 시민 역량 강화 도모
- 만9세~ 24세 청소년 3,681명 참여,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대표성 보장 노력 추진

## 1-4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 |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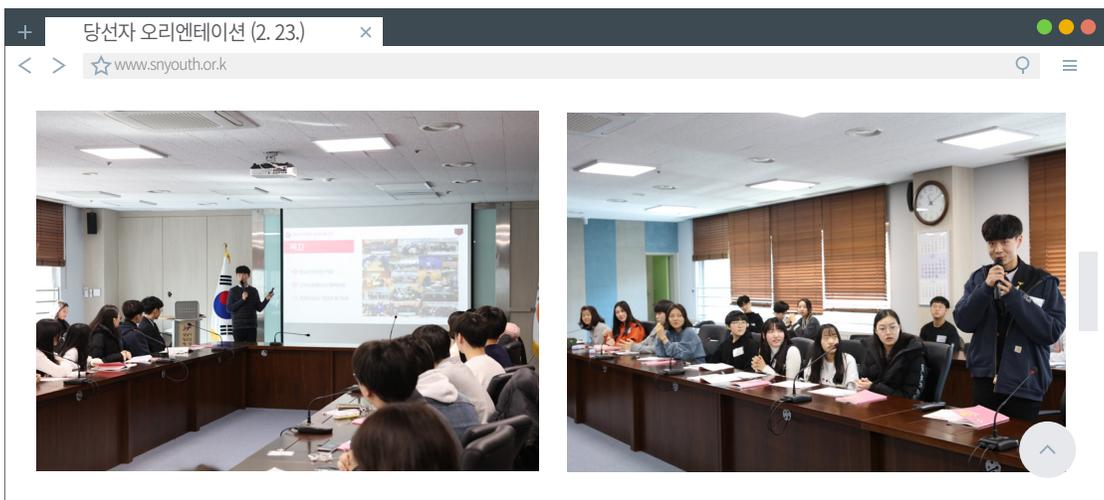
- 투표대상 : 만9세~24세 청소년(2019.1.22. 기준 1994.1.23.~2010.1.22.출생자)
- 투표기간 : 1. 22.(화) ~ 2. 10.(일), (20일간)
- 참여인원 : 청소년 3,681명
- 투표방법 :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 접속 ⇒ 투표하기 클릭 ⇒ 본인인증 ⇒ 투표 (지역구별 2표씩, 총 6표) ⇒ 투표완료 (<http://www.snyouth.or.kr/youthcouncil>)

### | 세부추진내용 |

시간	내용	비고
10:00 ~ 10:10	○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개	홍보영상
10:10 ~ 10:40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소개 ○ 행복의회 활동 유의사항 및 규정교육	간사 김마리
10:40 ~ 11:10	○ 청소년 의원이 가져야 할 자세 (제3대 행복의회를 중심으로)	제3대 행복의회 의장 최선웅
11:10 ~ 11:40	○ 자기소개 및 상호교류의 시간	간사 김마리
11:40 ~ 12:00	○ 2019년 제4대 행복의회 운영 일정 안내 ○ 공지사향 전달	간사 김마리

### | 추진성과 |

- 행복의회 규정교육을 통한 성남시 청소년 대표, 청소년 의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 및 역할 습득 및 인식



### 1-5 당선증 교부식

#### |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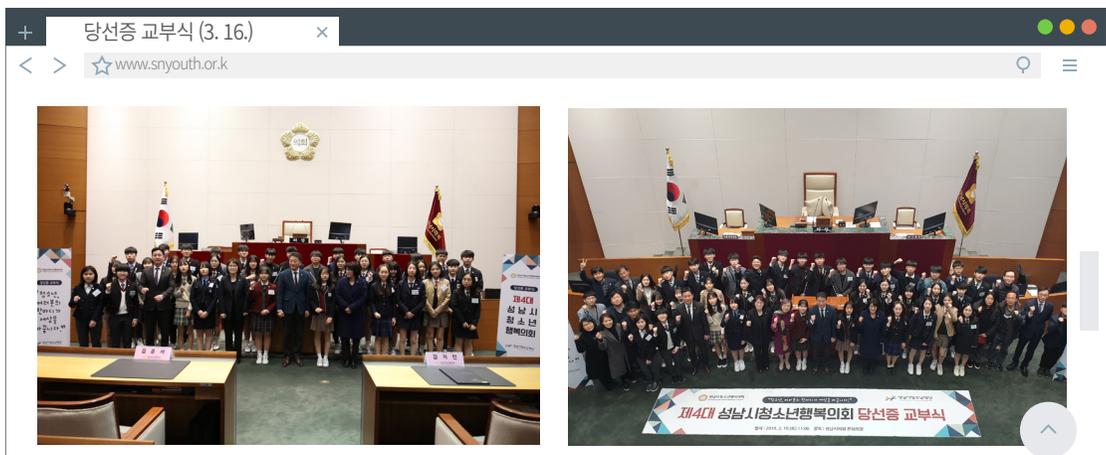
- 일 시 : 3. 16.(토) 11:00~12:20
- 장 소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 대 상 : 제4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및 학부모, 관계자 등
- 인 원 : 77명(청소년 의원 34명, 학부모 및 관계자 43명)
- 내 용 : 당선증 및 배지 수여, 자문단 위촉, 윤리헌장 낭독 등

#### | 세부추진내용 |

시간		소요시간 (분)	내용	비고
부터	까지			
11:00	11:03	3	○ 내빈소개	
11:03	11:05	2	○ 개회	
11:05	11:08	3	○ 국민의례	
11:08	11:15	7	○ 격려사 및 축사	대표이사 성남시의회 의장
11:15	11:30	15	○ 당선증 및 배지 수여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성남시의회 의장
11:30	11:35	5	○ 자문단 위촉장 수여	성남시의회 의장
11:35	11:40	5	○ 행복의회 의원 윤리헌장 낭독	대표이사
11:40	11:45	5	○ 폐회 및 기념사진 촬영	
11:45	12:20	35	○ 의회활동 기본교육	성남시의회 의장

#### | 추진성과 |

- 청소년 온라인 직접선거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뽑은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행복의회 대표성 보장 및 강화



**1-6** 의제발굴 워크숍

| 개요 |

- 기 간 : 3. 16.(토) ~ 3. 17.(일), 무박 2일
- 장 소 : 재단 사무국 및 중원청소년수련관 등
- 대 상 : 제4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및 청년자문위원
- 인 원 : 37명(청소년 의원 34명, 청년자문위원 3명)
- 내 용 : 전문교육, 3분스피치(자기소개 및 1인 정책제안), 공동체 활동, 주제토론 등

| 세부추진내용 |

시간	1일차(3/16.토)	2일차(3/17.일)
00:00~07:00	당선증 교부식 사전 리허설	주제토의
07:00~08:00		세면 및 준비
08:00~09:00		아침식사
09:00~11:00		주제토의 발표 및 활동소감 공유
11:00~11:45	당선증 교부식	귀가
11:45~12:20	의회활동 기본교육	
12:20~13:30	점심식사	
13:30~14:30	이동 및 조별미션 (성남시의회→중원청소년수련관)	
14:30~15:00	조별미션 확인 및 지도자 소개	
15:00~16:00	전문교육① (주제: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16:00~17:00		
17:00~18:00	공동체활동	
18:00~19:00	저녁식사	
19:00~20:30	전문교육② (주제: 청소년의회의 역할 및 정책제안)	
20:30~24:00	3분 스피치	

| 세부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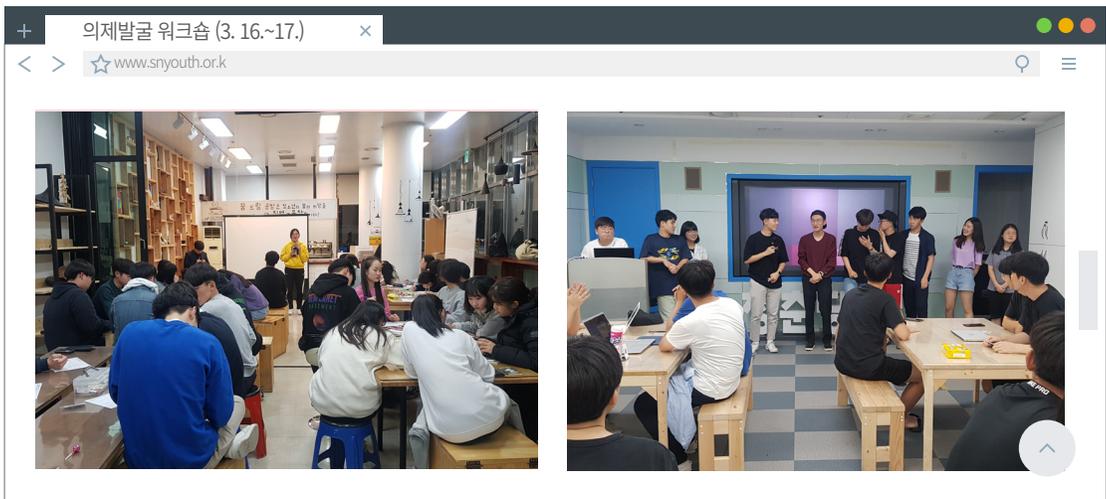
- 행복의회 규정교육을 통한 성남시 청소년 대표, 청소년 의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 및 역할 습득 및 인식

프로그램명	내용
1 의회활동 기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의회활동 기본교육 진행</li> <li>○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정치와 지방의회</li> <li>2) 지방의회의 지위</li> <li>3) 지방의회의 권한</li> <li>4) 국회와 지방의회</li> <li>5) 청소년과 지방의회</li> </ol> </li> </ul>

2	전문교육① [3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li> <li>○ 내용: 마음열기, 협상력 훈련 등</li> </ul>
3	전문교육② [4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청소년의회의 역할 및 정책제안</li> <li>○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소개</li> <li>2) 행복의회 의원의 법률적 권리와 대표성</li> <li>3) 정책제안 과정 (문제인식-의제연구-입법추진)</li> <li>4) 제1~3대 행복의회 활동사례</li> <li>5) 행복의회 활동 시 유용한 사이트 안내</li> </ol> </li> </ul>
4	공동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운영</li> </ul>
5	3분 스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시간 3분 내에 간단한 자기소개와 개인 별 정책제안 발표 진행</li> <li>· 지원신청서 제출시 작성하였던 정책제안서 또는 평소 관심있던 신규 제안 기반</li> </ul>
6	주제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분 스피치 정책제안 주제를 바탕으로 세부 주제 선정</li> <li>· 환경, 장애인, 복지, 청년, 교육, 안전</li> <li>○ 그룹별 주제토의 진행</li> </ul>

**| 추진성과 |**

- 행복의회 전문교육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으로 청소년 의원 역량 강화
- 워크숍 운영으로 청소년 간 상호이해 및 의회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 청소년 의원의 소속감 및 연대 강화



## 02 국내·외 청소년 의회(참여기구) 네트워크 구축

- G4 청소년 정상회담 in 성남**  
: 참여기구별 소개, 그룹별 주제토의, 토의결과 발표 등
- 성남시 청소년 토크콘서트**  
: 주제강연, 토크콘서트, 그룹별 토의 및 발표 등
- 모두의 참여 연합 워크숍**  
: 제안대회 설명회, 청소년 참여사례 공유 등
-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 정책제안서 전달, 제안내용 발표 심사 및 시상



- G4 청소년 정상회담 in 성남**  
: 시정 및 시의회 견학, 행복의회 활동 소개, 교류활동 등
- 제3회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 in 성남**  
: 사회적 문제해결과 청소년 활동 관련 발제 및 참여, 청소년 의회교류활동

국내(관외)	성남시(관내)	국외
고양시청소년의회	성남시차세대위원회	독일 하이델베르크청소년의회
금천구청소년의회	청소년문화혁신위원회	에틀링엔청소년의회
강북구아동청소년의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남아프리카공화국 MonumentParkHighSchool
양산시청소년의회	학교 사회참여동아리 (구미중, 수내중, 북정고, 늘푸른고, 이매중, 한솔고등)	케이프타운청소년의회
수원시청소년의회		
경기도차세대위원회		

### 2-1 국제 청소년 교류활동

| 개요 |

- 일 시 : 6. 24.(월) 15:00~18:00
- 장 소 : 성남시청 및 성남시의회
- 대 상 :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Monument Park High School 청소년
- 인 원 : 34명(청소년 의원 및 자문위원 13명, 남아프리카 청소년 12명 지도자)
- 내 용 : 시청 및 시의회 견학, 행복의회 활동소개, 교류활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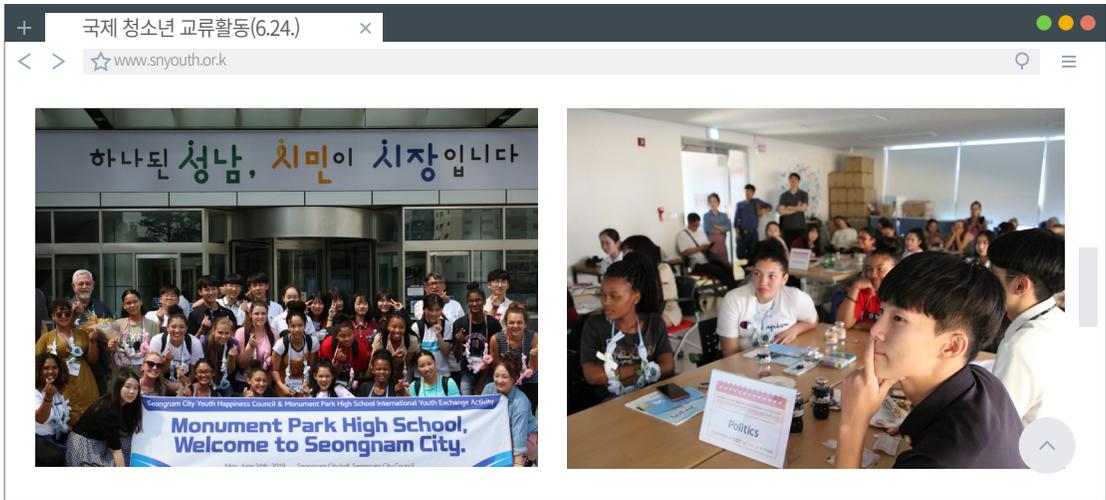
| 세부추진내용 |

시간		소요시간 (분)	내용
부터	까지		
15:00	15:30	30	○ 성남시청 견학 - 종합홍보관, 하늘 북카페 등 시설 라운딩
15:30	16:30	60	○ 성남시의회 견학 - 홍보관 및 본회의장 등 시설 라운딩 - 의장 집무실 방문 및 차담

16:30	17:00	30	○ 단체 및 활동소개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남아프리카공화국 Monument Park High School
17:00	18:00	60	○ 교류활동 - 한국 소개 및 공동체활동 - 국제이슈 주제토론 등 · 정치, 교육, 경제, 사회문화

**| 추진성과 |**

- 남아프리카공화국 Monument Park High School과의 교류활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및 행복의회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및 참여 청소년의 자부심 향상 도모



**2-2) G4 청소년 정상회담 in 성남**

**| 개요 |**

- 일 시 : 7.26.(금) 10:00~16:00
- 장 소 : 중원청소년수련관
- 대 상 :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등
- 인 원 : 90명

소속	인원	소속	인원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22	금천구청소년의회	15
강북구아동청소년의회	32	양산시청소년의회	15
참여기구별 대학생 멘토 등			6

- 내 용 : 참여기구 별 소개, 그룹별 주제토의, 토의결과 발표 등

## | 세부추진내용 |

## -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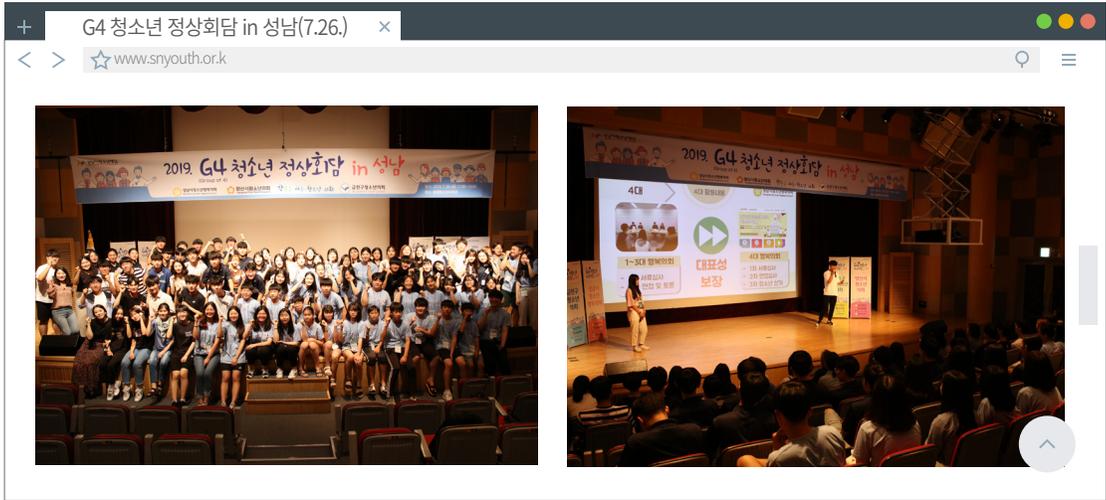
시간		소요시간 (분)	내용	비고
부터	까지			
10:00	11:00	60	○ 시설 라운딩	
11:00	11:03	3	○ 국민의례	- 사회: 김대희 의장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1:03	11:10	7	○ 환영사	- 대표이사
11:10	12:00	50	○ 참여기구 별 소개	- 김유진 교육위원장 (양산시청소년의회)
12:00	13:00	60	○ 점심식사(도시락)	
13:00	15:00	120	○ 그룹별 주제토의	- 8개 주제
15:00	15:50	50	○ 토의결과 발표	- 한혜선 의장 (강북구아동·청소년의회)
15:50	16:00	10	○ 단체사진 촬영	
16:00	~		○ 타 의회 귀가 ○ 행복의회 교류 워크숍 진행	

## - 그룹별 토의 주제

구분	주제
1	아동·청소년의회 활성화 방안
2	청소년의 원활한 정치참여 및 사회적 입지 확대 방안
3	청소년을 위한 환경 관련 정책 제안
4	취업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
5	패스트트랙 입법지정 개혁인가 문제인가?(찬반논의)
6	게임중독은 질병인가?
7	자유학년(기)제의 추진현황 및 찬반 논의
8	지역별 청소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 | 추진성과 |

- 행복의회 및 금천구청소년의회, 강북구아동·청소년의회, 양산시청소년의회 등 4개 청소년 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활동 내용 및 성과 공유 등을 통한 청소년 의회 활성화 도모
- 1대-1개 의회(금천구), 2대-1개 의회(포천시), 3대- 2개 의회(고양시, 양산시), 4대- 3개 의회(금천구, 강북구, 양산시) 등 지속적인 청소년 의회 교류활동 추진으로 전국 청소년 의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노력



### 2-3 교류 워크숍

|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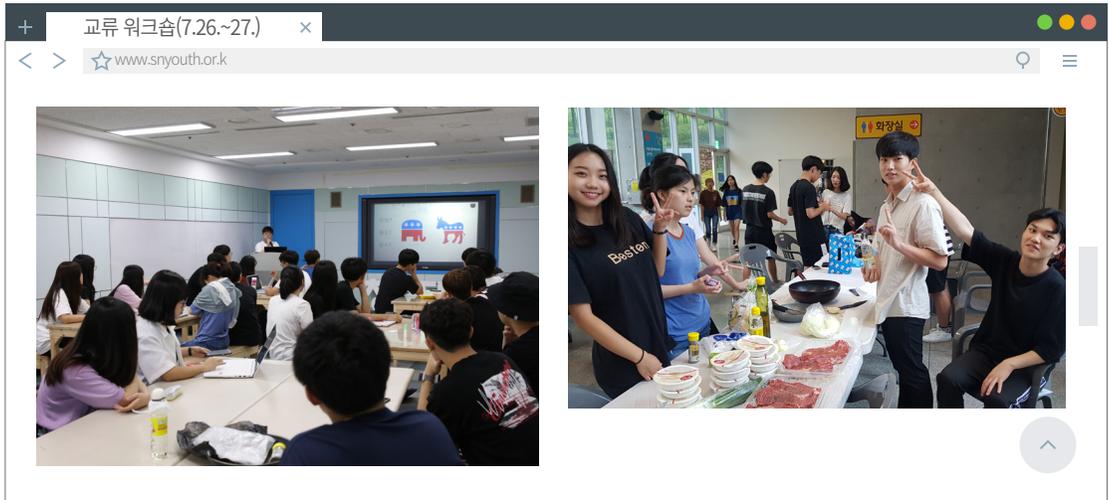
- 기 간 : 7.26.(금)~27.(토), 무박2일
- 장 소 : 중원청소년수련관
- 대 상 : 1~4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등
- 인 원 : 34명
- 내 용 : 요리경연대회, TF팀 별 진행사항 공유 및 피드백, 교육 및 토론 등

| 세부추진내용 |

시간	1일차(7.26.금)		2일차(7.27.토)	
00:00 ~ 08:00	사전준비		주제토의	어울림실
08:00 ~ 09:00			세면 및 준비	
09:00 ~ 10:00			아침식사 및 토의결과발표	
10:00 ~ 11:00			귀가	
11:00 ~ 12:00	교류 활동 ①	환영사 참여기구 별 소개	공연장	어울림실
12:00 ~ 13:00		점심식사(도시락)	개별장소	
13:00 ~ 15:00		그룹별 주제토의		
15:00 ~ 16:00	토의결과 발표 단체사진 촬영	공연장		
16:00 ~ 18:00	TF팀별 발표 준비		어울림실	
18:00 ~ 21:00	교류 활동 ②	바비큐파티 & 요리경연대회	연못가앞	
21:00 ~ 22:00		TF팀 별 진행사항 공유 및 피드백	어울림실	
22:00 ~ 24:00		교육 및 토론		

**| 추진성과 |**

- 1~4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들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의정활동 노하우 전수 및 해단 이후 참여활동의 종료가 아닌 연속적인 활동 전개 추진



**2-4) 성남시 청소년 토크콘서트**

**| 개요 |**

- 일 시 : 8. 17.(토) 10:00~17:30
- 장 소 : 성남시청 한누리
- 대 상 :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및 성남시 관내 청소년(만9세 이상 24세 이하)
- 인 원 : 120명
- 내 용 : 성남시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성남시청소년토크콘서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토크콘서트(개회식, 기초강연, 패널토의, 주제별 소그룹 토의 등) 시행
- 참여기관 : 금광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혁신위원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운영위원회(수정청소년수련관 별다래, 중원청소년수련관 은가비, 서현청소년수련관 W, 판교청소년수련관 가운누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w.a.y,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한울), 제10기 성남시차세대위원회,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오늘도행복한청소년, 성남청소년지원네트워크, 함께여는청소년학교지역아동센터

**| 세부추진내용 |**

**- 일정표**

시간		소요시간 (분)	내용
부터	까지		
10:00	10:30	30	○ 접수 및 안내
10:30	11:00	30	○ 아이스 브레이킹
11:00	11:10	10	○ 내빈소개 ○ 개회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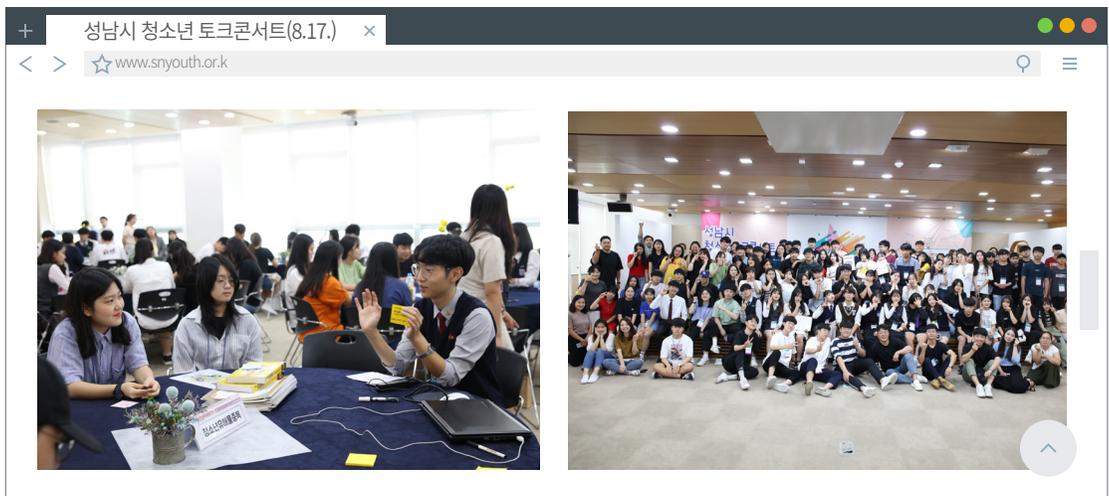
11:10	12:30	80	○ 주제강연&토크콘서트
12:30	13:30	60	○ 점심식사
13:30	15:30	120	○ 100분 토론(소그룹 토의)
15:30	17:20	110	○ 그룹별 발표
17:20	17:30	10	○ 폐회 및 정리

- 그룹별 토의 주제

구분	운영 내용 및 방법
주제강연 & 토크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제 강 연 : 성남시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강사 : 금두환 내가 바라는 학교 - 강사 : 김정화(청소년) 내가 바라는 교육 - 강사 : 강용빈(청소년)</li> <li>○ 토크콘서트 : 성인강사 1명과 청소년강사 2명이 강의 후 청소년 참여청소년들의 의견과 질문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li> </ul>
스케치북 토크쇼	○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의 키워드를 스케치북에 적어 함께 공유함
주제별 소그룹 토의 및 토의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주제별 그룹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주제 교내학생차별, 청소년 노동, 청소년 범죄, 청소년 진로, 청소년 성문제, 청소년 유해물 중독, 교내학생자치권, 청소년 미혼모, 청소년자살, 18세 선거권, 학생교복, 청소년 가출 등 12개 소주제 토의 (노트북 이용, 각 소그룹 PPT 제작)</li> <li>· 발표형식 및 시간 4개조씩 3회 무대에 올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발표, 발표시간 10분 이내(ppt이용)</li> </ul> </li> </ul>

| 추진성과 |

- 추진위원회 구성, 준비회의 및 임원단 선출 등 청소년 참여구조 활성화 및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2-5** 제안대회 설명회 및 모두의 참여 연합 워크숍

| 개요 |

- 일 시 : 8. 31.(토) 13:00 ~ 17:00
- 장 소 : 중원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및 공연연습실
- 대 상 : 민주시민동아리지원사업 [모두의 참여] 참가 동아리 및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인 원 : 55명

연번	학교명	동아리명	인원
			55
1	구미중학교	사회참여동아리	7
2	한솔고등학교	가온누리사회참여부	6
3	수내중학교	내가 만드는 사회	5
4	복정고등학교	사회참여반, 사과나무 동아리	11
5	늘푸른고등학교	같이의 가치	6
6	한솔고등학교	인권동아리[다운]	5
7	상담복지센터	꿈드림청소년단[드림윙즈]	4
8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1

- 내 용 : 제안대회 설명회, 동아리 별 소개 및 발표, 사회참여 특강, 주제토론 등

| 세부추진내용 |

-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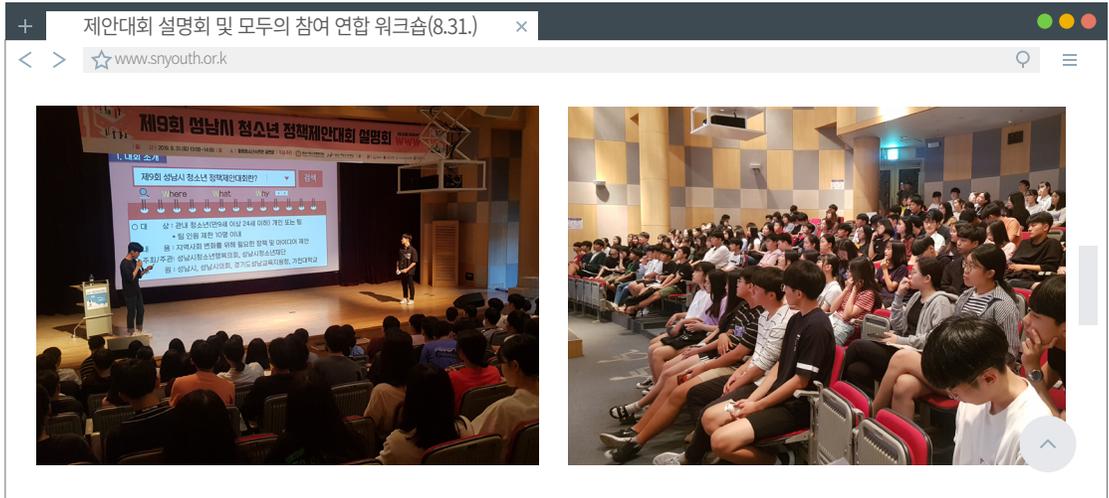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 13:10	○ 참가자 접수 및 안내	
13:10 ~ 14:00	○ 제안대회 설명회 · 제안대회 참가 및 제안서 작성 요령 교육 · 질의응답 등	전체
14:00 ~ 15:00	○ 청소년 참여 사례 공유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모두의 참여 동아리 별 소개 및 발표 · 사진 15장으로 소개하는 동아리	전체
15:00 ~ 16:00	○ 마음열기 · 협상력 훈련 등 ○ 사회참여 방법 특강	전체
16:00 ~ 17:30	○ 주제토론 · 성남시 청소년 정책 평가하기 · 성남시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 도출하기	랜덤 조편성

| 세부추진내용 |

구분	내용	비고																
 <p>제안대회 설명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대회 참가 및 제안서 작성 요령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제안대회 소개, 추진일정, 사회참여란?</li> <li>· 제안서 작성방법, 접수방법 및 네티즌 투표, 전년도와 달라진점 등</li> <li>· 질의응답 등</li> <li>·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행사추진특별위원회 진행</li> </ul> </li> </ul>	공연장																
 <p>청소년 참여사례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참여 사례 공유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시민의 힘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사례 중심으로)</li> <li>· 행복의회 정책반영 사례 및 과정 등</li> <li>· 강사: 김주환(행복의회 1대 의장 및 청년자문위원)</li> </ul> </li> </ul>	공연장																
 <p>동아리별 소개 및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으로 표현하는 동아리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리 소개를 통한 활동 공유</li> <li>· 동아리 별 발표 준비 사전 안내 (동아리 활동사진, 개인 셀카, 동아리를 표현 할 수 있는 사물, 풍경 등 자유로운 주제의 사진)</li> </ul> </li> </ul>	공연장																
 <p>마음열기 &amp; 사회참여 특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력 훈련 및 토론방법 등</li> </ul> </li> <li>○ 마음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의사소통과 청소년 사회참여</li> <li>· 세부내용 : 퍼실리테이터란, 의사소통의 4가지 기법, 청소년 사회참여의 역사와 의미, 시민참여 정책 결정과정 등</li> </ul> </li> <li>○ 강사: 권혜진</li> </ul>	공연연습실																
 <p>주제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청소년 의제 찾기</li> <li>○ 성남시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등</li> </ul> </li> </ul> <table border="1" data-bbox="413 1401 1078 1642">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td> </tr> <tr> <td>2</td> <td>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 </tr> <tr> <td>3</td> <td>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바우처 정책</td> </tr> <tr> <td>4</td> <td>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 </tr> <tr> <td>5</td> <td>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td> </tr> <tr> <td>6</td> <td>청소년증</td> </tr> <tr> <td>7</td> <td>무상교복, 급식, 등록금</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성남시 청소년 정책을 토대로 성남시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 도출하기</li> <li>○ 투표를 통한 BEST3 정책 뽑기 및 발표하기</li> <li>○ 랜덤 조편성을 통한 모둠 구성</li> <li>○ 조별 퍼실리테이터 배치를 통한 주제토론 활성화 도모 (민주시민교육 강사-오늘도 행복한 청소년)</li> </ul>	구분		1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2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바우처 정책	4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6	청소년증	7	무상교복, 급식, 등록금	공연연습실
구분																		
1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2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바우처 정책																	
4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6	청소년증																	
7	무상교복, 급식, 등록금																	

| 추진성과 |

- 성남시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네트워크 구성 및 청소년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순환유 역할 수행



**2-6** 제3회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 in 성남

| 개요 |

- 일 시 : 10. 31.(목) 09:00 ~ 12:35
- 장 소 : 국립국제교육원 대회의실
- 대 상 : 제4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 인 원 : 12명
- 내 용 : 세션1 사회적 문제해결과 청소년활동 관련 발제 및 참여, 독일(에틀링엔, 하이델베르크)-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청소년의회 등 교류활동

| 세부추진내용 |

- 일정표

전문가컨퍼런스 / 세션 1 / 10.31.(목) Youth, Social Paricipation and 4th Industrial Revolution		
좌장: 김현철 (청소년정책연구원)		
개회식	9:00~9:30 (30분)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 미국하버드대학교 교육학 박사
키노트스피치	9:30~10:10 (40분)	진미석
장내정리	10:10~10:20 (10분)	장내정리 및 기념사진 촬영
발제 1	10:20~10:45 (25분)	이석민 헌법재판연구소 연구원
발제 2	10:45~11:10 (25분)	Ondra Barta Finnish Presidency to the Council of the European - YOUTH Researcher/유럽의회(핀란드) 청소년 연구원
발제 3	11:10~11:35 (25분)	Markus Gloe München Universität 독일 뮌헨대학교 교수 (사회교수학, 정치교육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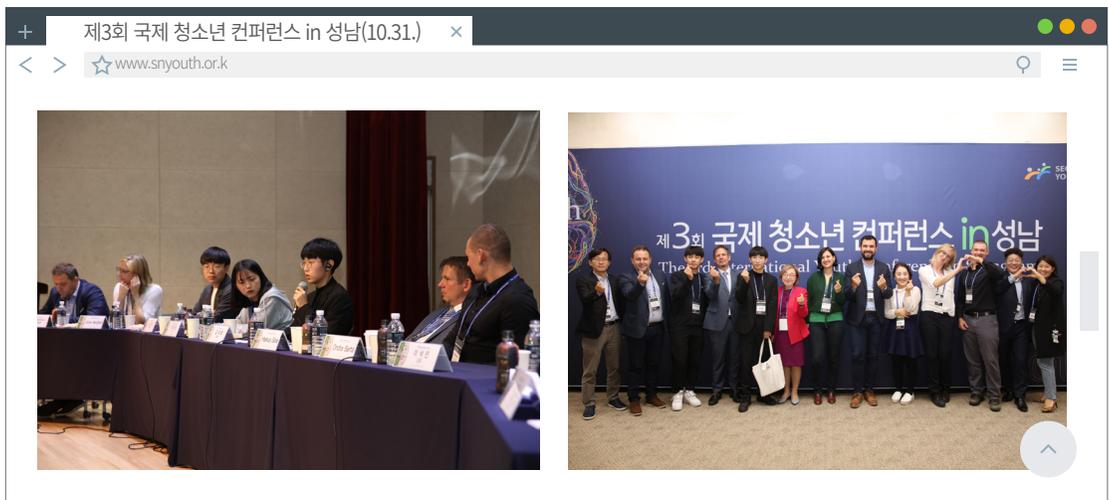
휴식	11:35~11:45 (10분)		
토론 1	11:45~11:55 (10분)	김대희 / 조영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 성남시차세대위원회 위원장
토론 2	11:55~12:05 (10분)	Anne Bergfeld	U18(독일청소년선거권연대)/ 독일연방청소년의회 코디네이터
토론 3	12:05~12:15 (10분)	Konstantinos Filippidis	President, Association of Active Youths of Florina/ 플로리나 (그리스) 청소년활동 연합 대표
종합토론	12:15~12:35 (20분)	종합토론	

- 정책제안 세부내용

-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적인 홍보 활성화
- 성남시 관내 모든 학교에서 오프라인 선거 의무화를 통한 행복의회 대표성 보장 제안
- 교내 참여 또는 직접적인 민주주의 시스템 도입 및 청소년의 정치적인 견해를 전달하는 방법 활성화

| 추진성과 |

- 국제컨퍼런스 참가 및 사례발표, 정책제안 등을 통해 청소년 의원들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및 행복의회의 대외적 홍보 강화



**2-7**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 개요 |

- 일 시 : 11. 9.(토) 14:00 ~ 18:00(본선)
  - 제안대회 설명회 : 2019. 8. 31.(토) 13:00~14:00
  - 참가 접수 : 2019. 10. 16.(수) ~ 23.(수) 18:00까지
- 장 소 : 성남시청 한누리
- 대 상 : 관내 청소년(만9세 이상 24세 이하) 개인 또는 팀 ※ 팀 인원 제한 10명 이내
- 인 원 : 6,469명(설명회 175명, 본선 200명, 네티즌투표 6,094명)

## - 내 용

-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부터 주요 정책까지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토크콘서트(개회식, 기조강연, 패널토의, 주제별 소그룹 토의 등) 시행
- 제안내용 서류(예산) 및 본선심사, 시상 등

- 주최·주관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 후 원 : 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가천대학교

## | 세부추진내용 |

## - 일정표

시간		소요시간 (분)	내용
부터	까지		
12:00	13:00	60	○ 참가팀(본선진출팀) 리허설
13:00	14:00	60	○ 참가자, 청중평가단, 심사위원 출석 확인
14:00	14:20	20	○ 개회식(내빈소개, 국민의례 및 개회사, 축사)
14:20	14:30	10	○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서 전달
14:30	17:00	150	○ 본선진출팀 제안내용 발표
17:00	17:30	30	○ 초청공연 및 심사결과 집계
17:30	18:00	30	○ 시상식 및 단체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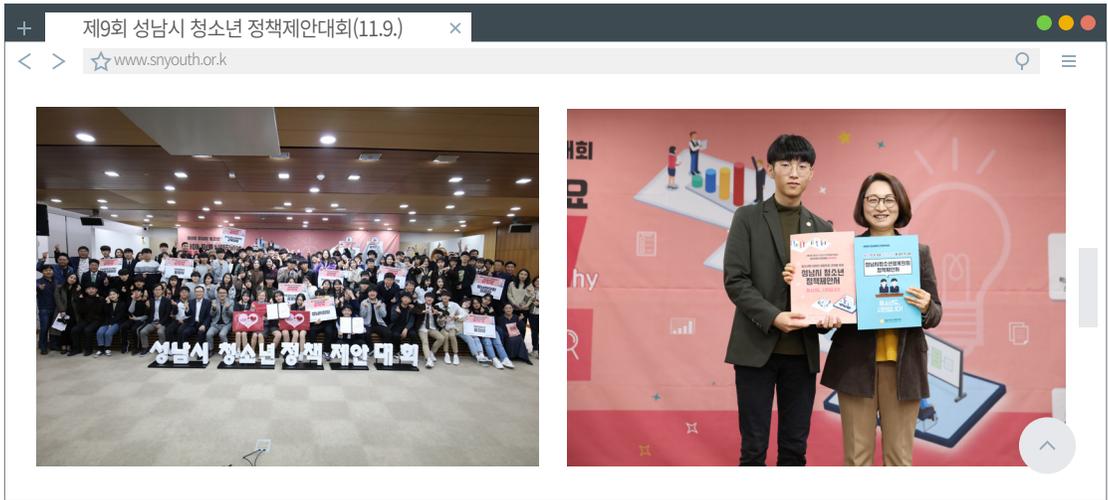
## - 심사결과

훈격 (상장번호)	모듬명 (소속)	수상작	비고
성남시장상(제1838호)	별다래 (수정청소년수련관)	우리 같이 건너요 안전한 횡단보도	지도자 공로상 수상
성남시장상(제1839호)	같이의 가치 (늘푸른 고등학교)	청소년증과 학생증 활성화 방안	
경기도성남교육 지원청교육장상 (제2019-124호)	꿈나르샤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성교육 활성화 방안 : 성남시는 곧 성(性)지가 됩니다.	
경기도성남교육 지원청교육장상 (제2019-125호)	블라드오가가 (이매중학교)	블라드를 재정비, 재설치한다.	
성남시의회 의장상 (제9594호)	드림윙즈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성남만의 일석사조 공병보증금 반환!	
성남시의회 의장상 (제9595호)	생각대로팀 (복정고등학교)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쓰레기 투기 장소 지정 및 스마트빔	
성남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상 (제1170호)	통학러들 (한솔고등학교)	청소년 등·하교 상황개선	
성남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상 (제1171호)	기쁨해 (운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선거 소음 규제 권고 지침	

가천대학교 총장상 (제2019-0780호)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온누리B (판교청소년수련관)	불법촬영 철렁철렁! 짹짹마세요!
가천대학교 총장상 (제2019-0781호)	가온누리 (한솔고등학교)	생존수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등학생으로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경기도성남 교육지원청 교사공로상 (제2019-126호)	수정청소년수련관	

| 추진성과 |

- 청소년 정책제안 건수 전년 대비 17건, 68% 상승 2018년(제8회) 25건 → 2019년(제9회) 42건
- 관내 사회참여 동아리 발굴 및 청소년 사회참여 네트워크 구축
- 단순한 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 실현을 위한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서 전달



### 03 청소년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단 운영

|명 칭|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문단

|임 기| 2019. 3. 16. ~ 2019. 12. 31.

|운영방법| 간담회 실시 및 관련 분야별 자문 등

|주요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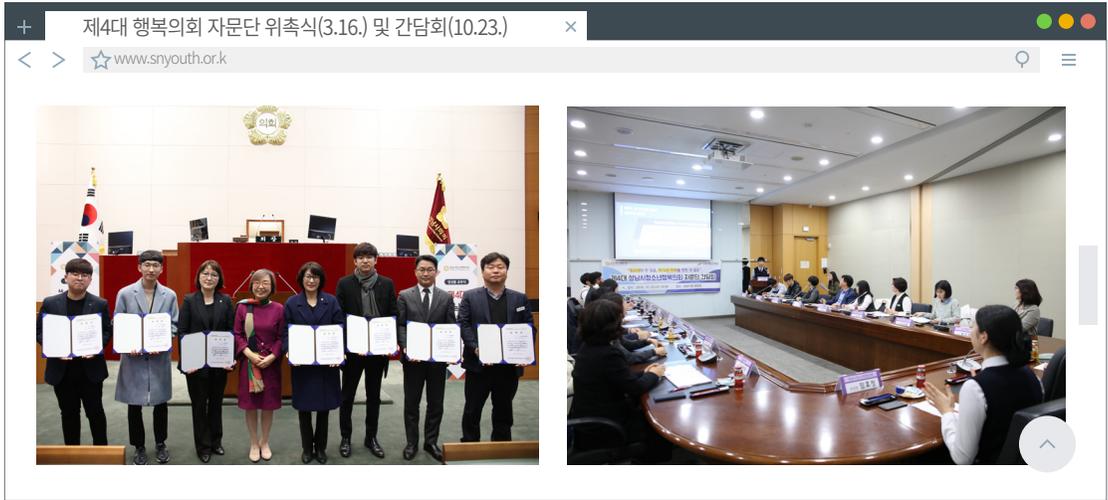
- 청소년 정책 관련 의제발굴 및 정책제안 자문
-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의정활동(입법,의회운영) 관련 교육
- 「행복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입법절차 등 의회운영 관련 자문
- 조례제정 및 정책제안 실현가능성 검토 등

|구성|

자문 영역		성명	대상	비고
입법활동(의회운영)		박은미	성남시의회 의원	위촉직
		임정미		
정책 의제 발굴	지역 언론인	정민훈	경기일보 기자	
		김용기	ABN아름방송 보도부장	
	청년 활동가	김주환	행복의회 청년 자문위원	
홍승민				
김선율				
의제검토		임형곤/서재섭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장	당연직
청소년 참여		이선근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당연직
		이재영/변호용	재단 사무국 활동진흥팀장	간사

|활동내용|

구분	기간 / 일자	내용
행복의회 운영현황 자문단 공유	4. 15.(월)	- 행복의회 의장단 및 위원회, TF팀 구성 등 운영현황 문자 발송을 통한 안내
온라인 자문	3월 ~ 12월	- 정책제안서 자문 및 피드백
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10. 23.(수) 18:00~19:40	- 장소: 성남시청소년재단 차오름실 - 대상: 제4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및 자문단 - 인원: 19명(청소년 의원 11명, 자문단 8명) - 내용: 정책제안서 전달 및 발표, 피드백
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	12. 20.(금) 16:00~18:00	- 장소: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 대상: 제4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및 학부모, 관계자 등 - 인원: 71명(청소년 의원 20명, 학부모 및 관계자, 친구 등 51명) - 내용: 개회식, 정책제안(조례의결, 자유발언), 폐회(소감, 논평) 등



**04**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책제안 추진

| 정책의제 13건 발굴, 정책제안 36회 추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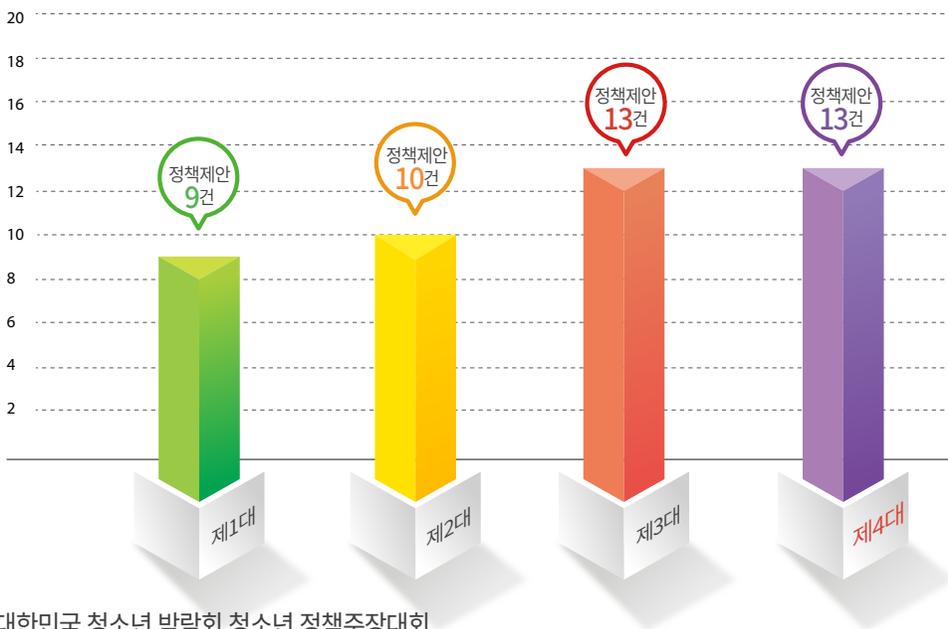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제안건수 : 13건		제안횟수 : 36회
1	<p>청소년 예산심의권 보장방안</p> <p>2019.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정책주장대회 참가</p>	<p>-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의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기본법 개정,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 청소년예산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정책 제안</p>
2	<p>2019. 국민생각함 청소년-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p>	<p>- 신호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신호등의 시간이 횡단보도의 길이에 따라 최저 3초에서 최고13초까지 연장이 되는 '그린맨 플러스 카드' 정책 도입 제안</p>
	<p>2019.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p>	<p>-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성남시 5개동 내 횡단보도에 교통카드처럼 생긴 카드를 신호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대면 보행시간이 최소 3초에서 13초 늘어나는 '그린맨 플러스' 설치 제안</p>
	<p>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p>	<p>-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그린맨 플러스 카드 정책 도입 제안 · 신호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신호등의 시간이 횡단보도의 길이에 따라 최저 3초에서 최고 13초까지 연장되어 교통약자의 통행권 보장 도모</p>
	<p>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성남시장님 제안서 전달</p>	
<p>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p>		

3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및 운영	2019. 국민생각함 청소년·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 공공 공연장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스마트안경, 화면해설 수신기) 설치 제안
		2019.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성남아트센터 3개 공연장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스마트안경, 화면해설 수신기) 설치 지원 제안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남시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li> <li>· 성남시 공공 공연장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스마트안경, 화면해설 수신기) 설치</li> <li>·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좌적 지정</li> <li>· 민간운영시설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권장 및 지원</li> </ul>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성남시장님 제안서 전달	
		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	
4	시각장애인 점자메뉴판 설치 및 지원	2019. 국민생각함 청소년·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 점자 메뉴판 제작 지원 및 점자 메뉴판 구비 점포 혜택 제안
		2019.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성남시 관내 시각장애인 분포가 많은 지역의 음식점 및 식음료 점포의 점자 메뉴판 제작 지원 제안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남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 점포 점자메뉴판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신설</li> <li>· 성남시에 위치하는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점포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메뉴판을 설치·운영</li> <li>· 점자메뉴판 제작 지원</li> <li>· 점자메뉴판 구비 점포 혜택</li> </ul>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성남시장님 제안서 전달	
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			
5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2019. 국민생각함 청소년·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 어린이 통학버스에 3점식 좌석안전띠 설치 및 승객자동 보호장치(에어백) 6개 이상 설치, 후방감지기, 후방카메라 설치, 운적에서 실시간으로 실내를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 구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제53조 개정 제안

6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	2019.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성남시 관내 지하철 역 인근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 제안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성남시장님 제안서 전달	
		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	
7	성남시 청소년 인권 조례 신설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 청소년이 성장하는 데에 있어 보호받을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표현·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복지를 받고 문화 예술을 즐길 권리, 청소년 노동을 보호 받을 권리, 사회에 참여할 권리, 가정과 사회 내에서 보호 받고, 교육받을 권리 등 성남시 청소년이 존중받아야 할 권리들에 대한 보장 제안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성남시장님 제안서 전달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	
8	성남시 청소년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 성남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제안 - 청소년 대상 법률지원 및 회복프로그램, 통합적 법률 사무에 대한 보조 추진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성남시장님 제안서 전달	
		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	
9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신설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 성남시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대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 · 연간 최대 600,000원으로 반기별 말일 지급 원칙에 따라 2번으로 분할 지급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성남시장님 제안서 전달	
		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	
10	성남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안전기준 설정 · 3점식 안전벨트, 승객자동보호장치(에어백) 6개 이상 설치,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설치, 후방감지기 및 후방카메라 설치, 12인승 초과 차량의 경우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실내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 설치 등 - 안전기준 충족 장려(안전기준 충족 차량에 대한 보상과 지원금 지원 등)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성남시장님 제안서 전달	
		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	
11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선거 의무화 제안	제3회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 in 성남	-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적인 홍보 활성화 - 성남시 관내 모든 학교에서 오프라인 선거 의무화를 통한 행복의회 대표성 보장 제안

12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문화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제4대 행복의회 TF팀 의제연구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연간 8만원의 바우처 형식의 문화생활비 지원
13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	- 가출청소년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가출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 VMS, 1365등과 연계해 시청에서 가정 밖 청소년만 해당되는 교육방식 봉사활동을 만들어 할 경우 봉사 시간 대신 알바비와 같이 최저시급을 정해 돈을 지급

| 지난 4년간 행복의회 정책제안 비교추이 |



**4-1**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 정책주장대회

|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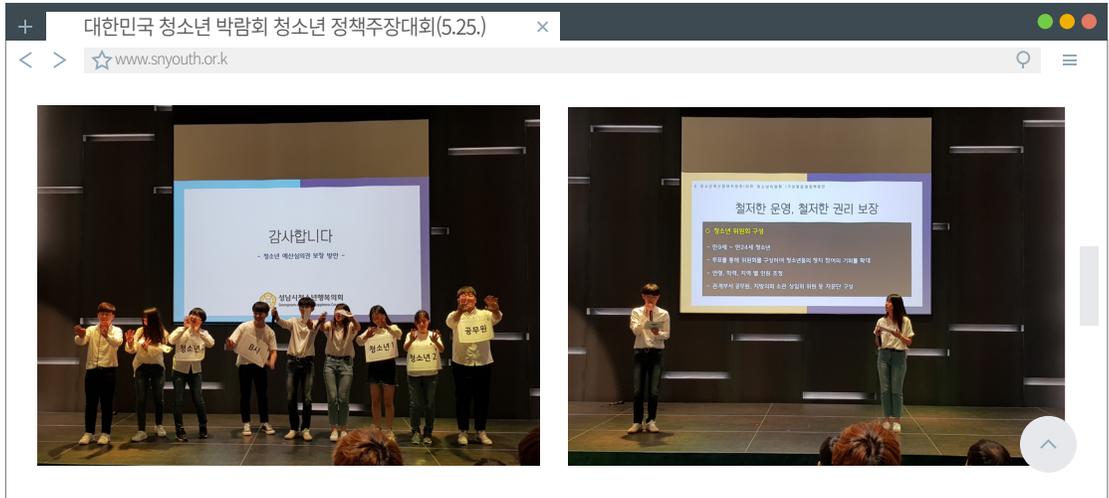
- 일 시 : 5. 25.(토) 08:00~16:00
-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경기도 수원시 소재)
- 대 상 :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및 청년자문위원
- 인 원 : 16명
- 내 용 : 정책주장대회 예선 통과에 따른 본선 발표

| 세부추진내용 |

주제	내용
청소년 예산심의권 보장 방안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기본법 개정,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 청소년예산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정책 제언

**| 추진성과 |**

-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 정책주장대회』 참가를 통해 성남시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 단위의 청소년 참여 정책 제안을 통한 청소년 자치권 확대 도모



**4-2) 국민생각함 청소년·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 개요 |**

- 대 상 :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청소년·대학생 누구나, 개인/팀)
- 주 제 : 사회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자유제안
- 기 간 : 2019. 6. 1.(토) ~ 7. 15.(월)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접속 후 해당 공모전 참가하기
- 주 최 : 국민권익위원회

**| 세부추진내용 |**

- 제안내용

구분	내용	비고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Green girl(양현진)	그린 맨 플러스
2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사회적 약자TF팀(김지민)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운영
3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시나브로(임효정)	시각장애인 점자 메뉴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제안
4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어린이 통학버스TF팀(김주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 추진성과 |

구분	내용
1등	작은 것만 바꾸어도 커지는 안전
2등	공연장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및 운영
3등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교육 이수증 발급
	휠체어 탄다고 대피훈련도 안 시켜주나요?
체험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그린 맨 플러스
	횡단보도 그늘막, 파라솔 대신 나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뉴판 설치 지원에 관한 제안
	말'문' 막하시나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견 입마개 착용 및 활용방안	



**4-3**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개요 |

- 제출일자 : 7. 31.(수)
- 제출방법 : 인터넷 신청
- 주 최 : 성남시

| 세부추진내용 |

- 제안내용

구분	단체명(대표자)	사업제목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교통안전 TF팀(양현진)	성남시 교통약자를 위한 그린맨 플러스 카드 도입
2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점자메뉴판 TF팀(임효정)	성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뉴판 설치 지원
3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흡연부스 TF팀(이지훈)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
4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사회적 약자TF팀(김지민)	성남시 공연장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지원

#### 4-4 제4대 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 | 개요 |

- 일 시 : 10. 23.(수) 18:00~19:40
- 장 소 : 성남시청 모란관
- 대 상 : 제4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및 자문단
- 인 원 : 19명(청소년 의원 11명, 자문단 8명)
- 내 용 : 정책제안서 전달 및 발표,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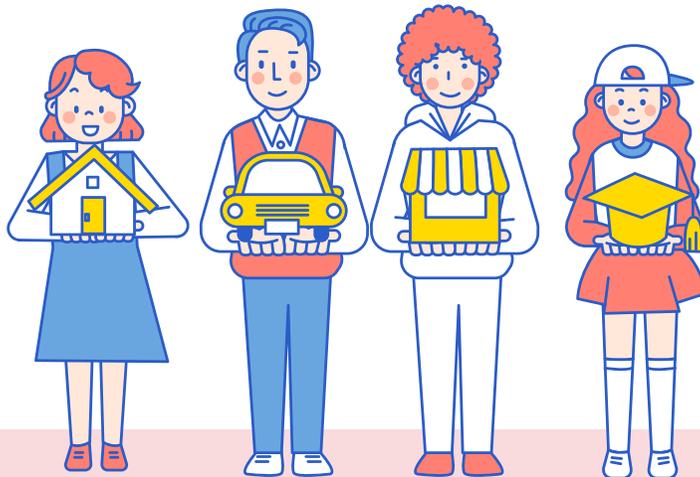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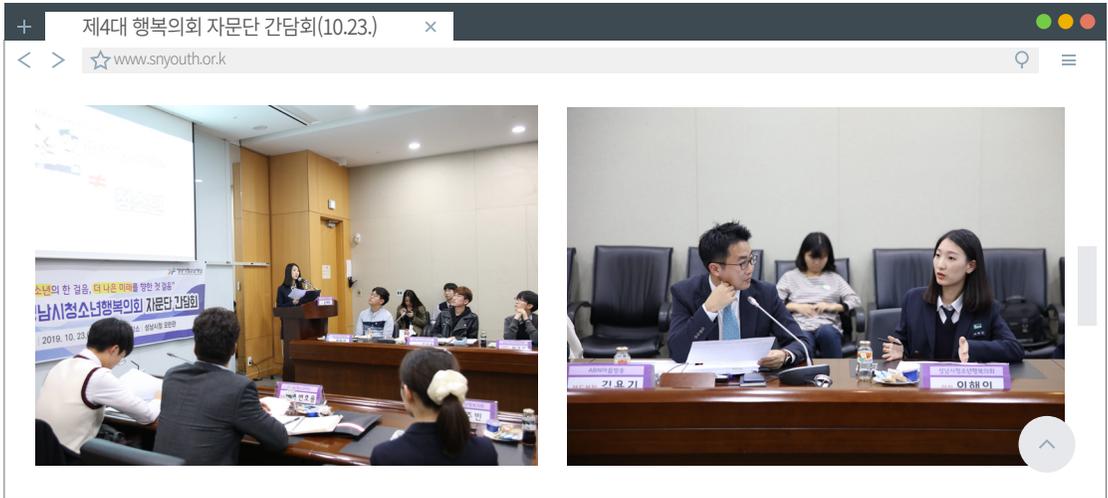
##### | 세부추진내용 |

##### - 제안내용

연번	학교명	동아리명
1	「성남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 점포 점자메뉴판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신설	- 성남시에 위치하는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점포 등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메뉴판을 설치·운영 · 점자메뉴판 제작 지원 · 점자메뉴판 구비 점포 혜택
2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그린맨 플러스 카드 정책 도입 제안 · 신호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신호등의 시간이 횡단보도의 길이에 따라 최저 3초에서 최고 13초까지 연장 되어 교통약자의 통행권 보장 도모
3	「성남시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 성남시 공공 공연장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스마트 안경, 화면 해설 수신기) 설치 -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좌석 지정 - 민간운영시설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권장 및 지원
4	「성남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안전기준 설정 · 3점식 안전벨트, 승객자동보호장치(에어백) 6개 이상 설치,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설치, 후방 감지기 및 후방카메라 설치, 12인승 초과 차량의 경우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실내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 설치 등 - 안전기준 충족 장려(안전기준 충족 차량에 대한 보상과 지원금 지원 등)
5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신설	- 성남시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대학생 대상 교통비지원 · 연간 최대 600,000원으로 반기별 말일 지급 원칙에 따라 2번으로 분할 지급
6	「성남시 청소년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	- 성남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제안 - 청소년 대상 법률지원 및 회복프로그램, 통합적 법률 사무에 대한 보조 추진
7	「성남시 청소년 인권 조례」 신설	- 청소년이 성장하는 데에 있어 보호받을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표현·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복지를 받고 문화 예술을 즐길 권리, 청소년 노동을 보호 받을 권리, 사회에 참여할 권리, 가정과 사회 내에서 보호 받고, 교육받을 권리 등 성남시 청소년이 존중받아야 할 권리들에 대한 보장 제안
8	「길거리 흡연 부스 설치」 제안	- 성남시 길거리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및 흡연부스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후 흡연부스 설치

### | 추진성과 |

- 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한 지속적인 정책제안 추진 노력
- 자문단 간담회 피드백 받은 내용을 토대로 정책 수정·보완을 통해 본회의 추진



#### 4-5 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

##### | 개요 |

- 일 시 : 12. 20.(금) 16:00 ~ 18:00
- 장 소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 대 상 :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및 학부모, 관계자 등
- 인 원 : 71명(청소년 의원 20명, 학부모 및 관계자, 친구 등 51명)
- 내 용 : 개회식, 정책제안(조례의결, 자유발언), 폐회(소감, 논평) 등

##### | 세부추진내용 |

##### - 제안내용

연번	세부내용
1	<p>교육문화 상임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주제 : 성남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li>○ 발 표 자 : 김지민(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TF팀)</li> <li>○ 주요내용 :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충족 장려 (안전기준 충족 차량에 대한 보상과 지원금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점식 안전벨트, 승객자동보호장치(에어백) 6개 이상 설치,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설치, 후방감지기 및 후방카메라 설치, 12인승 초과 차량의 경우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실내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 설치 등</li> </ul> </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주제 : 성남시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li> <li>○ 발 표 자 : 김서현(사회적 약자 TF팀)</li> <li>○ 주요내용 : 성남시 공공 공연장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스마트 안경, 화면 해설 수신기) 설치,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좌적 지정, 민간운영시설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권장 및 지원</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주제 : 성남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 점포 점자메뉴판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li> <li>○ 발 표 자 : 이민하(사회적 약자 TF팀)</li> <li>○ 주요내용 : 성남시에 위치하는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점포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메뉴판을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메뉴판 제작 지원</li> <li>· 점자메뉴판 구비 점포 혜택</li> </ul> </li> </ul>
4	<p>인권권익 상임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주제 : 성남시 청소년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li> <li>○ 발 표 자 : 신가원(청소년 법률지원TF팀)</li> <li>○ 주요내용 : 성남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 대상 법률지원 및 회복프로그램, 통합적 법률 사무에 대한 보조 추진 제안</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주제 : 성남시 청소년 인권 조례</li> <li>○ 발 표 자 : 이해인(청소년 인권TF팀)</li> <li>○ 주요내용 : 청소년이 성장하는 데에 있어 보호받을 권리, 건강하게 살아가 권리, 표현·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복지를 받고 문화 예술을 즐길 권리, 청소년 노동을 보호 받을 권리, 사회에 참여할 권리, 가정과 사회 내에서 보호 받고, 교육받을 권리 등 성남시 청소년이 존중받아야 할 권리들에 대한 보장 제안</li> </ul>
6	<p>환경복지 상임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주제 :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li> <li>○ 발 표 자 : 양현진(사회적 약자 TF팀)</li> <li>○ 주요내용 : 그린맨 플러스 카드 정책 도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호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신호등의 시간이 횡단보도의 길이에 따라 최저 3초에서 최고 13초까지 연장되어 교통약자의 통행권 보장 도모</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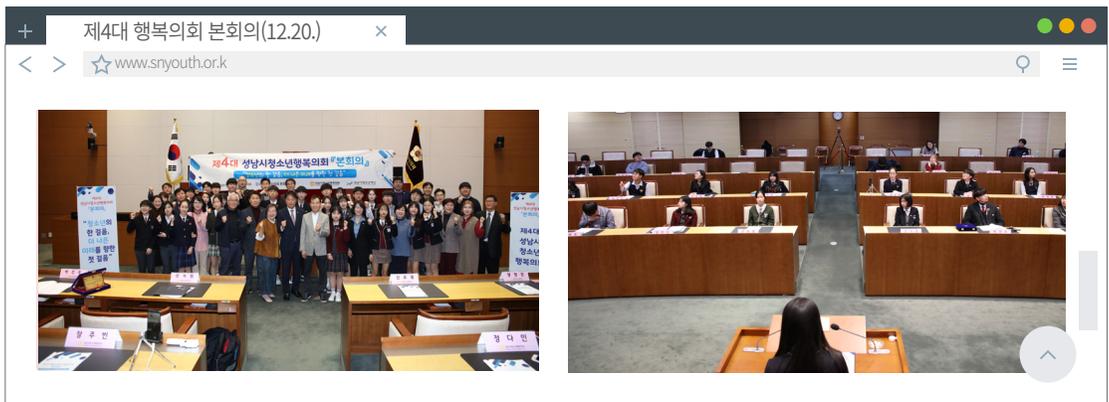
7	환경복지 상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주제 :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li> <li>○ 발 표 자 : 임효정(청년 복지 TF팀)</li> <li>○ 주요내용 : 성남시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대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 ·연간 최대 600,000원으로 반기별 말일 지급 원칙에 따라 2번으로 분할 지급</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주제 :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li>○ 발 표 자 : 최윤서(가정 밖 청소년 TF팀)</li> <li>○ 주요내용 : 가출 청소년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및 가정 밖 청소년 대상 교육방식의 봉사활동에 참여 할 경우 봉사시간 대신 알바비를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생계 및 복지 지원</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주제 :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li> <li>○ 발 표 자 : 이세미(흡연부스 TF팀)</li> <li>○ 주요내용 : 성남시 길거리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및 흡연부스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후 흡연부스 설치, 흡연부스에 표지판 부착 및 자원 봉사자 연계 흡연부스 관리 제안</li> </ul>

- 투표결과 조례 제정

구분		찬성	반대	기권	가/부
1	성남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	1	0	가결
2	성남시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	0	0	가결
3	성남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 점포 점자메뉴판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19	1	0	가결
4	성남시 청소년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5	5	0	가결
5	성남시 청소년 인권 조례	18	2	0	가결
6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18	2	0	가결
7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19	1	0	가결
8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	4	1	가결

| 추진성과 |

- 의안발의, 의안투표, 조례제정 등 본회의를 통한 입법화 과정 이해 및 대의 민주주의의 간접 경험
- 청소년 의견수렴 ⇒ 자료조사 및 의제연구 ⇒ 정책제안 및 자문, 피드백 ⇒ 의제 상정 등 연간 의정활동을 통한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및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 보장



05 지속적인 의제연구 및 제안을 통한 정책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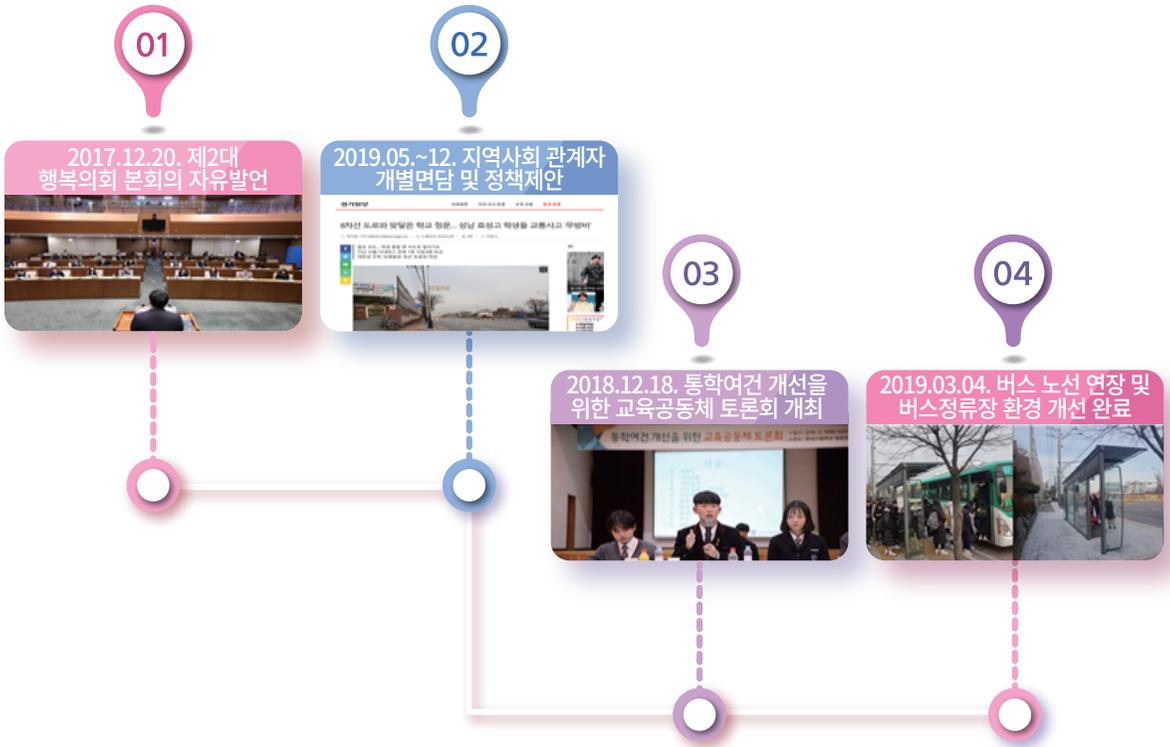
| 정책제안 세부내용 |

- 「효성고등학교 통학여건 개선 제안」

열악한 보행환경과 부족한 시내버스 노선, 버스 과속등의 문제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학교 앞 통학로 개선 요청

- 효성고등학교 연결 버스 노선 연장
- 효성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요청
- 효성고등학교 앞 예외 스킴존 지정을 통한 30KM속도 제한
- 왕복 8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축소하여 버스 정류소 공간 확대

| 추진경과 |



| 추진내용 |

구분	내용
2017.12.20.	제2대 행복의회 본회의 자유발언 - 제2대 행복의회 본회의에서 등·하교 시간대 효성고 앞 버스노선 추가 증설 등의 내용으로 자유발언 진행
2018. 5. ~ 12.	개별면담 정책제안 - 성남시의회 의원 등 관계자 대상 개별 면담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제안 추진 등 - 지역사회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추진

2018.12.18.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공동체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공동체 토론회 주최</li> <li>-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논의</li> <li>- 성남시청 교통기획과, 분당·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 참석, 의견공유</li> </ul>
2019.3.4.	정책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7번 버스 5대 증차 및 태평역을 종점으로 연장 운영</li> <li>· 효성고~복정역, 가천대역, 태평역 경유 노선 연장</li> <li>- 효성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li> <li>· 효성고등학교 앞 회차지점에 학교 앞 서행 안내 팻말 설치</li> <li>· 효성고등학교 앞 지그재그 정지선 정비</li> <li>· 버스 정류소 공간 확장(118㎡ 규모의 보도블럭 189㎡로 확장)</li> <li>· 횡단보도 페인트칠 등 환경 개선 공사</li> </ul>

| 지난 4년간 행복의회 정책반영 비교추이 |



06 지속적인 의제연구 및 제안을 통한 정책 반영

구분	일시	주제	내용	비고
1회차	02. 23.(토) 10:00~ 11:00	행복의회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운영규정 · 정의, 역할, 지위, 자격 및 구성, 임기 의원의 자격상실, 표창, 권리와 의무, 조직구성 등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윤리헌장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행동강령	간사 김마리
2회차	02. 23.(토) 11:00~ 12:00	청소년 의원이 가 져야 할 자세	- 청소년의회의 역할 - 지역사회에서의 행복의회 -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행복의회 3대의장 최선웅
3회차	03. 16.(토) 15:00~ 17:00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 마음열기, 협상력 훈련 등	권혜진 연구원
4회차	03. 16.(토) 17:00~ 18:30	청소년의회의 역할 및 정책제안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소개 - 행복의회 의원의 법률적 권리와 대표성 - 정책제안 과정 · 문제인식-의제연구-입법추진- 제1~3대 행복의회 활동사례 - 행복의회 활동 시 유용한 사이트 안내	청년 자문위원 김주환, 홍승민
5회차	03. 30.(토) 09:30~ 10:30	윤리위원회 규정	- 윤리위원회 운영 배경 - 윤리위원회 판단규정 · 개요, 동기부여(표창,상점), 징계(벌점,징계) -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 설립배경, 설립요건, 내부징계, 오픈채팅방, 불신임안, 윤리위원회 회의, 조직도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규정 · 제9조(의원직 상실), 제10조(의원의 권리와 의무) 8항, 제19조(불신임안), 제24조(윤리위원회) - 윤리위원회에 요구되는 자세 및 질의응답	청년 자문위원 김선율
6회차	5. 12.(토)	헌법의 이해	- 헌법의 이해 - 헌법과 정치참여에 관한 권리 -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설명 - 내가 만드는 기본권 발표하기	청년 자문위원 김주환
7회차	6. 1.(토)	삼권분립과 입법기관	- 정부형태 및 국회 소개 - 지방자치 및 의회의 기능 - 정책의제 심의과정 연습하기	청년 자문위원 홍승민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정책 제안



## 성남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TF  
교육문화상임위원회

김대희, 김지민, 양현진, 장주빈 의원  
홍승민, 김주환 청년자문위원

### 01 문제인식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두 명의 어린 생명을 잃었다. 새까만 바다에서 300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후 우리 사회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미안하고 안타까운 사고였다. 우리는 4월이 되면 그들을 기리며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사회의 불완전한 제도로 여전히 아동들이 희생되고 있다.

이번 인천 송도에서 사고를 당한 유찬이와 태호의 배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안전벨트는 했지만 그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2점식 안전벨트의 한계는 사고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며, 3점식 안전벨트가 모든 좌석에 설치된 차량도 생산되고 있다.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기구로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에어백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아이들은 여전히 살아 숨 쉴 수 있었을 것이다. 유찬이의 사인(死因)은 ‘두개골 파열’이라고 한다. 안전벨트로는 지킬 수 없는 머리를 다쳐 두개골이 파열되었다고 한다. ‘그 자리에 에어백이 있었다면’이라는 가정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 ‘사이드-커튼 에어백’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설치되는 차량도 늘어나고 있다. 에어백이 앞 좌석에 2개만 설치되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들이 타는 모든 좌석은 안전해야 하기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6개 이상의 에어백이 설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서울 양천구에서는 50분 동안 태권도장 차에 7살 아이가 갇혀 있었다고 한다. 너무 질게 선풍 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여서 통학버스 안이 잘 보이지 않았고, 관장이 차 앞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미처 내리지 못한 한 아이가 다급히 창문을 두드리지만 3분 동안이나 이를 눈치 채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사고가 난 건 지난 5월 17일 오후 1시쯤. 당일 낮 최고 기온이 28도였는데, 50분간 차 안에 갇혔던 7살 아이는 겁에 질려 온몸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었다. 피해 아동 어머니에 따르면, 차 안에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아이가 목이 잠겼고 현재도 ‘나는 무섭지 않아’라고 혼자 중얼거린다고 한다. 고열과 말더듬 증상을 보인 피해 아동은 지금까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사고 차량은 선풍이 질게 처리돼 있고 문자가 새겨져 있어 안에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폭염 때였다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우리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하여 선풍을 제거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다음 희생자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300명을 한꺼번에 잃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번 인천 송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찬이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낳기 전에 사회는 변화해야 한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 중심에 아동 당사자인 ‘우리’가 있어야 한다.

## 02 현황 및 문제점

### ○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 및 문제점<sup>1)2)</sup>

위 문제인식 부분에서도 보았듯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이다.

1. 2점식 안전벨트가 대부분 설치되어있다.
2. 사이드·커튼 에어백 설치가 미비하다.
3. 창문에 선팅이 잘게 되어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낡고 오래된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고, 에어백은 앞자리 두 개만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될 수 있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길이가 조절되고 아이 몸에 맞다면 성인용 2점식, 3점식 벨트를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또한 스포츠 경향 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 예체능 학원 관계자는 사이드·커튼 에어백은 고사하고 에어백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 및 문제점<sup>3)4)</sup>

우리나라 KS규격에 따르면 3점식안전벨트 (어깨에서 비스듬히 아래로 매는 것)는 체중의 약 30배(1천8백10kg), 2점식 (허리에 매는 것)은 45배(2천7백20kg)를 견딜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또 충격을 줄이기 위해 안전벨트m당 55 (2점식)~1백10kg (3점식)의 순간 충격을 흡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안전장치에 의해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3점식은 평균 57%, 2점식은 31%가 큰 부상 없이 안전하게 생명을 건질 수 있다. 3점식 안전벨트가 구한 목숨은 대략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2005년 유럽연합에서는 약 1만 1700명의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2004년 미국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으로 인해 한해 1만5200명이 교통사고에서 목숨을 구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500억 달러 감소하였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 르노 사 '마스터 버스'의 3점식 안전벨트가 전 좌석 설치된 모습

### ○ 사이드·커튼 에어백의 안전성<sup>5)</sup>

사이드에어백은 시트 옆면에 탑재되어 있다. 충돌 시 탑승자와 문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작동되며 사이드 에어백은 가장 빠르게 발동된다. 탑승자의 복부와 흉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자동차 에어백이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이드에어백이 교통사고 시 사망 확률을 26%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튼에어백은 주로 사이드 윈도우 상단의 루프라인을 따라 탑재가 되어 있으며, 충돌 시 창문을 덮도록 펼쳐진다. 위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커튼에어백은 교통사고 시 사망 확률을 37%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튼에어백은 다른 에어백들과는 달리 작동 후 몇 초 동안은 작동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차량 전복에 의한 탑승자의 외부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충돌 에너지는 탑승자에게 집중된다. 따라서 차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실내에서 탑승자가 받는 충격은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사이드에어백과 커튼에어백을 통해 모든 각도에서의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신해림, 「복스車, 벨트는 대충...또다른 `송도 승합차` 지급도 운행중」, 『매일경제』, 2019.5.29.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63370/>)

2)손재철, 「노후된 어린이 통학버스·학원 승합차, 이대로 돌건가」, 『스포츠경향』, 2017.8.30.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708301840003&sec\\_id=563002&pt=nv](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708301840003&sec_id=563002&pt=nv))

3)이형식, 「3점식 안전벨트 50돌..안전'은 진화한다」, 『한겨레』, 2009.1.28. (<http://hani.co.kr/art/economy/car/335574.html#csidxfdf8161b2ac17efbf99b1f92a8995e>)

4)2004 美 도로교통안전청 NHTSA 조사

5)McCartt, Anne T, 「Efficacy of side airbags in reducing driver deaths in driver-side car and SUV collisions」, 『Traffic Injury Prevention (TIP)』, 2007. (<https://www.iihs.org/topics/bibliography/ref/1858>)

안전벨트만 착용했을 때보다 보호되는 신체 부위가 많아지기에 상해는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타 시도 조례 현황<sup>6)</sup>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여주시 등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성남시 차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전라남도 여주시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2. 경기도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3.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4.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5. 충청남도 천안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6.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전국 조례 제정 현황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03 정책 제안

○ 성남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핵심 내용 1. |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설정

제7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기준)

1. 자동차 측-후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한 기준 미만으로 외부에서 차량 내부 관측이 용이한 차량일 것
2. 승차정원만큼 3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승객자동보호장치(에어백)이 6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4.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가 설치된 차량일 것
5. 후방감지기와 후방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일 것
6. 12인승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실내를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일 것

**| 핵심 내용 2. | 안전기준 충족 장려 (안전기준 충족 차량에 대한 보상과 지원금)**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1. 본 조례 제7조 3호를 충족하는 차량에 대한 보상을 최고수준으로 할 것
2. 본 조례 제7조 2호를 충족하는 차량에 대한 보상을 차순위로 할 것
3. 본 조례 제7조 1호를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 일정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
4.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례안 전문**

성남시조례 제0호

**성남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어린이집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시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운행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3. 어린이통학버스 실태조사
  4.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기준)**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1. 자동차 측후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한 기준 미만으로 외부에서 차량 내부 관측이 용이한 차량일 것
2. 승차정원만큼 3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승객자동보호장치(에어백)가 6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4.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가 설치된 차량일 것
5. 후방감지기와 후방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일 것
6. 12인승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실내를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일 것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본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본 조례 제7조 3호를 충족하는 차량에 대한 보상을 최고수준으로 할 것
2. 본 조례 제7조 2호를 충족하는 차량에 대한 보상을 차순위로 할 것
3. 본 조례 제7조 1호를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 일정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
4.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4 기대효과

### ○ 관련 사고 사전 예방 효과

- 썬팅을 제거·완화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차량 내 방치 아동의 발견 시점을 비약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

### ○ 충돌 시 안전성 확보

- 안전의 기본이자 핵심인 3점식 안전벨트 설치를 장려함으로써 충돌 시 경추 부위의 골절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하고 머리, 경추, 허리 등 중요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사이드/커튼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성남시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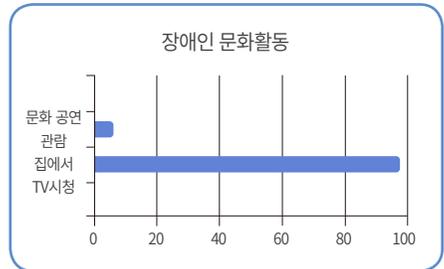
사회적 약자 TF  
교육문화상임위원회

임효정, 김서현, 김지민, 양현진, 이민하 의원

### 01 문제인식

#### ○ 장애인 여가생활의 장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9만 1천 405명 가운데 6.4%가 장애인 문화 활동(중복 선택)으로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했다고 밝혔고 96.6%가 ‘여가생활의 장벽’ 때문에 보고 싶거나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집에서 TV 시청’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TV 시청조차도 수화나 자막이 없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두가 평등하고 여가 시간에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경기도 내 공연 관련 편의기기 부재

- 경기도 내 공연장은 장애인들에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휠체어 석, 점자안내도 등 장애인편의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탓이다. 이들은 공연 해설자막 모니터, 공연 음성 해설 이어폰 등 ‘공연 관람 편의 기기’가 절실하다. 하지만 도내 공연장에는 이와 같은 기기와 서비스 등이 전무하므로, 장애인에게 공연 관람은 사실상 꿈같은 이야기이다.

- 시각장애인 최재훈씨(54)는 평생 공연장을 가본 적이 없다. 공연을 관람하기엔 공연장 안에 진입 장벽이 너무 많은 탓이다. 그는 “비장애인들이 웃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린 덩그러니 집안에 앉아 있다. 그만큼 공연을 즐기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며 “비장애인들이 만들어 놓은 관람 문화의 틀에서 우리 같은 장애인은 공연 관람을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각장애인 김나연씨(40)는 “비장애인들은 우리가 공연을 보거나 듣지 못하니 당연히 공연은 관람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관람보조기기’를 제공해주면 우리도 비장애인석에서 충분히 공연을 즐길 수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 02 현황 및 문제점

####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 복지법

-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14. 10. 21.] [경기도조례 제4787호, 2014. 10. 21., 제정]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 5조의 3번을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내용에서 관람 보조 기기를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현재 시행되고 있지도 않다는 한계가 있다.

○ 경기도 내 관람 보조기기 및 서비스 지원 부재

‘관람보조기기’란 공연해설 오디오 서비스, 수화통역, 좌석모니터 자막 서비스 등을 말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좌석모니터 자막 서비스를 받으면 무대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모니터 자막으로 보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한쪽 귀에 공연해설 오디오 서비스가 되는 이어폰을 끼면 생생한 음악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도내 151개 공공 공연장 중 관람보조기기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연장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대표 공연장인 경기도문화의전당도 장애인 관람편의기기 제공 서비스는 없었으며, 공연장 수준이 높다고 평을 받는 고양아람누리, **성남아트센터 공연장도 이 같은 서비스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탓에 문화 향유는 커녕 장애인들은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장애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문화활동(중복선택 가능)'으로 9만 1천405명 장애인 중 6.4%만이 문화예술 공연관람을 한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96%가 '집에서 TV시청'을 꼽았다.

[출처: [경기일보]장애인 장벽 높은 경기도 문화공연장, 상. 문화향유권 외면

###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 시스템의 한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다. CJ CGV는 매달 '장애인 영화관람 데이'라는 이름으로 화면해설과 한글자막이 들어간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배리어프리 영화를 '개방형'으로만 상영한다. 대사와 음악·소리 정보가 스크린에 뜨고, 스피커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음성이 함께 나오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비장애인들은 불필요한 자막을 보거나 화면해설을 들어야 하므로 불편함을 느낀다. 장애인들 역시 이런 상황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극장은 비장애인들이 해당 시간에 티켓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배리어프리 영화를 편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필요한 사람만 별도의 보조기기를 받아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수신받는 '폐쇄형' 상영방식이다. 기술 발전과 함께 호주에서도 이 방식으로 정착화되고 있다.

#### 1) 미국의 사례: 스크린 화면 해설 시스템

2016년 5월 발간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확대를 위한 폐쇄 상영시스템 현황 조사 연구'에 따르면 미국 1위 극장인 리갈 엔터테인먼트는 소니 기술을 도입해 자사의 600개 영화관의 80%에 해당하는 약 6천 개의 스크린에 화면해설 시스템을 구축했다. 화면해설이 필요한 사람은 해당 영화 상영에 맞춰 프로그램화된 헤드셋과 작은 수신기 박스를 받아 입장한다. 자막의 경우 관객 좌석에 부착된 투명 패널에 자막이 나오는 기술이 주로 이용된다.

#### 2) 호주의 사례: 캡티브 시스템

호주의 경우 4대 영화관체인이 운영하는 132개 복합영화관에서 배리어프리 영화를 최소 1개 이상 상영관에서 상영하도록 하고 있다. 폐쇄형 자막 장치로는 캡티브(Captiview)가 주로 사용된다. 좌석의 컵 받침대에 부착한 화면에 자막이 뜨는 방식으로, 스크린 주위를 가리개가 감싸고 있어 다른 관객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

폐쇄형 시스템은 시청각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비장애인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도 화면해설을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안경을 끼면 한글자막이 보이는 청각장애인용 스마트 안경 등이 있긴 하다. 그러나 화면해설 음성 수신기나 스마트 안경 보조장비 등 표준화된 기술이 미비한 수준이다.

극장들은 장애인들의 관람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폐쇄형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영환경과 장비 등에 대한 표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자막시스템(영화진흥위원회 제공)



호주의 캡티브 시스템(영화진흥위원회 제공)

### 3) 시청각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 사례

지난 2016년 2월 시청각장애인 4명이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CJ CGV,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청각장애인에게는 음성으로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을 제공하라는 게 이들의 청구 취지였다. 지난한 공방이 이어졌고, 22개월 만인 이듬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는 원고 승소. 법원이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할 경우 영화관 운영사들은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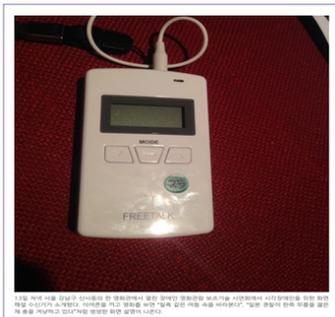
[출처]: [조선일보]모두를 위한 소송 세상을 바꾸다

## 03 정책 제안

- 공공 공연장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관람 보조기기: 스마트 안경, 화면 해설 수신기)



1월 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CJ CGV 강남점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보도록 돕는 스마트 안경이 장애인 관람객에게 시연되고 있다. 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면 소리, 화면의 움직임과 기물을 들을 뿐 아니라, 화면을 쓰고 스크린을 보면 마치 스크린에 자막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2월 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CJ CGV 강남점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보도록 돕는 스마트 안경이 장애인 관람객에게 시연되고 있다. 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면 마치 스크린에 자막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안경)이나 화면 해설을 해주는 수신기 등 장애인들의 공연 관람을 돕는 기기를 말한다.

[출처]: [한겨레]장애인 영화관람 보조기기 시연...“영화관에서 갖춰지면”



-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좌석 지정
- 민간운영시설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권장 및 지원

### ○ 성남시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관람 보조기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관 중 성남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이란 시청각 장애인들의 관람을 보조하는 스마트 안경(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안경을 쓰고 스크린을 보면 마치 스크린에 자막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안경)이나 화면 해설을 해주는 수신기 등 장애인들의 공연 관람을 돕는 기기를 말한다.

4. “증강현실”이란 우리가 직접 보는 현실세계의 모습에다가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장애인 관람 보조기기의 설치)**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연장 등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의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 시설)**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좌석과 출입구 및 대피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를 설치하는 좌석은 통로 쪽 좌석과 임의로 정한 한 열 또한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좌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사업비의 부담)** 시장은 시가 관리 운영하거나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및 지원)**

①시장은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장애인 보조 관람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04 기대효과**

- 공공 공연장의 장애인 관람 보조 기기 설치 의무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문화적 권리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와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 또한 기대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문화생활 접근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 공공 공연장에서의 시범 시행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사적으로 운영되는 영화관, 문화시설에서도 확대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성남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 점포 점자메뉴판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사회적 약자 TF  
인권권익상임위원회

임효정, 김서현, 김지민, 양현진, 이민하 의원

### 01 문제인식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들은 어떻게 메뉴 주문을 할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문득 든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내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볼 수 있는 점자들을 생각하며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메뉴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 정책제안서 주제를 고민하다 찾아보니 점자 메뉴판을 설치한 곳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나오는 것은 노원구의 사례 또는 여고생 4명에서 프랜차이즈의 점자 메뉴판 도입을 이끌어냈다는 기사 뿐이었다. 그것을 알고 된 후 난 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시각장애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외출을 하고 외식을 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점자 메뉴판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을 시각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각 장애인들의 먹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점자 메뉴판은 전국에 있는 식당에 필수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 02 현황 및 사례

#### 2-(1) 현황

현황을 찾아보니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점자 메뉴판에 관해 진행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2) 사례

##### 1) 노원구 점자 메뉴판 보급



서울점자도서관이 노원구에 있는 식당과 카페 450곳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메뉴판을 보급했다. 평소 점자에 관심이 있던 주민 6명을 모집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장을 일일이 방문하고 직접 제작한 것이다.<sup>7)</sup>

7) 출처: "주문 어렵지 않아요" ...노원구 점자 메뉴판 보급\_티브로드서울방송지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 2) 강남구 입맛 돌음 프로젝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내 음식점에 점자메뉴판을 보급하는 ‘입맛 돌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우선 이달까지 강남구 소재 식음료 매장을 대상(프랜차이즈 매장 제외)으로 참가신청을 받고 이중 시각장애인들의 방문 빈도가 높은 매장들을 선정한다. 그 후에는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점자메뉴판 제작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강남구는 오는 12월까지 50개 매장에 점자메뉴판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며, 지역 내 복지관 홈페이지 등에 점자메뉴판 보유 매장을 공지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sup>8)</sup>

## 3) 인화여자고등학교 사례

인화여고 학생들이 학교 과제로 시작한 ‘대형 업체 점자메뉴판 의무화와 영세 사업장 점자메뉴판도입 지원’ 공공정책 제안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롯데리아·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가 동참했다. 종각역에 위치한 롯데리아에서 진행된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점자메뉴판 보급화 협약식’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롯데리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메뉴판 보급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고, 이를 위해 롯데리아 매장 내 점자 메뉴판 보급화, 점자메뉴판 제작 및 홍보, 시각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 선전전 등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sup>9)</sup>



## 4) 서울 은평구 사례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계단 대신 경사로를 만들고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민선6기 공약사업인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구가 ‘장애인이나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물리적·심리적 장벽 제거를 통해 무장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은평로 주변 18개 상점과 이동기기 수리센터, 물빛공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은평로 주변 19개 상점에 경사로와 손잡이, 점자표지판과 점자메뉴판 등을 추가 설치했다. 은평육교에는 난간 손잡이와 점자표지판을 설치해 노약자와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육교 이용을 도왔다. 구는 사업에 협조한 상점주와 구민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장벽 없는 마을상점’ 마크 인증식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2017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설치구역 확대를 통해 구가 장벽 없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sup>10)</sup>

## 5) 문화체육관광부 사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17일(월)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점자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 시행해 나가야 할 3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추진 과제 마련 문체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비시각장애인의 점자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모두 점자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

8) [강남구청] 강남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입맛 돌음 프로젝트’시동!

9) [머니투데이] 프랜차이즈협회·롯데리아, 점자메뉴판 보급 협약 / [더나은미래] 프랜차이즈 카페에 점자 메뉴판 도입을 - 여고생 4인방의 빛나는 도전

10) [경사로에 점자메뉴판까지]...은평구,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헌장’

갈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하생략)<sup>11)</sup>

#### 6)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점자메뉴판 사례

서울시 동작구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사회시설을 대상으로 점자메뉴판 제작과 보급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음식점, 카페 등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할 때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정보 접근권과 지역사회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성대시장, 신대방삼거리역, 중앙대학교 인근 지역 등 22곳의 음식점을 비롯해 흥성휴게소, 평창휴게소까지 점자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작 기간은 양에 따라 2주~5주가 걸린다.<sup>12)</sup>

7) 시각 장애인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점자 메뉴판이 필수적인 데, 이 점자 메뉴판을 설치한 곳이 매우 적고,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이 있는 곳도 아주 적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문제라 생각하게 되었다.

11)[문화관광뉴스] 문체부,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 발표

12)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점자메뉴판 제작·보급

### 03 정책 제안

#### ○ 「성남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점포 점자메뉴판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 | 핵심 내용 1. | 점자 메뉴판 제작 지원

- 내용: 시에서 신청한 식음료 점포들에 한하여 재정적 지원과 인적 지원(점자 전문가)을 통해 점자 메뉴판을 제작하는 것을 지원한다.
- 목적: 성남시 내 식음료 점포들에 점자 메뉴판 설치를 위함.

##### | 핵심 내용 2. | 점자 메뉴판 구비를 원하는 점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구·시청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성남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점포 점자메뉴판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성남시에 위치하는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점포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메뉴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점포”란 「식품위생법」 제 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료나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손가락 끝의 촉각으로 더듬어 읽을 수 있도록 지면에 볼록 튀어나오게 점을 찍어 만든 특수한 부호글자를 말한다.
3. “메뉴판”이란 식당이나 찻집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판매하는 음식이나 음료 따위의 종류와 값을 적은 표를 말하며 차림표라고도 한다.
4. “영업자”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상 및 적용)**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점포 중 점자메뉴판을 신청한 곳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자메뉴판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 음식점 및 식음료점포 등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권리구제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점자메뉴판의 설치)** ①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점포 등에 존재하던 기본 메뉴판에 점자를 추가해야 한다.

② 점자메뉴판에는 음식에 대한 정보나 각 음식의 재료에 관한 원산지 및 관련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거나 기존 메뉴의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운 점자를 만들어 덧붙이거나 추가해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점자메뉴판이 훼손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영업자는 맨 앞쪽에 점자로 된 메뉴판임을 알리거나 메뉴판을 줄 때 점자메뉴판임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업자 외에 다른 직원이 더 있을 경우 점자메뉴판에 대해 이해하고 완전히 숙지하도록 교육하거나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점자메뉴판을 신청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점포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존 메뉴판에 점자 설치
2. 점자 메뉴판 수정 및 보완
3. 점자 메뉴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점자메뉴판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가 충족될 시 타당성, 예산규모 등을 검토하여 점자메뉴판에 관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4 기대효과

- 점자 메뉴판 설치를 통한 시각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
- 점자 메뉴판 설치 장려를 통해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 점자 메뉴판을 시작으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더 다양한 서비스들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음

## 성남시 청소년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 법률지원 TF  
인권권익상임위원회

신가원, 이유진, 최민석 의원

### 01 문제인식

#### ○ 청소년 범죄의 증가

- 현재 우리 사회에는 폭력, 상해를 넘어서서 살해, 성폭력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우리는 이를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다. 특히 근래 청소년이 일으키는 범죄는 더욱 악질적이게 변화되고 있다.

조선일보의 ‘미성년자 10만 명 당 강력범죄 증가율’ [그림1]에 따르면, 2006년에는 미성년자 10만 명 당 159.1건 이었지만, 2015년에는 미성년자 10만명 당 209.6건으로 미성년자의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미성년자10만명당 강력범죄



[그림1] 미성년자 10만명 당 강력범죄의 건수를 통계한 자료  
[대검찰청 제공/ 조선일보 출처]

이러한 청소년 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높은 재범률을 동반한다. 아래의 [표1] 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의 총합 재범률이 성인은 4.8%에 비하는 반면, 청소년은 11.3%로 두 배 이상의 재범률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겨냥한 범죄들도 증가하고 있기에, 청소년이 재판과 소송에 연루 되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난다.

하지만 재범률이 높고 범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 ○ 범죄 피해자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 필요성

- 피해자 청소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일례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아래 통계에 따르면 범죄에 노출된 이후 보호시설에 의해 보호받는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전체 피해자의 수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특히 이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표1] 보호관찰 대상 인원 및 보호관찰 중 재범 현황 (단위: 명, %)

구분	실시인원			재범자			재범률(%)		
	합계	성인	청소년	합계	성인	청소년	합계	성인	청소년
2012년	97,886	50,312	47,574	7,736	2,046	5,690	7.9	4.1	12.0
2013년	96,574	51,604	44,970	7,329	2,316	5,013	7.6	4.5	11.1
2014년	95,198	54,964	40,234	7,023	2,778	4,245	7.4	5.1	10.6
2015년	96,419	59,474	36,945	7,368	3,063	4,305	7.6	5.2	11.7
2016년	100,995	66,866	34,129	7,971	3,776	4,195	7.9	5.6	12.3
2017. 7.	82,857	57,918	24,939	4,786	2,378	2,408	5.8	4.1	9.7
합계 (2012~2017.7.)	569,929	341,138	228,791	42,213	16,357	25,856	7.4	4.8	11.3

※ 실시인원은 이월대상자, 종료자를 포함한 수치임  
※ 재범률(%) = 당해연도 재범자/당해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100  
[자료] 금태섭의힘의원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 재구성

[표1] 보호관찰 청소년의 인원과 재범 현황 통계

[표1] 보호관찰 청소년의 인원과 재범 현황 통계  
[대검찰청 제공/ 조선일보 출처]

기관	내용	대상	비고
법무부	법률적·심리적 지원제도, 무료법률구조제도, 형사조정제도, 법률홍닥터, 화해제도,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지원, CARE(피해자심리전문요원)	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	<a href="http://www.moj.go.kr/hum_07/index.do">http://www.moj.go.kr/hum_07/index.do</a>
경찰청			<a href="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811">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811</a>
한국 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법률지원			<a href="http://kcvc.kcva.or.kr/">http://kcvc.kcva.or.kr/</a>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구조제도는 변호사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30건으로,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청소년 상태의 구제 대상자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초동수사 단계부터 사건종료 이후까지 이들 당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절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거한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 명시한 조항에 따라, 피해자 청소년의 권리의 구제와 보호의 목적을 수행할 기관으로서의 법률지원센터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 02 현황 및 문제점

### ○ 재판 절차와 과정의 어려움

실질적으로 [그림2]와 같이 복잡한 재판 과정과 이에 따른 서류의 준비는 시간과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소장, 답변서 제출, 진술, 증언 등 복잡한 법률용어로 인한 오인과 오류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이다.



[그림2] 재판의 절차와 과정

이외에도, 위처럼 형사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노동 문제, 세금문제, 재산의 처리, 각종 민사 업무 등 법률에 무지한 청소년들이 이를 처리함에 있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4개 지역 344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406건을 분석해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217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93건(22.9%)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건(9.1%) △임금미지급 14건(3.4%)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11건(2.7%) △금품청산 6건(1.4%) △기타 14건(3.4%) △예방교육 미실시 14건(3.4%) 등의 순이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임금 체불, 야간 수당 미지급 등을 고발하거나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등의 청구 절차와 그에 따른 서류 작성, 시간 투입은 청소년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일 수 있다.

고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소년 보호 재판 전담의 변호인 또는 전문 청소년 상담사를 시에서 공공 차원에서 고용 관리 제공해야 하고, 법률사무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한 센터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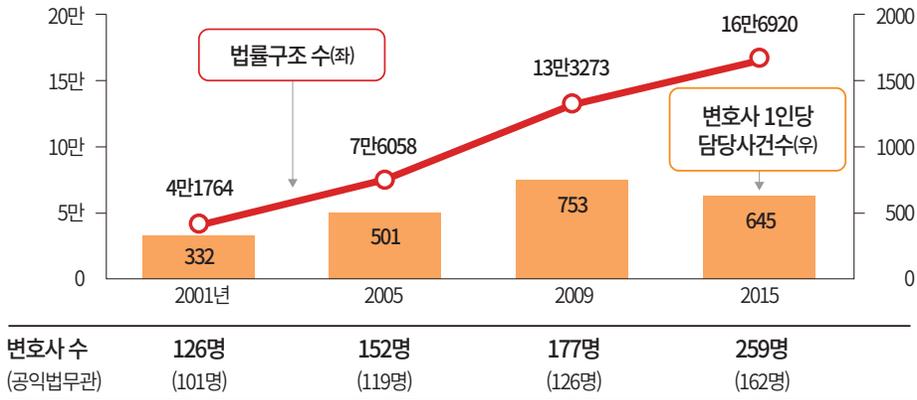
### ○ 현행 법률지원제도의 문제점

실질적으로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실생활에 밀접한 단계에서의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개개에게 심리적인 지원과 사법적인 지원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청소년 의뢰인의 경우에는 더욱 기존의 법률지원제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법률지원을 위한 중재기관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인당 담당사건수 및 법률구조 현황 (단위: 건)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래프1]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인당 담당사건수 및 법률구조 현황

### ○ 타 지자체 운영사례

- 부천시 청소년 법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법률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과 회복프로그램 지원을 말한다.
3. “회복프로그램”이란 법률지원과 연계하여 대상 청소년의 무료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법률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 초동 수사단계에서의 법률 및 심리상담
2. 형사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피해자의 소송 변호
3.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인터뷰

1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보통의 법률상담기관과는 다른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차별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법률구조공단이나 국선변호인 등의 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분리되어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음. 특히 이들 제도는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된 이후에야 도움을 청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위 센터는 소년부에 송치되기 이전에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이는 청소년의 심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도움이 되는 범위가 넓고,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깊어 변론 시에도 해당 청소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에 더해 처분이 끝난 후에도 관내 타 기관(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사례관리, 회복지원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까지 연속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소년사범죄의 재범률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예컨대, 청소년 수련관에서 관리되는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곧 바로 위 센터와 연계하여 초동수사 단계부터 법률지원이 이루어지고 판결 등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어질 수 있는 것임.
- 청소년회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법률지원 사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례관리가 가능함.

2

**실무자 입장에서 청소년 전문 법률지원센터의 도입의 장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사법체계에 편입된 위기청소년을 지원함에 있어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접근성 높게 활용할 수 있음.

3

**현재 부천시 관내에서 법률지원센터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청소년 집단(비행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은 어느 곳이고, 가장 취약한 곳은 어디입니까?**



- 출발 자체는 지역사회에서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게 법률센터의 목적이었으며 위기청소년 법률지원으로 초점이 맞추어 진행 하였음.
- 개소하고 6년차에 접어들면서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안에서의 학폭위 및 학폭 관련 조정 문의 등이 많으며 부천교육지원청 및 시흥교육지원청과의 mou를 통해 갈등조정단을 운영하여 있음.

4

**법률지원센터에서 변호 업무 외에, 노무나 법무를 보는 기능을 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률지원센터의 변호 업무 외에 노무 등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본 센터에도 있으며 이는 일하는 청소년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현재 청소년들은 노동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일을 하기도 하며 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들에게 근기법등을 문의 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음.
- 일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청소년들을 보호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필요함.
- 또한,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부당 대우 신고 및 적극적인 상담이 가능하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장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하여, 큰틀에서 “인권센터”의 설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부천시 고민이기도 함) 생각이 됨. 성남시는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인권센터 안에서 변호, 노무, 인권,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고민 할 수 있을 것임.

○ **전국의 법률 지원센터 운영 현황**

기관명	사업 내용	지원 대상	비고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민사)		
청소년 인권 보호센터	성착취 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	성착취 청소년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외국인 포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한부모 가정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법률지원	경기도민	
경기도 무료소송 지원서비스	무료 소송 지원	경기도민 중 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외국인 포함
서울지검 상담실	법률상담, 법률구조사업	해당 저소득층 대상	
성남시 법률상담 서비스 창구	법률상담	성남시민	매월 2회 오전 10시~12시
성남시 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전반에 관한 상담및 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위한 무료법률 구제사업	

청소년을 전담하는 상담 및 지원기관이 부재하며, 이에 따라 청소년의 구제 및 권리 보호 상의 어려움이 있음. 전문 부처의 신설과 체계적 운영의 도입이 필요함.

○ **성남시 내 청소년 전문 법률 지원 정책의 부재**

성남시 관내에는 별도의 청소년 전담 법률 상담기구를 정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이 재판 또는 법률 사무에 연루될 경우 금전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법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감이 극심할 수 있다.

특히, 권리를 주장하는 데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위기 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바임.

## 03 정책 제안

### ○ 제안내용

- 성남시 청소년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 성남시 청소년 법률상담센터 운영
  - 법률지원 및 회복프로그램
  - 통합적 법률 사무에 대한 보조

### 성남시 청소년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법률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센터의 명칭은 “성남시 청소년 법률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과 회복프로그램 지원을 말한다.
3. “회복프로그램”이란 법률지원과 연계하여 대상 청소년의 무료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법률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 초동 수사단계에서의 법률 및 심리상담
2. 형사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피해자의 소송 변호
3.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4. 기타 법률 관계 문서의 작성 및 일반 법률 사무
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5조(지원의 대상·자격)** 법률상담센터의 지원대상, 법률 지원을 하는 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 ① 성남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3. 장애인이나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 ③ 법률상담센터에서 법률 지원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소년법 또는 청소년 관련 법률을 전공한 자
  2. 전문상담교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 청소년 상담관련 현장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제6조(지원방법 등)**

- ①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 ① 법률지원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변호사 및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거친 후 신청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센터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한다.
- ②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남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청소년 법률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2. 청소년 법률지원 대상자 현황 및 실태 조사
  - 3. 청소년 법률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 4. 센터의 회복프로그램 개발·운영
  - 5. 청소년 법률지원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자원봉사 운영
  - 6. 그 밖에 청소년 법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⑤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
  - 1. 센터장과 직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2조에 따른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 2. 센터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별표 1에 따른 나급(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으로 하고, 직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별표 1에 따른 라급(사회복지,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행정)으로 한다.
- ⑥ 제8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직원의 채용 기준을 제5항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국장, 센터장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1. 시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 2. 시 청소년 법률상담센터장
  - 3. 성남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 4.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5.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① 청소년 법률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청소년의 법률 상담 및 소송 변호 시행에 관한 사항
- ③ 청소년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회복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청소년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임기)

-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청소년 법률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4 기대효과

- 기타 법률 업무에 있어 청소년의 권리 주장에 도움
- 재판에 있어 청소년의 권리 주장 및 공정한 조치에 기여함
  -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가해자 간의 민사/형사 소송의 절차에서의 공정한 재판에 기여
  -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는 청소년들의 권리주장에 기여
  - 청소년 노동자의 산업재해 피해보상 청구 등 청소년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법률적 사건사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 가능
- 청소년 간의 법적 분쟁, 갈등 조정
  - 갈등 청소년 간의 문제 상황의 적절한 사전 중재 효과
  - 다양한 법률적 상황에서의 자문, 폭넓은 문제 대응이 가능해짐

## 성남시 청소년 인권 조례



청소년 인권 TF | 이해인, 박건우, 윤태호 의원  
인권권익상임위원회

### 01 문제인식

#### ○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

-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 성남시에는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나 장치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또한, 그들의 권리를 명확히 제시한 조례가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지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학생 인권 조례의 한계

-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를 더불어 서울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존재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며 학생과 교내의 활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정, 학교 밖 등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것을 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인권 보호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청소년 인권 조례를 제안하는 바이다.

#### ○ 아동친화도시 선포에서 청소년의 부재

- 은수미 성남시장은 2019년 5월 27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목표”라며 “아이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아동친화도시를 선포했다. 여기서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18세 미만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를 선포하며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들의 기본권까지 보장했지만

성남시는 청소년이 빠진 채 아동의 기본권 보장만을 선포했다. 이렇게 청소년이 빠진 아동친화도시의 선포는 청소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성남시를 만드는 것에 한계가 될 수 있다. 또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9세에서 24세를 아우르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의 부재는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성문 조항을 통해 적극적으로 청소년 인권을 보장할 조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02 현황 및 문제점

### ○ 현 조례의 한계

-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에서는 학생을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명시하며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 내에서 지켜져야 할 권리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에서 4분의 1정도의 시간은 학교 밖에서 지내게 된다. 그러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밖에서의 인권을 표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교에서 벗어났을 때 가정과 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의 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sup>13)</sup>

-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현 청소년의 기준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3조 1항)에 어긋나 현 정세에 어울리지 않는 조항이다.

-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sup>14)</sup>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8.>

1. "어린이"이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만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의 사람을 말한다.

### ○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

- 학교 안에서 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학교 밖인 가정, 사회의 다양한 요인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청소년 인권 조례가 필요하다.

- 출신 국가, 인종에 대한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초등학교부터 학업 중단” 다문화 학생 ‘교육소외’ 갈수록 늘어

그러나 다문화 학생 통계에서는 ‘부적응’이 두드러졌다. 같은 해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초등학생은

13) 청소년 기본법 3조 1항

14)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제 1장 2조,

126명이다. 이는 학업중단 다문화 초등학생 중 15%다.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문화 학생에게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동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적이나 인종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초등교육마저 받지 못할 시 중·고등교육으로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 학생의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 비율은 매우 높다.

출처: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81487> [쿠키 뉴스]

### - 소년원 내에서의 인권 침해

복장 불량하다고 독방... 소년원 인권 침해 심각 보호대상 청소년 교화실태 보니소년원에서 복장 불량이나 태도 불량 등 경미한 사례로도 독방에 가둬 입원자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따뜻한 물도 11월~이듬해 2월에만 공급했다. 여자소년원은 중학교 과정만 운영해 고교 과정 학업이 불가능했다.

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25014031&wlog\\_tag3=naver](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25014031&wlog_tag3=naver) [서울 pn뉴스]



###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 및 교화 실태 사례

#### 지나친 징계 분리수용남발

소년원엔 외부 징계위원 참여 배제

복장불량 등 경미한 행위에도 독방 지시 남발

#### 소년원 보호소년 처우 부실

온수를 동절기(11~2월)에만 공급

여자소년원에 고교 과정 없음

#### 학교밖 청소년 지원 미흡

여가부·교육부,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보 부실

대상 청소년 43%가 보호·지원 사각지대 방치

### - 가정, 사회에서의 인권 침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힌 청소년 D씨는 “대한민국이 절대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나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내가 성소수자인 걸 알고 나서 동성애는 정신병이라고 말하며 정신 병원에 가둬버리겠다고 말했다. 한번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더니 목을 졸랐고, 핸드폰으로 신고를 했더니 다음부터는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핸드폰을 뺏고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다. 가정 폭력을 못 견뎌서 탈가정을 했을 때, “용인시 청소년쉼터에 갔더니 성소수자인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잤다간 문란해질 수 있다며 강제로 퇴소시켰다. 문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화가 났다.”고 했다.

출처: <https://yosm.asunaro.or.kr/298>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 03 정책 제안

### ○ 성남시 청소년 인권 조례 제정

- 청소년이 성장하는 데에 있어 보호 받을 권리
-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 표현,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복지를 받고 문화 예술을 즐길 권리
- 청소년 노동을 보호 받을 권리
- 사회에 참여할 권리
- 가정과 사회 내에서 보호 받고, 교육받을 권리

## 성남시 청소년 인권 조례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 나.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다.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 라. 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 그 외 청소년들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학원을 말한다.
3. "학교"란 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청소년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6.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이주, 외국인, 종교, 탈북, 성소수자, 노동, 임신또는 출산, 학습 곤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 ② 시설의 장,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민은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민간사업자나 단체 등은 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국가 등への 요청) 시장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장 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

#### 제1절 원칙

### 제5조(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

- ① 청소년은 인권의 주체이며, 자신의 인권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② 청소년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청소년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차별금지의 원칙)

- ① 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시장,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 제7조(성장환경에 관한 권리)

- ① 청소년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청소년은 비상 상황에 처하거나 입양될 경우 자신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제8조(건강)

- ① 청소년은 자연환경과 어울릴 기회를 가지고 충분한 햇빛과 쾌적한 공기, 적절한 녹지가 확보된 공간에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 받으며 거주·활동할 권리가 있다.
- ② 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보건·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③ 청소년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회와 공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④ 여성 청소년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배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휴가나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⑤ 청소년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보호받고 이러한 물질의 생산과 거래에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⑥ 시장은 청소년 사이에 증가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청소년은 모든 종류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성폭력, 학대, 착취, 괴롭힘, 비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특히 소수자 청소년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 ② 청소년은 유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③ 청소년이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있다.

-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폭력피해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가정 및 교육환경,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 ① 청소년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 ② 시장은 청소년의 안전을 해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한다.

#### 제4절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 제11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 ① 청소년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 ② 청소년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하며, 특정한 종교나 사상에 대한 학습이나 행사참여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 제12조(개성과 표현의 자유)

- ① 청소년은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이며, 자신 또는 소속 집단이 고유하게 가진 문화와 언어 등을 간직할 권리가 있다.
- ② 청소년은 외모, 복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차이가 인정될 권리가 있다.
- ③ 청소년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절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등)

- ① 청소년은 사생활을 보장 받고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 ② 청소년은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약점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③ 누구든지 범죄수사나 청소년 상호간의 폭력에 대한 조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청소년의 일기장, 핸드폰 등에 기록된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 ① 청소년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국내외의 정보 및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특히 소수자 청소년들은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자료, 교육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 ② 청소년은 자신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며, 자신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 또는 불필요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③ 시장은 청소년에 관한 정보, 사적 기록물, 소지품이 부당하게 수집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없이 청소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쉬운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절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 제15조(교육에 관한 권리)

- ① 청소년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지나친 경쟁에 내몰리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② 청소년은 폭력이나 억압이 수반되는 부당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청소년은 학원에 다닐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④ 학교밖 청소년은 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교육비를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
- ⑤ 청소년은 교육 및 진로에 관련된 정보와 지침을 알고 이용하며, 교육기관·학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시장은 빈곤·장애·소수자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6조(놀이 및 쉼 권리)

- ① 청소년은 놀이, 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 ② 청소년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自我)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 ③ 청소년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④ 청소년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 ⑤ 청소년의 쉼 권리 보장을 위해 학원의 휴일 및 심야 교습시간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문화·예술·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 ① 청소년은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 ② 청소년은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위해 청소년 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의 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시장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시장은 교육청, 학교, 관계기관 및 시설,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체육·예술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운영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18조(복지에 관한 권리)

- ① 청소년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 ② 청소년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청소년은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 ④ 시장은 빈곤·장애·소수자 청소년 등 자립 및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⑤ 시장은 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7절 노동에 관한 권리****제19조 (노동인권)**

- ① 노동하는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 ② 노동하는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사업주는 노동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제20조(청소년 노동의 보호)**

- ① 사업주는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
- ② 사업주는 청소년을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된다.
- ③ 사업주는 법령에 정한 최저연령 미만의 청소년을 일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21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소년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제8절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제22조(자기결정권)** 청소년은 진로, 취미, 학업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참여권)**

- ① 청소년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청소년은 타인과 자유롭게 소통하여 동료를 만들고 모임을 가질 권리가 있다.
- ③ 청소년은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 ④ 청소년은 공개된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사를 열 권리가 있다.
- ⑤ 청소년은 단체에 참여하고 자치활동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청소년은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직접 선출하거나 선출할 방법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
- ⑦ 청소년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⑧ 청소년은 시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한 사업과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⑨ 시장은 청소년의 참여활동, 자치활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⑩ 청소년이 참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권리보장을 위한 권리)** 청소년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상담 및 구제절차에 대해 알 권리, 상담 및 구제신청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3장 인권보장****제1절 가정에서의 인권 보장**

### 제25조(보호자 등에 의한 인권의 보장)

- ① 보호자는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때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보호자는 청소년을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며,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양육의 지원)

- ① 보호자는 청소년의 양육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시장은 청소년을 양육하는 보호자를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보호자가 청소년을 양육하기에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특히 배려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사업자는 고용된 시민이 안심하고 청소년을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27조(학대 및 폭력의 금지)

- ①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에게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보호자는 가족 내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청소년이 학대나 폭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시장은 가정내 폭력 예방을 위해 보호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28조(학대로부터의 구제 및 그 회복)

- ① 시장은 학대를 받은 청소년에 대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고, 청소년이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청소년의 상황을 배려하여야 하며, 장애 청소년이나 소수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를 받은 청소년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2절 시설에서의 인권보장

#### 제29조(환경의 정비 등)

- ① 제2조 제2호에 의한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설치관리자" 라고 한다)는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고, 적절한 휴식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이 생활하는 시설의 설치관리자는 가능한 한 가정과 같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호자,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30조(학대 및 폭력의 금지 등)

- ① 시설의 장 및 직원은 청소년에게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해서는 안된다.

-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학대 및 체벌의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학원에서의 체벌 등 폭력을 없애기 위해 교육감과 협력해야 하며, 시설에서의 학대 및 체벌 예방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지원, 실태파악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31조(청소년 폭력의 방지 등)

-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청소년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청소년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2조(상담 등)

-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학대 및 체벌, 청소년간의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에 관한 상담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시설설치관리자가 제1항에 관한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 상담의 해결에 필요한 사람,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청소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관계자는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행한 청소년에 대하여도 필요한 배려를 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제33조(청소년의 정보 관리)

- ① 시설에서 청소년 본인에 관한 정보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정보 중 청소년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그 작성 또는 수집에 있어서 청소년 본인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③ 시설에서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청소년 본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시설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 ⑤ 청소년이 시설을 그만둔 경우에, 시설은 법령에 의해 관리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 제34조(참여 및 적정 절차)

-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청소년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운영에 관해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설에서 청소년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이 행해질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에, 그 청소년 본인으로부터 사정, 의견 등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3절 학교에서의 인권보장

#### 제35조(협력과 지원)

- ① 시장은 학교내에서도 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학생이나 교사 등을 상대로 인권에 관한 교육,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거나 생활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 교육체계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절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

##### 제36조(청소년을 위한 공간의 확보와 관리)

- ① 시장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 청소년 전용공간이 청소년들이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37조(정보에 관한 권리 보장)

- ① 시장은 성차별적이거나 인권침해적인 사진, 그림, 전시물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들에게 활용가능한 공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도서관 등에서 청소년들이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도서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8조(노동인권의 보장)

- ① 사업자는 노동하는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작성·교부하고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기타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장을 각종 우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시 소속기관, 구청, 노동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업주에 대해 노동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전문계 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9조(탈가정 청소년)

- ① 시장은 탈가정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쉬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탈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사생활정보가 보호되고 학대경력 있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인권 보장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탈가정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0조(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및 지원)

- ① 시장은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비인가 대안교육 기관을 다니는 청소년(이하 "학교밖 청소년"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②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 대중교통 이용, 각종 프로그램 참여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41조(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 ① 시장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급식비, 교육비 지원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시장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빈곤 청소년이 그로 인하여 복지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그 내부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2조(시민참여 및 협력)**

- ① 시민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학대나 폭력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되도록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시민, 청소년 당사자 단체와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 ③ 시장은 경찰, 법원 등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절 빈곤·장애·소수자 청소년의 인권 보장****제43조(빈곤·장애·소수자 청소년의 권리 보장)**

- ① 시장, 시설의 장 및 직원 등은 빈곤·장애·소수자 청소년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시장, 시설의 장은 장애 청소년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확보하며,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빈곤 청소년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탈북 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고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다문화가정, 이주민가정, 외국인 청소년의 인권이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양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제1절 인권교육과 홍보****제44조(성남시 청소년 인권의 날)**

- ① 시장은 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성남시 청소년 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성남시 청소년 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청소년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홍보)** 시장은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청소년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청소년 인권과 조례의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6조(인권교육)

- ①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등 각종 교육의 기회에 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이 추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에 대한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 연수, 학습 등에는 빈곤·장애·소수자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금지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7조(시민활동의 지원)

- ① 시장은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력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권리분야별·생활공간별 실천전략
  3.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청소년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방안
  7.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빈곤·장애·소수자 청소년 인권 보장 방안
  9. 그 밖에 청소년 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 ③ 시장은 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48조(규칙) 시장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04 기대효과

-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하고 성문법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므로 실질적 역할 및 효력 발동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
- 성남시를 시작으로 타 지역에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여러 사업 증진을 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청소년 자체의 인권 보장 가능성이 향상된다.
- 청소년 인권 조례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성문 조항을 만듦으로써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걸맞는 선언적인 의미를 지닌다.

##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사회적 약자 TF  
환경복지상임위원회

임효정, 김서현, 김지민, 양현진, 이민하 의원

### 01 문제인식

우리 주위에는 걸음걸이가 늦은 약자들이 많이 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가장 배려 받아야 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다. 이런 분들은 신호가 깜빡거릴 때는 물론, 건강한 사람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시간에도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사례에 따르면 보행 신호가 짧다 보니 거동이 불편하거나 다리 아픈 노인들은 제시간에 건너기 힘들다.

최(70대·여)모 씨는 다리가 불편해 전동휠체어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는데 보행 신호가 짧다 보니 거동이 불편하거나 다리 아픈 노인들은 제시간에 건너기 힘들다며 지금보다 10초가량이라도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이강호(66) 씨는 "나같은 사람은 건강한 정상인에 비해 걸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며 신호가 바뀌면 뛰듯이 도로를 건너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www.cctoday.co.kr)]

서울시 '교통신호등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서울시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등 시간은 보행 진입시간인 7초에 횡단보도 길이에 따라 1m당 1초씩 늘어난다고 한다. 걸음걸이가 느은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 건너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현재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 보조기구만으로는 교통 약자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다.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 02 현황 및 문제점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 현재 횡단보도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 보조기구의 문제점

##### - 음향신호기

음향신호기는 음향을 통해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을 돕는 신호등이다. 음향 신호기는 신호에 따라 각각 다른 음향 내용을 알려준다. 하지만 현재 음향신호기는 각종 전단지나 다른 이유 등으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으며

신호의 내용만 알려줄 뿐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

**- 보행자 작동 신호기**

보행자 작동 신호기는 신호등을 누를 경우 차량신호등은 빨간색으로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색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또한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효율적인 차량운행을 도와 효율성을 높여줄 뿐이다. 하지만 이런 신호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버튼을 누른 후 잠시 후에 신호가 바뀐다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종종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 바닥신호등**

일직선 형태(폭 10cm, 길이 6~8m)의 이 신호등은 “바닥신호등”으로 일반 보행자 신호등이 켜지면 동시에 바닥신호등도 녹색으로 바뀌고 차량 신호등이 켜져 보행자가 멈춰야 할 경우에는 적색으로 바뀌게 되는 신호등이다. 이 신호등은 점자블록 부근 바닥에 매립된 LED 전구가 빛을 내 사용되는 방식이다. 휴대폰을 하느라 시선이 바닥을 향해 있던 ‘스마트폰 보행자’들은 고개를 들지 않고도 신호의 변경을 알 수 있었고 적색의 바닥 신호등 뒤에 멈춰 섰고, 이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신속히 건넜다. 바닥신호등 덕분에 신호를 준수하고 사고의 위험성과 빈도수가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스마트폰 보행자들을 생각할 뿐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을 기다려주는 보조기구는 아니다.



음향신호기



보행자 작동 신호기



바닥신호등

○ **국내·외 교통약자 안전 보행 정책 사례**

**- 군포시 전국 최초 ‘교통 약자 안전 보행 버튼’ 설치**

경기 군포시는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약자 안전보행 버튼’을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다. ‘교통약자 안전보행 버튼’은 교통약자가 버튼을 누르면 횡단보도 보행시간이 5~6초 동안 자동으로 연장되는 시스템이다. 군포시는 ‘교통약자 안전보행 버튼’을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앞과 인근 대형마트 앞에 설치했으며, 앞으로 교통안전 효과와 보행자 만족도 등을 분석해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군포경찰서와 협력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효과 검증,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이다.



군포시 ‘교통 약자 안전 보행 버튼’

**- 대전 중구 보행시간 증대**

실제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횡단 중 부상사고는 2013년 554건에서 2015년 738건으로 무려 36%나 증가해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전 중구는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했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보행자의 평균 폭인 1초에 1m 기준으로 설정돼 있고,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은 1초당 0.8m 속도로 정해진다. 하지만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 짧은 보폭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가 바뀌며 도로 가운데 갇히는 상황이 발생되며, 이는 교통사고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구는 17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횡단보도 보행시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왕복 4차선 이상, 노인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7개소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흐름 평가 결과 보행 신호시간이 3~5초정도 늘어났다.

#### - 싱가포르 그린 맨 플러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지난 2009년 ‘그린맨플러스(the Green Man Plus)’ 카드를 도입했다. 이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발급되며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교통카드처럼 이 카드를 신호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대면 보행시간이 최소 3초에서 최대 13초까지 늘어난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라면 그린 맨 플러스용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설치 이후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현재는 250개가량 설치 및 운영이 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고품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495개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 ○ 성남시 지역구 사회적 약자(교통약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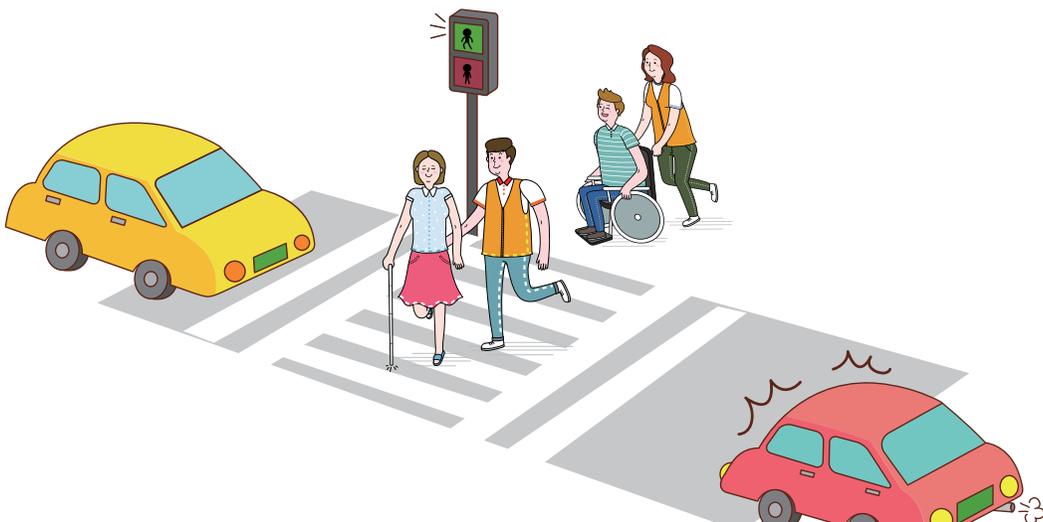
출처 : 경기도데이터드림

자료갱신일 : 2019-07-01

수록기간 : 2012년 ~ 2018년

교통약자(장애인)	기준년도	총계-인구(명)
성남시 (장애인)	2015	35,150
	2016	35,156
	2017	35,312
	2018	35,834

⇒ 갈수록 장애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이는 교통약자가 늘어남을 의미함.)



03 정책 제안

○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동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성남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1호에서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4. 시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5.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6.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7.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8. 저상버스 및 버스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동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성남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조성**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1호에서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그린 맨 플러스 카드 정책”이란 신호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장애인에게 보급된 카드를 대면 신호등의 시간이 횡단보도의 길이에 따라 **최저 3초에서 최고 13초까지 연장이 되는 정책**을 말한다.

제7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4. 시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5.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6.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7.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8. 저상버스 및 버스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9. **그린 맨 플러스 카드 정책의 도입계획과 운영계획**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적자원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적자원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15조의 2(그린 맨 플러스 카드 정책 도입 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그린 맨 플러스 카드 정책 도입을 위한 예산의 지원 방안  
 2. 그린 맨 플러스 카드 정책 도입을 위한 횡단보도 및 신호등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이 그린 맨 플러스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 그린 맨 플러스 카드 정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 3(그린 맨 플러스 카드 정책 운영)**  
 ① 그린 맨 플러스 카드의 이용 대상자의 범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그린 맨 플러스 카드 정책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그린 맨 플러스 카드 정책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그린 맨 플러스 카드 정책’ 도입

- 신호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신호등의 시간이 횡단보도의 길이에 따라 최저 3초에서 최고 13초까지 연장이 됨
- 실행 계획 :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에 한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통해 카드 보급



04 기대효과

- 걸음걸이가 늦은 사회적 약자의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안전하고 여유롭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
- 운전자 입장이 아닌 보행자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사회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할 수 있다.
- 건강한 사람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교통 약자들의 불편함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청년 복지 TF | 유희민, 임효정, 김대희 의원  
환경복지상임위원회

### 01 문제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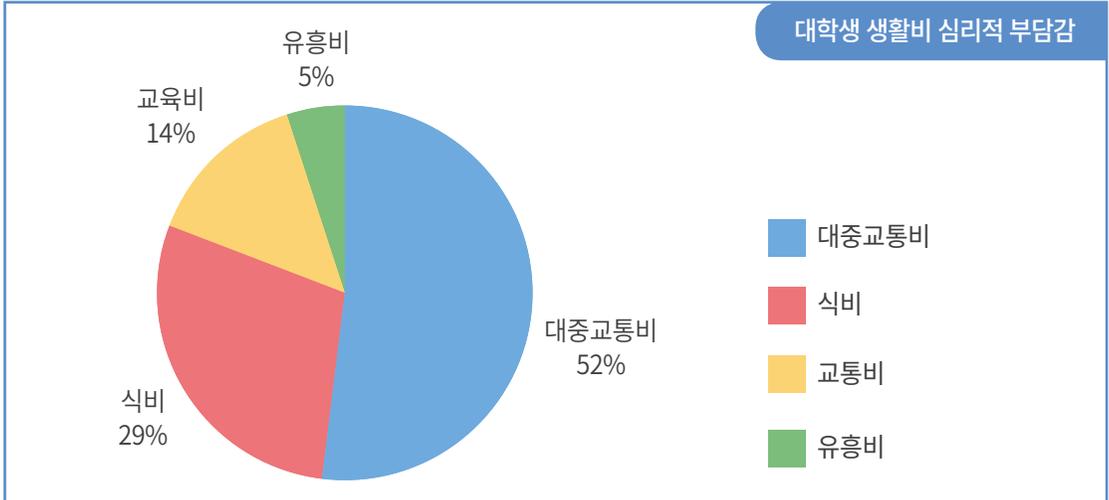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는 무엇일까? 첫째, 만18세인 고등학생(청소년)이 만19세 대학생(성인)이 되면 청소년 보호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감당하기 힘든 대학 등록금과 늘어난 생활비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대학생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 중 학비와 생활비가 큰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것이다. 반면에 둘의 공통점은 교육에 신경 써야 하는 ‘학생’의 신분이라는 것이다.

알바몬 대학생 월 평균 생활비 조사에 따르면, 개인의 지출은 개인의 재량, 소비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학하는 학생들의 평균 한달 지출 생활비는 약 50만원이다. 하지만 식비, 교통비 등은 소득계층에 상관없는 필수적인 지출이다. 그렇기에,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항목 중 교통비가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 1위에 선정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교통비는 필수적인 지출 요소이기 때문에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적용되고, 이는 저소득계층에게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기숙사 입주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도권에 거주 중인 학생들은 기숙사 입주 선정이 어렵다는 게 사회의 현실이다.

교육에 신경 써야 하는 ‘학생’ 신분인 대학생들 65%가 금전적인 문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이는 사회 진출의 시작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시선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교육 비용 뿐만 아니라 생계 비용까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특히 ‘대학생 가장’들의 부담은 가정 생계비용으로 확대되는 만큼 그 부담은 더욱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저소득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을 연장에 가려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생활비 부족으로 빌린 학자금 대출 문제로 많은 저소득 학생들이 결국 휴학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과 교육의 질 제고 목적으로 저소득 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02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생 생활비 심리적 부담감 1위, 교통비

우리는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을 생각하게 되었다. 대학생이 느끼는 생활비 심리적 부담감 중 교통비가 가장 크다고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계층의 다양한 복지 중 교통 분야의 복지가 가장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대학생들은 생활비 심리적 부담감 중 교통비가 가장 크다고 말할까?

청소년 교통비 할인 법적근거

구분	관련 법률	비 고
청소년 정의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할인	청소년 복지 지원법(제3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가능

요금변경일	지하철 요금(카드기준)			요금적용 방식
	어린이	청소년	일반	
'00. 7. 1	300원	480원	600원	균일 요금제
'03. 3. 10	350원	560원	700원	
'04. 7. 1	400원	640원	800원	
'07. 4. 1	450원	720원	900원	
'12. 2. 25	450원	720원	1,050원	통합거리 비례제
'15. 6. 27	450원	720원	1,250원	



○ 청소년과 성인 교통요금 차이, 이것이 바로 심리적 부담감의 원인

바로 성인이 됨으로써 지불해야 할 교통요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본법 3조 1항에 따르면, 청소년의 나이를 만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비는 할인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3조 4항은 청소년 중의 유효기간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괴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위에 자료를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 요금은 2007.04.01을 마지막으로 인상된 것에 비해 “성인 요금”을 내야 하는 대학생들의 요금은 2015.06.27까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비율로 따지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요금은 각각 50%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만 24세 청소년인 대학생들의 “성인 요금”은 무려 108%나 올랐다. (더불어 경기도는 다가오는 9월 성인요금을 200원 인상 예정, 비율로는 141%인상) 이렇게 가파른 폭으로 오르는 성인 요금의 교통비는 2015년에 마지막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 특히, 저소득 대학생들에게겐 심리적으로 큰 체감될 수밖에 없다.

○ 은수미 시장의 공약과 마찰, 새로운 방향성 필요

현재 은수미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청년 토크사업’이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은수미 시장의 공약이 산업통상지원부가 기존에 지원하는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성남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의 선별적 교통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시에는 어떠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작년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을 실행한 서울시 중구의 조례를 벤치마킹 하고자 한다.

○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관련 타 시도 조례 현황

서울시 중구의 경우 이미 저소득 대학생의 삶의 질 도모, 경제적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대학생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서울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학생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교통비”란 대학생이 재학 중에 학업을 위해 학교를 통학하는데 드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대학생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입학유예, 휴학, 군입대 등으로 학업 중이지 아니한 자  
 2. 학사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제4조(지원기준)** 서울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600,000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4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시기)** 교통비는 반기별 말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구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신청절차 및 방법)**

-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동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반기별 마지막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 ①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마지막 달 20일까지 그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지원대상자가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대상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03 정책 제안

### ○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 성남시의 20~24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인구는 842명(출처: 사회보장통계), 20~24세 기초 생활수급자 인구는 940명(출처: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위 통계자료의 20~24세 인구가 모두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가정하에, 연 6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면, 총 10억 6,920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실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원대상자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지원대상자 인구 조사가 필요함.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대학생이면서 중위소득이 52퍼센트 이하여야 함.
-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600,000원으로 반기별 말일 지급 원칙에 따라 2번으로 분할해 지급함.
- 신청절차 및 방법
  - 1) 지원대상자가 관할 동장에게 지원신청서 제출
  - 2) 동장이 시장에게 반기별 마지막달 20일까지 교통비 지급 요청
  - 3) 특별 선불 교통카드인 '교통비 지원 카드'(가칭)에 지급: 교통비 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미사용 금액의 환급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함.

조례안 전문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학생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종류)에 따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교통비”란 대학생이 재학 중에 학업을 위해 학교를 통학하는데 드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1.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대학생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입학유예, 휴학, 군입대 등으로 학업 중이지 아니한 자
2. 학사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제5조(지원기준)**

성남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600,000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4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시기)**

교통비는 반기별 말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시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신청절차 및 방법)**

-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동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반기별 마지막달 20일까지 시장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제5조에 따라 특별 선불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 ①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마지막 달 20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지원대상자가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04 기대효과**

- 대학생들에게 필수적 지출과 다름없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대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통학에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냄으로써 다른 교육비, 식비 등과 관련된 지출에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이 안정된다.
- 살기 좋은 도시 성남의 복지도시로의 형상화 실현 가능

**05 참고자료**

1. '통학하는 학생들의 평균 한달 지출 생활비는 약 50만원', 알바몬 대학생 월 평균 생활비 조사, 2018년
2. 국가장학금 받아도 ... 저소득층 대학생 생활비 없어 휴학, 중앙일보
3. 성인남녀 80%, 캠퍼스-직장생활 체감물가 '비싸다'...“교통비 가장 부담”, 잡코리아
4. '대학생 생활비 심적 부담감 1위 교통비', 중앙행정기관 청년 관련 기관 현황 표 참고,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6p~7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5. 은수미 시장의 공약과 마찰, 새로운 방향성 필요, '성남 청년 교통비 '2배 지원' 안되냐', 이동희 기자, 인천일보
6.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관련 타 시·도 조례 현황: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28.
7.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0~24세 인구 통계, 사회보장통계, 복지포, 2018
8. 기초생활수급자 20~24세 인구 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18



##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정 밖 청소년 TF  
환경복지상임위원회

최윤서, 정다인, 조은영, 신유림 의원

### 01 문제인식

#### ○ 가정 밖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 지난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아동권리 개선점을 권고한 가운데, 학교와 가정 밖 아동·청소년(만7세~18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2017년 학교 밖 아동·청소년은 41만 명이 넘고, 가정 밖 아동·청소년은 27만 명에 이르며, 아동·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온전한 성장과 발달의 권리를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단 확인 가능한 경찰청의 가장 최근 가출청소년 통계를 살펴보면 9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을 기준으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1,762명, 21,852명으로 2만여명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가출로 신고 된 청소년 수를 집계한 것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표.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현황

구분	‘14년	‘15년	‘16년
계	23,605	21,762	21,852
남	10,171	9,104	9,038
여	13,434	12,658	12,814

\* 출처: 여성가족부(2017c) 청소년쉼터 주간행사 보도자료

[출처: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방안 연구. 강희진 2018.12.30]

#### 학교 가정 밖 아동청소년 지원 절실

2017년 학교 밖 아동청소년 41만명, 가정 밖 청소년은 27만명

지난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아동권리 개선점을 권고한 가운데, 학교와 가정 밖 아동·청소년(만7세~18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이들을 학교와 가정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학교와 가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개별 욕구에 맞지 않는 경쟁적 획일적 교육환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내일신문 뉴스 2019-11-19]

-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원인 중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 37.8%로 가장 높았고 가정문제가 36.7%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교문제는 21%로 세 번째로 높다. 이를 통하여 가출을 하는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질풍노도에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는 상황이 해마다 2만 여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수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성남시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입소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 공간이 부족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 청소년쉼터 운영실적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쉼터 수(개수)		109	119	119	123
일시	고정	16	18	18	20
	이동	6	8	10	10
단기	남	26	26	26	28
	여	24	26	25	25
중장기	남	16	17	18	18
	여	21	24	22	22
지원건수(건)		528,415	545,907	551,106	-
입소자수(명)		24,079	25,012	30,329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쉼터 운영실적에서 쉼터 수가 증가하면서 가출청소년의 지원건수와 입소자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원건수의 경우 중복 지원을 포함하여 계속 누적되는 숫자여서 이용자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입소자 수 역시 중복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출청소년 중 쉼터 비이용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방안 연구, 강희진 2018.12.30]

### ○ 가정 밖 청소년들이 겪는 피해

- 가출의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가출로 인한 범죄의 위험은 어느 청소년에게나 노출되고 있다. 성남시 새날청소년쉼터 김은영 소장은 ‘성범죄’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해서 성범죄 문제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 가정 밖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지난 5월 가출범 20대들의 범죄 사실을 경찰에게 말했다며 10대 소년을 살해 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가정 밖 청소년들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별다른 도움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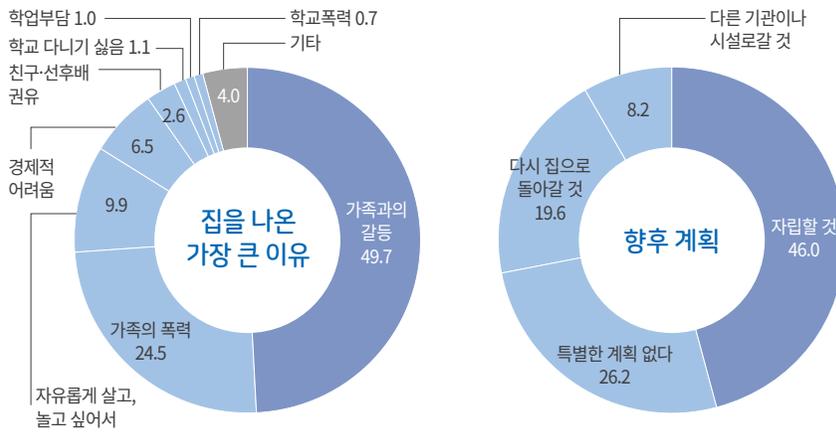
02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성남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경기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공통적으로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가정 밖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 지원이 있다.

경기도에는 추가로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이 있고, 서울특별시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는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의 지원이 있다.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단위 :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9일 공개한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에 실린 한 청소년의 이야기다. 흔히 집 나온 청소년에게는 '부모 속 썩이는 비행청소년'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 내 갈등이나 폭력을 못 견뎌 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원이 지난해 6~9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있는 청소년 730명을 조사한 결과 가정 밖 생활을 하는 주된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이 49.7%로 가장 많았다. '가정 폭력을 피하기 위해'라는 응답률도 24.5%였다. 가정 밖 청소년 10명 중 7명은 가정불화가 원인인 것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는 9.9%, '경제적 어려움' 6.5%, '친구·선후배의 권유' 2.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가정 밖 청소년의 43.8%가 '부모님(보호자)이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때린 적이 있다'고 답했고, 64.8%는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답한 청소년은 19.6%에 불과했고, 절반에 가까운 이들(46.0%)이 '자립하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가정 밖 청소년 14.6%는 빚을 지고 있었고, 평균 액수는 265만원에 달했다. 20.8%는 저축을 하고 있었지만, 평균 저축액은 112만원으로 자립을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내일 이룸 학교,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일·학습 병행제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20% 미만의 낮은 경험률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가출청소년이 비행 청소년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학계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처럼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2017년 발의된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연구를 수행한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은 “가정 밖 청소년 상당수가 가정 폭력이나 갈등으로 집을 나오는 경우가 많고, 원 가정 복귀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정책 대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03 정책 제안

-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그들의 인권 개선에 노력해야하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 VMS,1365등과 연계해 시청에서 가정 밖 청소년만 해당되는 교육방식 봉사활동을 만들어 할 경우 봉사시간 대신 알바비와 같이 최저지급을 정해 돈을 지급
  - 실행 계획 : 시청에서 VMS,1365등에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방식 봉사활동을 개선한다.

#### 조례안 전문

#####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 조사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체계 구축
  3. 가정 밖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5.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 지원
  7.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
  8. 가정 밖 청소년 일자리 지원 및 교육 관련 노동 활동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2.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유관기관·단체와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5. 가정 밖 청소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정책적 건의
  6. 그 밖에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할 거점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04 기대효과

- 가출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
- 봉사를 하여 알바비와 같은 형식으로 돈을 지급받아 빛이 있는 가정 밖 청소년과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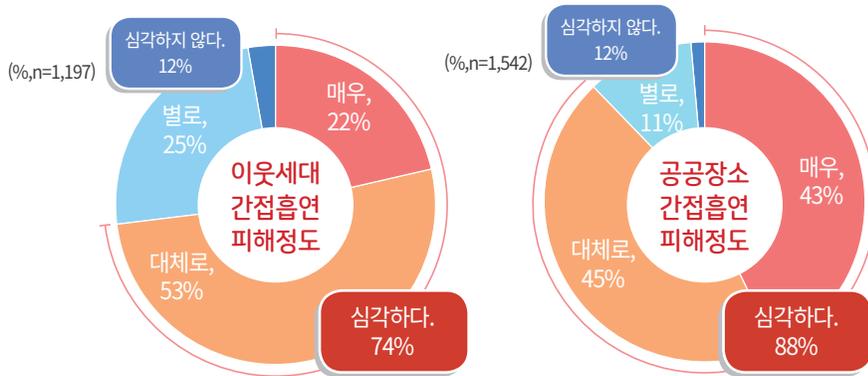
흡연부스 TF | 이세미, 김용훈, 이서윤 의원  
환경복지상임위원회

### 01 문제인식

#### ○ 길거리 흡연 팽배 및 간접흡연 피해정도 심각

- 길거리에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일부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해 비흡연자, 특히 노약자들에게 피해가 많이 간다.

특히 경기도에서 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길거리 흡연 실태조사 설문에 따르면 이웃세대 간접흡연 피해강도와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정도에 대담으로 각각 “심각하다”는 74%, 88%로 이웃세대와 공공장소의 시민을 대상으로 각각의 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경기도 간접 흡연 통계, 경기도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

#### ○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 2007년 발표된, 간접흡연의 해로움에 대해서 국립암센터에서 작성한 가정의학회지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암을 유발하고, 심혈관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일컫고 있다. 또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조치가 흡연 규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 간접흡연의 해로움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

서 흥 관\*

흡연의 해로움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시기는 1950년대 초반이었지만 간접흡연의 해로움은 80년대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최근에 더 많은 근거들이 누적되고 있다. 2006년 미국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망라하여 The Health Consequences of Involuntary Exposure to Tobacco Smoke라는 제목의 Surgeon General Report가 발표되었다. 간접흡연은 태아의 발육을 억제하고, 영아돌연사증후군을 일으키며, 아동에서 기관지천식, 중이염을 유발한다. 또한 간접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을 일으키고, 심혈관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이다. 간접흡연은 폐에도 영향을 미쳐 기도폐쇄성 질환을 유발한다. 흡연규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는 간접흡연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규제되는 금연구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법의 엄격한 시행이 필요하며 외국에서와 같이 보다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출처: 서흥관, 「간접흡연의 해로움」, 『가정의학회지』, 2007.]

- 또한 분당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조석기 교수는 “간접흡연을 할 경우에 그 입자들이 더 작기 때문에 폐포 끝까지 더 잘 도달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간접 흡연자는 불안전 연소로 인해 발암 물질 양이 많은 담배 끝 부분 연기를 주로 흡입해 치명적이다.



[출처: KBS 9시 뉴스]

### 1. 서론

1950년대 이후 수행된 대부분의 독성학적, 역학적 연구에 의하면 흡연과 관련된 질병들과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 흡연 당시자의 직접 흡연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담배 연기에 대한 비흡연자의 비자의적인 노출 즉, 환경담배연기 (environmental tobacco smoke, 이하 ETS)로 인한 보건학적 위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간접흡연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USEPA, 1992, Surgeon General, 1986)

ETS란 흡연자가 내뿜는 주류연기(exhaled mainstream smoke)와 연소중인 담배로부터 직접 배출되는 비주류연기(sidestream smoke)가 혼합되어 공기 중에서 확산·회석된 상태의 담배연기를 의미한다. 특히 비주류담배연기의 경우 ETS의 약 85%를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이문수, 1995), 불안정한 연소로 인한 유해성분의 배출량은 주류담배연기보다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USEPA, 1992, NRC, 1986) 1986년에 미국 National Research Council은 미국 내에서 연간 3000명이 달하는 폐암의 발생이 ETS에 대한 노출에서 기인한다고 발표 한 바 있으며(NRC, 1986), 이를 근거로 1990년 초 미국 EPA와 NIOSH에서는 처음으로 ETS를 인체발암성물질로 규정할 바 있다(USEPA, 1992, NIOSH, 1991)

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ETS를 포함하는 실내공기질 기준 혹은 권고지침 마련을 위해서는 ETS 성분 농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ETS 및 간접흡연에 대한 인체의 노출정도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제대로 수행된 적은 드물며, 일부 소수 연구자에 의해 가정과 사무실 및 식당 등에서의 제한된 연구결과만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Baek et al., 1997) 따라서 이들 자료의 획득을 위한 방법론의 개발 및 적용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에 위치한 여러 유형의 사무실 환경에서 비흡연 근무자가 노출되는 실내공기 중 ETS의 주요 성분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고, 나아가 ETS가 사무실내 실내 공기질 중 특히 호흡성 비유연성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재료 및 방법

#### 2.1 시료채취 장소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인 대구 및 대전지역에 위치한 각종 유형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각 도시별로 50개의 장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사전 조사하였다. 이들 사무실에 대한 현장탐방 결과 흡연여부 유무와 지리적 특성 및 사무실속의 내부사상 등을 고려하여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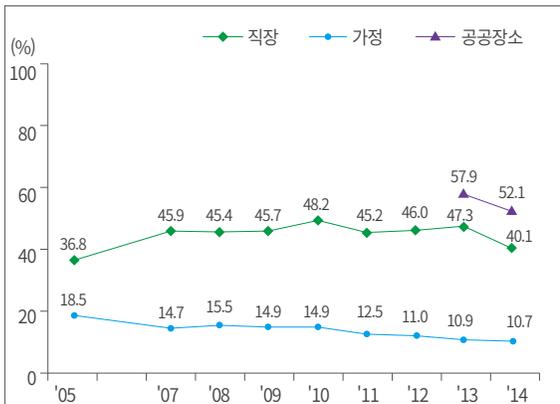
[출처: 백성욱, 박상근. (2004). 도시지역 사무실내 공기 중 환경담배연기의 측정-흡연이 부유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0(6), 715-727.]

- 아래 사진은 간접 흡연을 40년과 동안 한 사람의 폐와 직접흡연을 15년동안 한 사람의 폐를 촬영한 사진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간접흡연 40년 의 경우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흡연한 사람과 흡사하게 검은 반점이 드러나 보인다. 또한 담배와 관련된 사망자 중 10% 정도가 간접흡연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흡연은 간접 흡연자에게도 중 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KBS 9시 뉴스]

○ [2014 국민건강통계] 비흡연자 10명 중 4명 직장내 간접흡연 피해 사례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재 비흡연자(과거 흡연자 포함) 중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분율('13년 : '최근 7일 동안' 증거기간 포함). 만 19세이상

※현재비흡연자의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 : 현재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가정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분율('13년 : '최근 7일 동안' 증거기간 포함). 만19세이상

※현재비흡연자의 공공장소실내 간접흡연노출률 : 최근 7일 동안 현재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공공장소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분율. 만19세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NEWSIS**

[세종=뉴스is]김지은 기자

담배를 피지 않는 남성 10명 중 5명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10명중 3명도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11일 발표한 '2014 국민 건강 통계'에 따르면 비흡연자의 직장내 간접 흡연 노출률은 이 기간 남성 49.0%, 여성 32.8%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8.2%, 여성은 5.9% 감소한 것이지만 간접 흡연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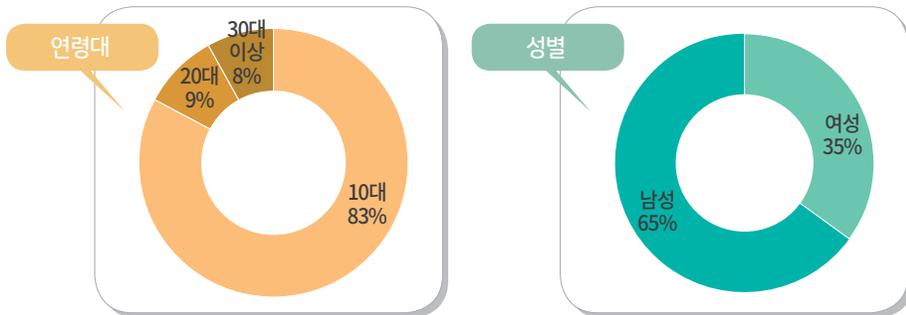
## 02 현황 및 문제점

### ○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불편 호소 多

- 자체 설문 조사 실시

- (1) 자료 조사 기간 - 6.8 (토) ~ 6.9 (일) 약 2일간 진행
- (2) 조사 방법 - 페이스북에 google 설문지를 게시하여 설문 참여를 유도
- (3) 설문 참여자 수 - 총 266명
- (4) 조사 범위 - 설문참여자의 흡연 및 비흡연 여부, 길거리 흡연 금지법과 흡연 부스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함.

#### (1) 설문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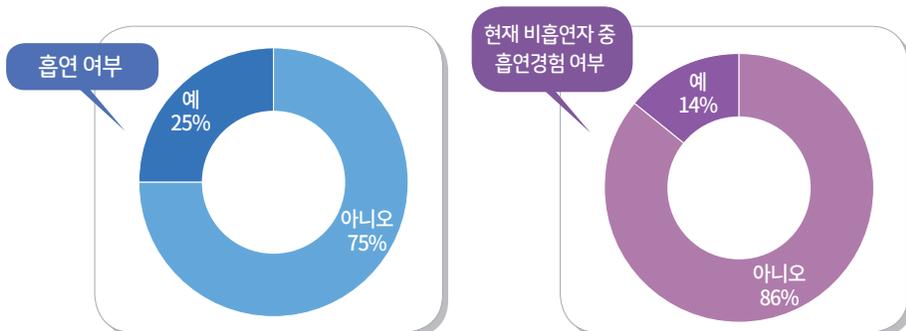


- 총 266명의 설문 응답자 중 10대가 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대 9%로 30대 이상 8%의 응답 수치를 기록하며, 다양한 세대의 응답을 얻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성별은 남성 65%, 여성 35%로 남성이 설문에 비교적 많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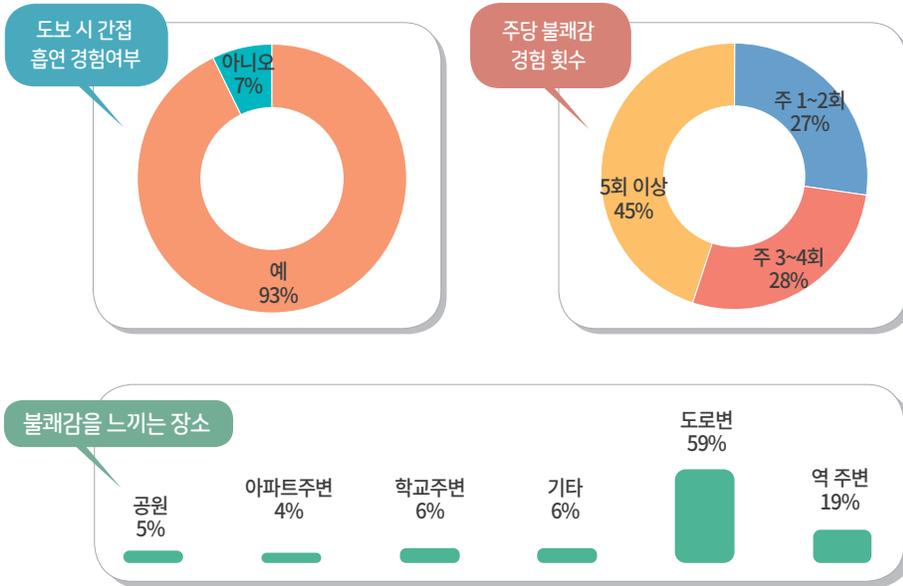
#### (2) 직접 흡연에 대한 설문 통계

- 직접 흡연 관련 설문 응답에서는 응답자 266명 가운데, 25%만이 현재 흡연을 하는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비흡연자 가운데에서는 14%가 자발적인 직접 흡연을 경험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래 표(간접흡연에 관한 설문 통계)를 참고해보면, 많은 수의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의 위험에 자주 노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간접흡연에 관한 설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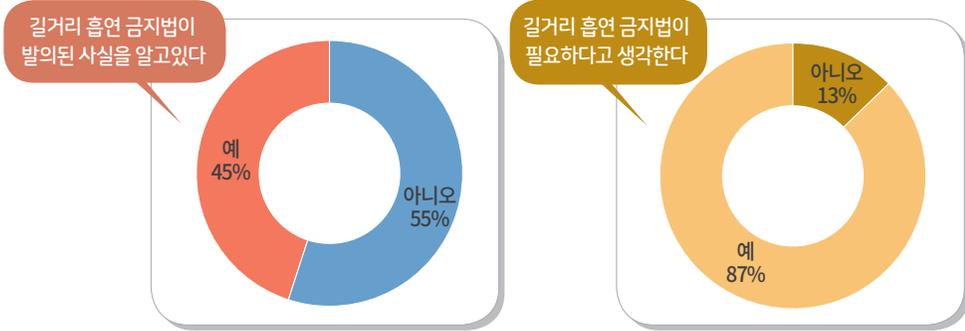
- 간접흡연에 관련된 통계에 있어서는 응답자 266명 가운데, 93%가 도보 중 간접흡연을 겪어본 적이 있다고 말하였으며, 그 중 주 당 5회 이상 불쾌감을 겪은 이가 45%, 3~4회 불쾌감을 겪은 이가 28% 그리고 1~2회 불쾌감을 겪은 이가 27%를 기록하였다. 고로 불쾌감을 매우 자주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불쾌감을 느끼는 장소로는 도로변이 59%로 가장 높았고, 역 주변이 19%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학교 주변, 기타 장소, 공원, 아파트 주변이 불쾌감을 느끼는 장소로 응답 되었다. 따라서 도로변과 역 주변에 설치하는 흡연 부스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 (4) 길거리 흡연 관련 통계



- 최근 발의된 길거리 흡연 금지법에 대해서도, 87%가 길거리 흡연 금지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는 응답을 통해서, 길거리 흡연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과 길거리 흡연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사 반영을 위해 흡연 부스 설치의 꼭 필요하다.

(4) 길거리 흡연 관련 통계



- 또한, 흡연 부스의 필요성에 대한 통계에서는 266명 중 87%의 과반수가 흡연 부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필요하다고 대답한 인원 중 8%가 비흡연자의 권리 보장, 24%가 흡연권 보장, 16%가 기타의 이유 그리고 12%가 환경,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이익을 위하여 흡연 부스 설치 정책 시행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국내외 선형 사례

- 국내

① 대학교 캠퍼스 내 흡연부스



명지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② 번화가 내 흡연부스



홍대헤어샵-오유헤어



신림역 술집-boyas



건대입구역

-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곳에 흡연 부스가 존재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에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흡연 부스 수의 절대적 부족과 흡연 부스가 있음에도 그 밖에서 흡연을 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입법과 정책 제안을 통해 그 수를 늘리는 것임, 두 번째 문제점은 흡연 구역 외 흡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흡연 부스 내 시설 개선을 통한 흡연 부스 사용 장려가 있다.

- 국외

① 일본의 흡연 부스 문화

일본의 경우 거리 곳곳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대도시 중심가에서는 실외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1회 입장료 50엔(한화 약 500원) 정도 받는 유료 흡연부스도 있다. 흡연 부스에는 많은 재떨이와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으며, 환풍구 시설도 잘 되어 있어 쾌적하게 흡연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2011년부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별도 흡연실을 만들 경우 설치비용의 4분의 1을 정부가 보조해준다.

[출처: 머니투데이]



일본 도쿄의 흡연부스

② 싱가포르 이순 마을

길거리 흡연 시 85만원의 적지 않은 벌금을 내야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담배연기와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하는 흡연자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던 마을이 있다. 싱가포르의 이순 마을에서는 이에 주민들이 제시한 흡연부스 설치 방안에 마을센터를 통한 기부를 받아 지정된 흡연부스를 만들고, 흡연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경고 문구를 붙여놓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 결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물론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없어지고 길거리도 담배꽁초 없이 깨끗해졌다고 한다. 흡연부스 설치의 효과가 벌금 제도의 위력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시이다.

[출처:A/S,[금연이슈]싱가포르가 간접흡연을 줄인 방법은?]



싱가포르 이순 마을 흡연부스

○ 성남시의 흡연부스 현황

-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각 도서관 일부와 성남시청 등에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금연 정책 현황

-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 법안 (피시방 내 흡연 부스 의무 설치)
- 보행 중 흡연 금지법안
- 시중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금연 스티커 부착 의무화
- 지속적인 금연 공익광고 송출

- 위와 같이, 성남시 내 도서관 및 대학 병원, 그리고 시청에서도 흡연부스가 설치되어있지만 우선 그 수가 매우 적기에 설치를 추진해야 하며 거기에 더불어 설문 조사 결과 사람들이 가장 불쾌감을 느낀다는 곳부터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공익을 위한 흡연 부스 설치의 진정한 의미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성남시 중앙 도서관 흡연 부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흡연 부스

### 03 정책 제안

#### ○ 흡연 부스 설치

- 사업대상(수혜자) : 성남시민(흡연 여부 무관)
- 사업량 : 성남시 관내 10개의 흡연부스 설치
- 추진방법
  - 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 피해 및 흡연부스의 필요성 관련 설문 조사 및 의견수렴 진행
  - ② 의견수렴을 토대로 흡연 부스를 설치 필요 장소 10곳 확정
  - ③ 시중에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흡연 부스에 대한 시장 조사를 거친 후, 가장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지니고 있는 제품 선정
  - ④ 실외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가능한 지붕을 포함한 벽면의 50% 이상이 개방된 흡연부스와 환기 팬, 조명 ON/OFF 스위치가 부착된 흡연부스 설치
  - ⑤ 성남시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6조 3항에 따라 흡연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흡연부스에 표지판 부착
  - ⑥ 성남시 내 자원봉사센터와 봉사활동 사이트 (ex 1365 자원봉사포털)와 연계를 맺어 성인 이상의 자원 봉사자를 선정하여 흡연부스 관리
  - ⑦ 흡연부스 관리자의 봉사 기간은 6개월 단위이며 흡연부스 내부 관리(담배꽂초 수거 등)는 주별로 이루어짐

흡연부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격 : 3m x 2m</li> <li>- 수용인원 : 6인 이내</li> <li>- 내부 구성 : 환기팬 1 x ea, LED전구 1 x ea, 콘센트 1 x ea, 창호, 방충망 2 x ea, 우레탄 바퀴 4 x ea, 높이 조절좌 4 x ea, 색상 1 선택 자유, 로고 시트 커팅, 강화 유리, 잠금 장치 완비</li> </ul>

### 04 기대효과

- 길거리 담배꽂초 및 가래침 투기 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
- 흡연부스 설치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분리를 통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 증진 도모
-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의 갈등 해소 및 흡연자의 흡연권 및 보행자의 혐연권 보장
- ‘비흡연자들을 배려해주세요. 흡연 시 흡연부스를 이용해주세요’와 같은 흡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함으로써 흡연자들의 흡연부스 이용을 적극 활성화
- 흡연부스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흡연부스에 대한 혐오감 축소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유발언



05

##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제안 (성남시 중·고등학교 건강매점 설치 및 아침 간편식 제공)



장주빈 의원 | 교육문화상임위원회(야탑중 3)

### 01 문제인식

2년간의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와 ‘성남시청소년교육의회’에서 청소년 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아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중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학업’과 ‘성적’이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좋은 성적을 받아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광범위한 독서를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안전’과 ‘건강’이다.

하루가 멀다고 교육정책이 바뀌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삶은 나날이 힘겨워지고 있다. 수행평가, 지필평가와 수십 개의 대회를 준비해야 하고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도 해야 하며 선행학습을 위해 대부분 매일 학원에 다니고 있다. 그러다보니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기 일쑤이고 학교 후에도 편의점 등에서 라면이나 삼각김밥 등을 사먹고 곧장 학원으로 달려가곤 한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뒤로도 과외, 인터넷 강의, 학원 숙제 등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새벽 2-3시가 돼야 잠자리에 드는 청소년들도 매우 많다.

성남시의 45개 중학교 중 매점이 있는 학교는 거의 없고, 36개 고등학교 중에서도 40% 정도는 교내매점이 없다. 설령 매점이 있어도 그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 컨테이너나 가건물 등에 매점을 만들어놓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빵이나 만두를 파는 수준이라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 가격도 시중보다 비싼 곳이 대부분이다. 학교 앞에 가서 살펴보면 아침밥을 거르거나 배가 고파 학생들이 편의점에 가기 위해 무단 횡단하는 장면은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다 교통사고가 나기도 해서 청소년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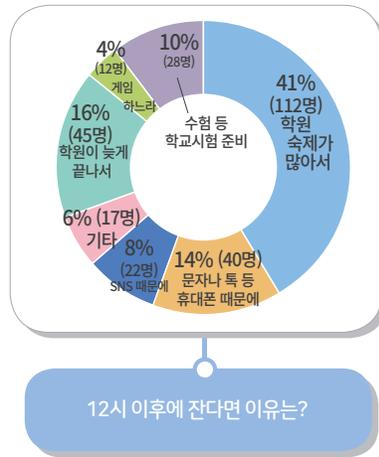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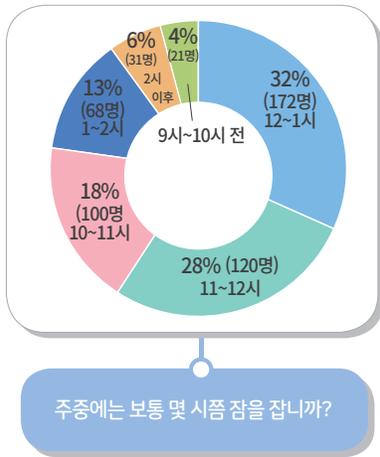
또 야간자율학습을 학교 자율에 맡긴 뒤로 대부분 고등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게 되었고 석식도 제공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고등학생들은 가까운 음식점에서 좋지 않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사먹거나 편의점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있다. 학교에서 석식을 제공해줄 때는 한 달에 3-5만원이면 먹을 수 있던 음식을 2배 이상의 돈을 쓰면서 사먹어야 하는데 그 재료들의 안전성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아직 성장기인 청소년들이 매일 이런 음식을 먹다보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이는 먼 미래에 국가 전체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 02 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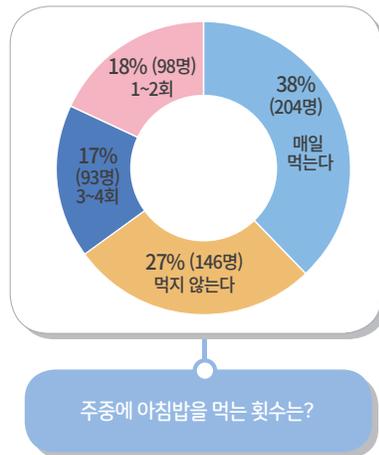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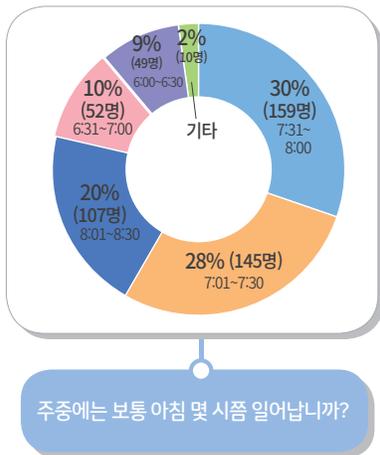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식품 안전 개선 종합 대책’ 등 식생활에 대한 여러 대책은 꾸준히 발표되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국내외 매점 운영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2-1 청소년 생활패턴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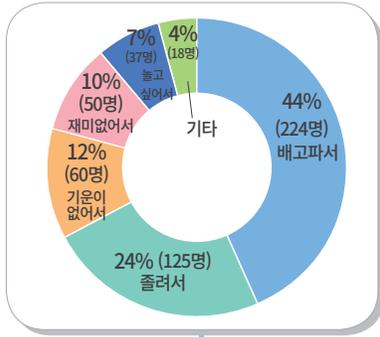
청소년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최근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야탑중학교 1학년~3학년 학생 5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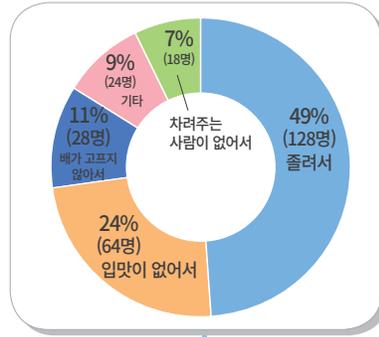
먼저 주중에 ‘밤 12시 넘어서 잠을 자는 학생’은 50%(271명)였다. 그 중 1시가 넘어서야 잠을 자는 학생도 18.3%(99명)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2시 이후에 잠을 자는 이유로는 ‘학원 숙제가 많아서’라는 대답과 ‘학원이 늦게 끝나서’라는 대답이 ‘41%(112명)’, ‘16%(45명)’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학생들이 잠을 늦게 자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학원’인 셈이다.



아침에도 8시가 넘어 일어나는 학생도 20%에 이르렀다. 전날 공부하느라 늦게 잠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늦잠을 자면 아침밥을 거르고 등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중에 아침밥을 1~2회 먹는다는 학생은 18%였고 단 하루도 먹지 못한다는 학생도 27%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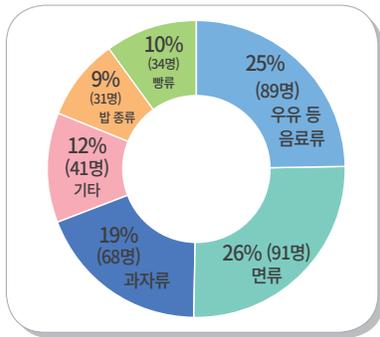


오전 학교 수업시간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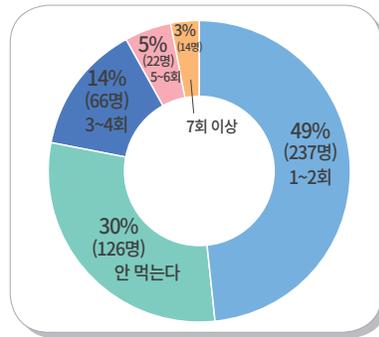


아침밥을 먹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아침밥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즐려서(49%)와 입맛이 없어서(24%)가 가장 많았다. 또 학교 수업시간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까닭으로는 '배고파서'와 '즐려서'가 각각 44%, 24% 순으로 나타나서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후 집이나 학원에 가기 전에 주로 사 먹는 음식이 있다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편의점에 끼니를 때웁니까?

그렇다면 학교 후의 상황은 어떨까? 학교 후 상황도 비슷하다.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가기 전에 편의점 등에서 끼니를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었는데 주로 면류와 과자류 또는 간단한 음료수 등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별로 없는 불량식품을 사먹는 경우가 많았다. 또 그 횟수도 주 1~2회가 49%나 되었으며 주 3~4회 이상이라고 대답한 학생도 무려 14%에 이르렀다.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학생들은 공부하느라 하루하루 시간에 쫓기며 생활하고 있다. 또 잠이 부족해 늦잠을 자는 일이 많고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날도 많았다. 부족한 잠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즐리거나 입맛이 없어 아침밥을 거른 채 등교하면 급식시간까지 배고고 기운도 없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2 국내외 사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한국인의 아침 결식률은 2005년 19.9%에서 2017년 27.6%로 늘었다고 한다. 가정에서 하루 종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기와 달리 성장기 청소년들은 간식을 챙겨 먹기

어려워지므로 세끼 식사만큼은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아침식사 결식률이 점점 높아진다. 아침식사는 뇌 활동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학업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국내에서 빵류, 과자류, 빙과류,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주를 이루었던 학교 매점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8년이었다. 서울시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건강친화적인 식품을 판매하는 건강매점 '쉬는 시간'을 사당동 상도중학교와 둔촌동 한산중학교 등 2곳에서 시범운영했다. 귤, 방울토마토 등 생과일과 1인용 분량으로 포장된 냉동 홍시, 파인애플 등이 판매했는데 귤은 4개, 방울토마토는 10개가 한 묶음으로 가격은 500원~1,000원선이었다. 당시 서울시 47개 초·중·고교 학생 4,559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 매점에서 사 먹는 간식은 빵류(25.0%), 스낵과자류(21.2%), 아이스크림(13.1%) 순이었다. 가격이 비슷하다면 간식으로 과일을 사먹을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은 43%, 중학생은 41.7%, 고등학생은 48%였고,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57%, 중학생 53%, 고등학생의 48%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서울 정동의 이화여고에서는 2009년부터 학교 매점에서 바나나와 사과 등 과일을 팔고 있다. 컵라면, 쫄면 등 학교 매점에서 그동안 판매됐던 고열량·저영양 식품 대신 제철과일과 영양식 등을 파는 건강매점이었는데 당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비만을 막겠다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이화여고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서울 시내 중·고교 711곳 중 57곳에 건강매점이 들어섰다. 또 2012년부터 맞벌이 부모가 있는 가정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침을 거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매점에서 과일·유제품을 제공하는 '아침밥 클럽'도 운영되었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응이 좋아서 매년 지원 대상을 늘려왔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2014년부터 건강매점과 아침밥 클럽 운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2016년에 강원도 첫 학교협동조합인 춘천 금병초등학교 비단병풍 사회적 협동조합이 교내에 건강매점 '꿈먹이'를 개소했다. '꿈먹이'는 '꿈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뜻으로 이름과 로고 등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다. 또 매점 운영도 학생 조합원이 맡아 사회적 경제를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반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한다. 조합은 친환경 먹을거리를 개발하고 학교 인근 지역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구입 등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도 개소 당시와 다름없이 친환경 과자류, 빵류, 빙과류 등을 판매하며 수업 시작 전과 하교할 때 짧은 시간을 열어 운영되고 있다.



춘천 금병초등학교 건강매점 '꿈먹이'



선학중학교 건강매점 '다드림(多Dream)'

그리고 2018년 서울의 서문 여자고등학교와 서울고등학교에도 '건강매점'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매점과 달리 건강한 먹을거리를 판매하고 있는데 컵라면, 인스턴트, 탄산음료, 캔커피 등과 같이 열량이 높거나 영양성분이 낮은 식품을 팔지 않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열량 250칼로리, 당류 17g, 포화지방 4g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한 식품 가운데

단백질이 2g 미만인 간식을 판매할 수 없다. 또 단백질이 2g 이상이라도 500칼로리를 넘어가거나 당류 34g 이상,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되어 판매하지 않고 있다.

2017년 인천의 강화 여자고등학교의 건강매점 '팔아다잇스'와 선학중학교의 건강매점 '다드림(多 Dream)'이 문을 열었는데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화여고 학생들은 영어로 '낙원'을 의미하는 단어인 '파라다이스'를 인용해 낙원 같은 공간을 만들겠다고 이름을 지었고, 선학중학교 학생들은 '물건을 다 드리겠다'는 의미로 '다(多)'자와 영어로 꿈을 뜻하는 'Dream'을 합쳐 '다드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두 건강매점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교육시키는 친환경 매점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구성했는데 두 조합 모두 학생들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건강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호주,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의 매점은 이미 오래 전에 건강한 간식과 음식을 교육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상태이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School Canteen Program'을 시행하고 있고 관련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Canteen 운영자 교육과 Canteen의 인증제 실시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호주의 공립학교에서는 탄산음료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사탕, 과자류도 교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빵, 야채, 과일, 물의 섭취를 권장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영국에서도 'Healthy Tuck Shop', 'Fruit Tuck Shop'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이 외에 'School Fruit and Vegetable Scheme'을 시작해 2000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 어린이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아이들의 간식을 건강친화적인 제품으로 바꾸면 대사성증후군, 비만 등 생활습관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의 여러 나라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이미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가까이 되었다.

학교 매점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배우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 인스턴트 식품이나 과자를 사먹는 곳이 아닌 위생적이고 영양 정보가 가득한 건강한 문화공간으로 바꾸어 청소년들의 성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호주의 'School Canteen Program'

### 03 정책

설문조사와 국내외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 '건강매점 운영지원안'을 마련해 성남시 중고등학교 교내에 '건강매점'을 설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건강매점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들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잘 운영한다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건강매점에서는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 햄버거, 라면처럼 열량만 높고 영양가는 없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죽, 스프, 샌드위치, 과일 등의 판매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건강매점을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식생활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맞춤형 강사를 활용해 학생들이 어렸을 적부터 바른 식생활,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어른이 돼서도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농산물 등을 먹지 않고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매점 설치가 어려운 학교에는 유제품, 스프, 건강빵, 과일 팩, 무가당 주스 등을 팔 수 있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급 수가 많아 교실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매점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학교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과일 외에 흰 우유와 저지방 우유, 플레인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과 곡물이 첨가된 빵류, 무가당 과채류 주스, 두유 등을 판매한다면 건강매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한다.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 공급 등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시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현재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미 신청 학생에 한해 우유를 공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방법을 활용하면 아침밥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아침에 학교에서 간편식을 제공받고 싶은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은 후 건강죽 팩, 과일 팩, 컵밥, 시리얼, 유제품, 샌드위치, 친환경 과일주스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가격에 맞춰 공급한다면 아침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섭취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이미 추진되었던 여러 사업에서 참여한 적이 있는 농심켈로그, 서울우유, 뚜레주르, 초록마을, 울가, 대상FNF, 풀무원 등 기존 업체나 학교에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등을 활용해 보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만하다.



#### 04 기대효과

성장기 청소년들이 학업에 지쳐 아침밥을 먹지 못한 채 등교를 하고 수업을 받는 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또 매일 가까운 음식점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음식을 사먹거나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운다면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것은 볼 보듯 뻔한 일이다. 만약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국가 전체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성남시 중·고등학교에 건강매점을 설치하고 신청 학생에 한해 아침간편식을 제공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내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막아 교통사고의 위험을 없앨 수 있다. 둘째, 아침밥을 먹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셋째, 인스턴트 식품의 유해함을 알게 되어 건강한 식습관이 만들어짐에 따라 건강하고 현명한 소비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수업집중도를 높여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교내에 매점을 설치하면 급식 잔반양이 늘어날 것이다.”, “불량 식품이 많이 제공될 것이다.”, “현금을 많이 가져와서

학교폭력이 증가할 것이다.”라며 매점 설치를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점과 문제점이 있다 해도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 단점은 보완하면 되고 문제점은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

아이는 엄마 혼자서 키우는 것이 아니다. 마을 전체가 함께 키우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와주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학교협동조합과 마을 기업과 같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소통, 나눔, 배려라는 소중한 가치를 함양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매점 수익금은 학교 다양한 교육, 현장체험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마을 축제나 지역의 공익사업과도 연계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친환경 먹거리 개발, 학교 인근 지역 농산물의 활용 등 다양한 사업 추진도 함께 가능할 것이다.



## 성남시 어린이집 성 관련 사건과 제도적 해결방안



김지민 의원 | 인권권익상임위원회(복정고 2)

지난 11월 4일, 성남시 중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간 성 관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동갑인 가해 아동으로부터 6개월 간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으며, 병원 진단의 결과, 성적 학대와 외음질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사건이 성남시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 되자 온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부분은 ‘책임을 질 주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해 아동은 형법 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가해 아동도 매우 어리므로 가혹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만 상처를 입고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체계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 교직원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해서도 보건당국과 지자체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내놓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측이 사고를 인지하고 사흘이 지난 뒤에야 시에 보고한 데다, 사건 관련 아동들의 분리조치도 지연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장면을 지켜본 남자 아이 3명이 계속 어린이집을 다녔고, 결국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시 당국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고, 위반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 당국이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없다고 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의 재발 방지와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추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복지부의 대응 상황에 대해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보면 안 된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가해 아동 또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보호할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정책과 제도, 교육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크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성교육 표준안’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된 적이 있었고,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빠지는 등 논란이 되어 철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에 성교육을 의무화했고, 성을 부끄럽거나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닌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선진적인 성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따로 교육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전체 회의록**



06

전체 회의록(2019. 3. 30. ~ 2020. 1. 18.)

구분	일시	주요내용
1	2019. 03. 30.(토)	윤리위원회 교육, 제4대 행복의회 원 구성 (의장단,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2	2019. 04. 06.(토)	청소년 정책주장 대회 인원 모집, 특별위원회 회의, TF팀 구성 및 회의 진행
3	2019. 04. 20.(토)	공지사항 전달 및 행복의회 규정개정 상정안 의결
4	2019. 05. 11. (토)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제교류활동 논의, 하반기 교류 워크숍 안내, 6차 전문교육, TF팀별 회의 및 회의 결과 발표
5	2019. 06. 01.(토)	공지사항 전달, 7차 전문교육, 특별위원회 회의, TF팀별 회의
6	2019. 06. 08.(토)	윤리위원회 칭찬카드, 공지사항 전달, 하반기 교류 워크숍 논의,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 리허설 및 피드백, TFT 별 회의 및 회의 결과 공유
7	2019. 07. 13.(토)	향후 일정 및 성남시 청소년 토크콘서트 안내, 하반기 교류 워크숍 리허설 및 피드백, TFT 별 회의 및 회의 결과 공유
8	2019. 08. 10.(토)	토크 콘서트 및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추진사항 보고, 청소년·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및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참가 현황, TFT 별 회의 및 회의 결과 공유
9	2019. 09. 21.(토)	공지사항 전달, 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가능 요일 및 시간 조사, 제3회 국제청소년컨퍼런스 IN 성남 참석자 수요 조사, 결위원 특별위원장직 보궐 선거, TF팀 및 상임위원회 별 회의 결과 보고
10	2019. 10. 12.(토)	공지사항 전달 및 자문단간담회 등 향후 일정, 상임위원회 심의, 칭찬카드 결과
11	2019. 10. 26.(토)	공지사항 전달, 상임위원회 심의
12	2019. 11. 23.(토)	공지사항 전달, 본회의 준비 일정 안내, 원탁토론 안내, TFT 별 회의 및 회의 결과 공유
13	2019. 12. 07.(토)	공지사항 전달, 본회의 관련 공지 및 결정, 본회의 리허설, TFT 별 회의 및 회의 결과 공유
14	2019. 12. 14.(토)	해촉의원 의원직 복권 의결, 정책연구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상정안 외 5건 의결 및 본회의 평가회의 진행
15	2020. 01. 18. (토)	본회의 평가 회의, 제 5대 행복의회 모집 계획, 연임 신청서 작성, 선관위 구성 18세 선거권 확대에 대한 의견 공유, 제4대 행복의회 해단식 논의

※ 전체회의 회의결과 수록(상임/특별 위원회, 윤리위원회, TF팀 등 회의록 제외)

##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차 회의록

일시	2019. 03. 30.(토) 09:30~12:30	장소	성남시의회 회의실
진행자	간사 김마리, 의장 당선인 김대희	기록자	청년자문위원 김주환
참석자 (총 21명)	-의원 : 김대희, 김민석, 김서현, 김용훈, 김준서, 김지민, 박건우, 박규남, 박성원, 서청란, 손채원, 신가원, 신민석, 신유림, 안소미, 양현진, 유희민, 윤태호, 이민하, 이서윤, 이세미, 이영진, 이유진, 이지훈, 이해인, 임효정, 장주빈, 정다인, 조은영, 최민석, 최윤서, 허지수, 허지웅 -간사 및 청년 자문위원 : 김마리, 이재영, 김주환, 김선울, 홍승민		
주요안건	윤리위원회 교육, 제4대 행복의회 원 구성 (의장단,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회의내용	<p><b>1. 전문교육 [5회차] 윤리위원회의 역할 및 규정</b>          → 김선울 청년자문위원 담당          → 세부교육 자료 네이버 카페에 있는 PPT 참고.          → 청년 자문위원이 각자 교육자료 카페 업로드 예정</p> <p><b>2.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원 구성</b></p> <p><b>(1) 의장, 부의장 선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선거권) 조항에 의거하여 2019년 3월 30일 선거 실시 직전 선거권자 34명, 재적인원 33명으로 확정됨.</li> <li>2) 규정 제33조(선거) 조항에 의거하여 모든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인 관계로 간사와 청년 자문위원이 규정 제35조(통례적용)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대행함.</li> <li>3) 의장 선거 결과 : 최민석 4표, 김민석 0표, 김대희 29표 → 김대희 후보 당선</li> <li>4) 고등 부의장 선거 결과 : 임효정 23표, 박성원 10표 → 임효정 후보 당선</li> <li>5) 중등 부의장 선거 결과 : 장주빈 16표, 김서현 17표 → 김서현 후보 당선</li> <li>6) 규정에 근거하여 당선자를 의원에게 공포하였으며, 2019년 3월 30일에 실시된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의원은 간사에게 연락할 수 있음을 알림. 간사는 선거에 사용된 선거용지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의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기 위해 간사에게 요청할 수 있음.</li> </ol> <p><b>(2) 상임위원장 선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문화상임위원회 : 위원장 박규남, 서기 최윤서, 윤리위원 김준서</li> <li>2) 인권권익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지훈, 서기 신가원, 윤리위원 김지민</li> <li>3) 환경복지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유진, 서기 이해인, 윤리위원 박건우</li> </ol> <p><b>(3) 특별위원회 구성</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외교류 : 이지훈, 안소미, 유희민, 최민석, 이세미, 이유진, 서청란, 김대희, 엄효정</li> <li>2) 행사추진 : 유희민, 이지훈, 이민하, 허지수, 정다인, 조은영, 김대희, 신유림, 신민석, 이영진, 박성원, 김지민, 최윤서, 김준서</li> <li>3) 정책연구 : 임효정, 박성원, 신가원, 이영진, 김지민, 조은영, 신민석, 안소미, 정다인, 최윤서, 신유림, 박규남, 이해인, 양현진</li> <li>4) 혁 신 : 허지웅, 신가원, 이해인, 최민석, 김용훈, 이서윤, 장주빈, 손채원</li> </ol> <p><b>(4) 특별위원회 선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외교류 : 위원장 서청란, 서기 이세미, 윤리위원 유희민</li> <li>2) 행사추진 : 위원장 박성원, 서기 신유림, 윤리위원 허지수</li> <li>3) 정책연구 : 위원장 이영진, 서기 임효정, 윤리위원 이해인</li> <li>4) 혁 신 : 위원장 허지웅, 서기 최민석, 윤리위원 손채원</li> </ol> <p><b>(5) 윤리위원회 구성</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윤리위원 : 김준서, 김지민, 박건우, 유희민, 허지수, 이해인, 손채원</li> <li>2) 임원 : 윤리위원장 박건우, 부위원장 유희민, 서기 김지민</li> </ol>		
결정사항	회의 내용 참고	건의사항 및 기타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2차 회의록

일시	2019. 04. 06.(토) 09:30~11:40	장소	성남시의회 행복의회 회의실
진행자	김대희 의장	기록자	최민석 (총서기)
참석자 (총 21명)	-의원 : 김대희 정다인 박건우 김용훈 김준서 김지민 박규남 박성원 서청란 김서현 안소미 손채원 신가원 신유림 양현진 유희민 최운서 이민하 이서윤 이세미 이영진 이유진 이해인 임효정 조은영 장주빈 허지수 허지웅 -간사 및 청년 자문위원 : 김마리 이재영 김선울 김주환 홍승민		
주요안건	청소년 정책주장 대회 인원 모집, 특별위원회 회의, TF팀 구성 및 회의 진행		

회의내용	<p><b>1. 청소년정책주장대회 참가 희망자 모집:</b> 김대희 임효정 안소미 김지민 허지수 이해인 박성원, 유희민 신가원, 이유진 ⇒ 이해인, 안소미, 허지수 활동 불가, 청년자문위원 포함 9명 활동</p> <p><b>2. 특별위원회 회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추진특별위원회: 정책제안대회의 시기가 많이 남은 관계로 별도로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하지 않고 타 위원회 회의로 분산하여 참여함.</li> <li>- 대외교류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뉴스는 돌아가며 제작한다.</li> <li>· 페이스북 게시물 작성 담당: 김대희 의장님</li> <li>· 홍보 방법: 각 학교마다 행복의회 건의함을 설치하여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거나 홍보 영상 제작, 행복의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 중 3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 논의</li> </ul> </li> <li>- 정책연구특별위원회: 처음 개설된 특별위원회라서 일단 다른 시에 있는 조례 등을 15개로 간추렸고 앞으로 타도시에서 더 좋은 조례를 벤치마킹 할 예정</li> <li>- 혁신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채원 혁신위 소속 윤리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혁신위 사퇴 후 혁신위의 윤리위원이 신가원 의원으로 결정됨</li> <li>· 행복의회 규정에 있는 의원의 나이 제한인 14세 ~ 19세에 따르지 않고 조례를 따랐기 때문에 규정을 조례의 내용과 같게 개정</li> <li>· 부의장 선출은 조례에 있는 2명 선출로 통일함</li> <li>· 없어진 미디어특별위원회를 대신하여 정책연구위원회로 규정을 개정한다. (ex. 12조에 미디어 특별위원장에서 정책 연구 특별위원장으로 변경)</li> <li>· 제4대 청소년 행복의회는 투표로 인하여 당선이 된 자리이니 해촉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아 제명으로 변경</li> </ul> </li> </ul> <p><b>3. TF팀 구성 및 회의</b></p> <p>① 청년복지 TF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 허지수 허지웅 김준서 유희민 임효정 김대희</li> <li>- 추진 정책: 청소년의 나이가 만9세~24세임에 따라 청년의 일부는 청소년에 포함되며, 청소년들도 성장하면 청년이 됨. 이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등 관련 복지 정책에 대한 제안 예정</li> </ul>
------	--

② 청소년 복지 TF팀

- 구성원: 박성원 허지수 박건우 이영진 윤태호 박규남 이해인
- 추진 정책: 청소년인권조례 등 다른 시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복지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의제발굴 추진

③ 청소년 정신건강 TF팀

- 구성원: 신가원 이유진 이민하 양현진 안소미 최민석
- 추진 정책: 청소년의 정신질환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우울증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위클래스나 토레 상담사 등을 확대 시킨다.

④ 흡연부스 TF팀

- 구성원: 이서윤 임효정 이세미 김용훈 신민석 서청란 이지훈
- 추진 정책: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피는지 조사 후 그 근처에 흡연 부스설치,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미관상 안 좋아 보일수도 있기 때문에 예술관련 환경단체에서 관리 해 주고 내부 시설 등 환경 문제는 외부 청소년업체에서 관리해준다.

⑤ 장애인, 미혼모 TF팀

- 구성원: 박성원 김지민 김서현 손채원 임효정 이민하 양현진 안소미
- 추진 정책: 미국의 장애인 마크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점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정책 제안, 또한 미혼모 센터의 운영이 어렵고 미혼모가 미혼모 센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6개월까지 밖에 있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른 정책 발굴 및 제안 추진

⑥ 스쿨버스 TF팀

- 구성원: 허지수 정다인 최윤서 신유림 조은영 장주빈
- 추진정책: 고등학교가 먼 학생들을 위해 스쿨버스를 운영한다.

결정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3차 회의록

일시	2019. 04. 20.(토) 09:30~10:40	장소	성남시의회 행복의회 회의실
진행자	김대희 의장	기록자	최민석 (총서기)
참석자 (총 21명)	- 의원: 김대희 김서현 김용훈 김준서 김지민 박건우 박규남 박성원 서청란 신유림 양현진 유희민 윤태호 이민하 이서윤 이세미 이유진 이해인 임효정 장주빈 최민석 최윤서 신가원 - 간사 및 청년 자문위원: 김마리 이재영 김선율 김주환 홍승민		
주요안건	공지사항 전달 및 행복의회 규정개정 상정안 의결		

회의내용	1. 공지사항 전달 1)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가 2018년 우수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운영분야 심사결과 우수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됨. 2) 2019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주장대회 공지 - 주제: 청소년 예산심의권 보장 방안 - 일정 ① 공모기간: 2019. 03. 28. ~ 2019. 04. 26 ② 예선심사기간: 2019. 04. 29. ~ 2019. 05. 03 ③ 본선선정발표: 2019. 05. 07,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④ 본선: 2019. 05. 25. - 장소: 수원 컨벤션 센터 3) 행복의회 슬로건 확정 - ‘청소년의 한걸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97명) - ‘청소년이 행동하면 미래는 현재가 됩니다’(19명) - ‘청소년을 향한 관심, 미래를 향한 출발’(15명) 4) 남아프리카공화국 Monument park High school과 교류 활동 공지 - 일자: 6.24(월)~6.27(목) 중 1일 - 시간: 15:00 ~ 18:00 - 참석자: 임효정 유희민 서청란 이세미 신가원 최윤서 김주환 김지민 김대희 김서현 신유림 장주빈 (총 11명) 5) 다음 정례회의 안내 - 4차 정례회의: 5. 11. (토) - 5차 정례회의 또는 본선진출: 5. 25. (토) 6) 다른 의회와의 교류활동 공지 - 기간: 7. 26.(금) ~ 7. 27.(토), 1박 2일 - 참여 가능 여부를 위한 의원들 학교 방학과 기말 일정 조사													
	<table border="1"> <thead> <tr> <th>학교명</th> <th>방학식</th> <th>기말고사</th> </tr> </thead> <tbody> <tr> <td>북정고</td> <td>7.18</td> <td>6.27~7.3</td> </tr> <tr> <td>성남고</td> <td>7.19</td> <td>7.1~7.4</td> </tr> <tr> <td>분당고</td> <td>7.18</td> <td>7.2~7.5</td> </tr> </tbody> </table>			학교명	방학식	기말고사	북정고	7.18	6.27~7.3	성남고	7.19	7.1~7.4	분당고	7.18
학교명	방학식	기말고사												
북정고	7.18	6.27~7.3												
성남고	7.19	7.1~7.4												
분당고	7.18	7.2~7.5												

태원고	7.18	7.2~7.5
성일정보고	7.17	7.1~7.5
이우고	7.12	6.25~6.28
송신여고	7.19	7.1~7.5
품생고	7.17	7.1~7.4
효성고	7.19	7.2~7.5
야탑중	7.18	7.2~7.4
성일중	7.17	7.1~7.4
판교중	7.15	7.8~7.10

7) 성남시 차세대위원회 위촉식 참석자 조사) 2019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주장대회 공지  
 - 참석가능자: 김대희, 김서현, 양현진 이서윤 김용훈(총 5명)

2. 상정안 의결

1)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자격) <개정 2016. 6. 4.> <개정 2016. 8. 6.> 행복의회 의원의 자격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b>청소년(14세~19세)으로 활동할 수 있다.</b>	제6조(자격) <개정 2016. 6. 4.> <개정 2016. 8. 6.> 행복의회 의원의 자격은 성남시 관내 거주 또는 재학 중인 <b>만 12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b>

- 이미 조례 개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판단하여 의결을 하지 않음

2)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구성) 행복의회 의원은 시 관내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고, 연령이나 거주 지역 및 성별 등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6. 8. 6.> ① 행복의회란 성남시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0> ②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수는 <b>45명</b>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8. 15.>	제7조(구성) 행복의회 의원은 시 관내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고, 연령이나 거주 지역 및 성별 등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6. 8. 6.> ① 행복의회란 성남시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0> ②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수는 <b>40명</b>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8. 15.>

- 23명 참석,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원의 자격상실) 의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행복의회 의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해촉·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의회 명의로 참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3회 이상 전체회의에 불참한 자 2.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제외한 기	제9조(의원의 자격상실) 의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행복의회 의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해촉·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의회 명의로 참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전체회의에 불참한 자<개정 2019. 4. 20.> 2.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제외한 기

타 활동 참가에 대해서 참가율이 저조한 자 <개정 2016. 8. 6.>  
3. 범죄, 의회 명의를 활동 등으로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자

타 활동 참가에 대해서 참가율이 저조한 자 <개정 2016. 8. 6.>  
3. 범죄, 의회 명의를 활동 등으로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자

- 23명 참석, 찬성: 1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조건부 가결**

4)	개정 전	개정 후
	<p>제9조(의원의 자격상실) 의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행복의회 의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b>해촉</b>·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③ 의원 본인이 <b>해촉</b>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b>해촉</b> 의사”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사임한다. 1.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하게 사임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제29조(의결) &lt;개정 2016. 8. 6.&gt; &lt;개정 2016. 12. 10.&gt; &lt;개정 2017. 5. 13&gt; 행복의회의 본회의와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 특별위원회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행복의회 규정 개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및 의장, 부의장 <b>해촉</b>은 의원투표로 의결한다.</p>	<p>제9조(의원의 자격상실) 의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행복의회 의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b>제명</b>·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③ 의원 본인이 <b>제명</b>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b>제명</b> 의사”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사임한다. 1.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하게 사임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제29조(의결) &lt;개정 2016. 8. 6.&gt; &lt;개정 2016. 12. 10.&gt; &lt;개정 2017. 5. 13&gt; 행복의회의 본회의와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 특별위원회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행복의회 규정 개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및 의장, 부의장 <b>제명</b>은 의원투표로 의결한다.</p>

5)	개정 전	개정 후
	<p>제12조(임원) ① 행복의회의는 의장, <b>부의장</b>, 서기, 교육문화상임위원장, 인권권익상임위원장, 환경복지상임위원장, 혁신특별위원장, 대외교류특별위원장, <b>미디어특별위원장</b>, 행사추진특별위원장 각 1인을 둔다. &lt;개정 2015. 8. 15.&gt; &lt;개정 2016. 6. 4.&gt; &lt;개정 2017. 5. 13&gt;</p>	<p>제12조(임원) ① 행복의회의는 의장, <b>고등부의장</b>, <b>중등부의장</b>, 서기, 교육문화상임위원장, 인권권익상임위원장, 환경복지상임위원장, 혁신특별위원장, 대외교류특별위원장, <b>정책연구특별위원장</b>, 행사추진특별위원장 각 1인을 둔다. &lt;개정 2015. 8. 15.&gt; &lt;개정 2016. 6. 4.&gt; &lt;개정 2017. 5. 13&gt;</p>

- 23명 참석, 찬성: 2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

6)	개정 전	개정 후
	<p>제14조(자격) ① 의장 및 부의장은 행복의회의의 구성원이어야 한다.</p>	<p>제14조(자격) ① 의장 및 부의장은 행복의회의의 구성원이어야 한다.</p>

② 각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행복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5. 8. 15.> ③ 각 특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행복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7. 5. 13>	② 각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행복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5. 8. 15.> ③ 각 특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행복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7. 5. 13> ④ 각 TF팀 팀장 및 팀원은 행복의회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9.04. 20>
---	--

- 23명 참석,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지위) ① 의장은 행복의회를 대표하며, 본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8. 15.>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결위 시 <b>그 직무를 대행한다.</b>	제16조(지위) ① 의장은 행복의회를 대표하며, 본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8. 15.>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결위 시 <b>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b>

- 23명 참석,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성립요건) -----중략----- ⑤ 윤리위원회는 의장단의 해임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장단의 구성원이 윤리위원회에 <b>해촉</b> 대상으로 판결되었을 때, 해당 의원은 즉시 직무를 상실하며 평의원과 같은 <b>해촉</b> 절차를 거친다. 해당 의원의 <b>해촉</b> 으로 인한 의장단의 결위 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조(성립요건) -----중략----- ⑤ 윤리위원회는 의장단의 해임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장단의 구성원이 윤리위원회에 <b>제명</b> 대상으로 판결되었을 때, 해당 의원은 즉시 직무를 상실하며 평의원과 같은 <b>제명</b> 절차를 거친다. 해당 의원의 <b>제명</b> 으로 인한 의장단의 결위 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23명 참석,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징계) -----중략----- ③ 윤리위원회는 판단을 근거로 의원에 대한 <b>해촉</b> 및 기타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판단 과정 및 근거에 대한 약식의 판결문을 작성하여 의회에 공포한다.	제7조(징계) -----중략----- ③ 윤리위원회는 판단을 근거로 의원에 대한 <b>제명</b> 및 기타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판단 과정 및 근거에 대한 약식의 판결문을 작성하여 의회에 공포한다.

- 23명 참석,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회의내용

건의사항 및 기타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4차 회의록

일시	2019. 05. 11. (토) 09:30~12:00	장소	성남시의회 행복의회 회의실
진행자	김대희 의장	기록자	최민석 (총서기)

참석자 (총 21명)	-의원: 김대희 김서현 김용훈 김준서 김지민 박건우 박규남 박성원 서청란 신가원 신유림 양현진 이민하 이서윤 이세미 이유진 이해인 임효정 장주빈 정다인 조은영 최민석 최윤서 -간사 및 청년 자문위원: 김마리 김선율 김주환 홍승민
----------------	---

주요안건	공지사향 전달,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제교류활동 논의, 하반기 교류 워크숍 안내, 6차 전문교육, TF 팀별 회의 및 회의 결과 발표
------	--

회의내용	<p><b>1. 공지사향 전달</b></p> <p>1) 청소년정책주장대회 본선 진출함. 대회 격려 차 참석 여부 조사 - 추가 참석자 : 박규남 박건우 이해인 최민석 최윤서 정다인 이지훈</p> <p>2) 다음 정례회의 공지 - 6월 1일 (토) - 6월 8일 (토) - 시험기간을 고려하여 회의 일정을 정하였음.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 확인 바람.</p> <p><b>2.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제교류활동 논의</b></p> <p>1) 행복의회 소개 발표 : 장주빈, 김대희 2) 주제토의 주제 논의</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주제</th> <th>득표수</th> <th>연번</th> <th>주제</th> <th>득표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빈부격차</td> <td>16표</td> <td>7</td> <td>미세먼지</td> <td>0표</td> </tr> <tr> <td>2</td> <td>다문화 차별</td> <td>13표</td> <td>8</td> <td>정치 부패</td> <td>12표</td> </tr> <tr> <td>3</td> <td>물부족</td> <td>2표</td> <td>9</td> <td>기아문제</td> <td>4표</td> </tr> <tr> <td>4</td> <td>월드컵 전후의 생활변화</td> <td>9표</td> <td>10</td> <td>장애인 인권</td> <td>4표</td> </tr> <tr> <td>5</td> <td>환경파괴</td> <td>4표</td> <td>11</td> <td>교육 시스템</td> <td>13표</td> </tr> <tr> <td>6</td> <td>실업</td> <td>0표</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주제	득표수	연번	주제	득표수	1	빈부격차	16표	7	미세먼지	0표	2	다문화 차별	13표	8	정치 부패	12표	3	물부족	2표	9	기아문제	4표	4	월드컵 전후의 생활변화	9표	10	장애인 인권	4표	5	환경파괴	4표	11	교육 시스템	13표	6	실업	0표			
	연번	주제	득표수	연번	주제	득표수																																					
	1	빈부격차	16표	7	미세먼지	0표																																					
	2	다문화 차별	13표	8	정치 부패	12표																																					
	3	물부족	2표	9	기아문제	4표																																					
	4	월드컵 전후의 생활변화	9표	10	장애인 인권	4표																																					
	5	환경파괴	4표	11	교육 시스템	13표																																					
	6	실업	0표																																								
	<p>⇒ 빈부격차, 다문화 차별, 교육시스템, 정치부패 선정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너무 세분화된 주제로, 경제, 사회문화, 교육, 정치로 주제 선정</p> <p>3) 한국 소개 및 활동 논의 - 한국소개 발표 : 이지훈, 유희민(추천) - 카드 짝 맞추기, 보물찾기, 사진퀴즈, 숨바꼭질, 수건들리기 등 - 국제교류 추가 희망 인원 : 이지훈 양현진 정다인</p>																																										
<p><b>3. 하반기 교류 워크숍 안내</b></p> <p>1) 기간 : 7. 26.(금)~ 27.(토), 무박 2일 2) 장소 : 중원청소년수련관 3) 일정 - 오전 : 타 시의회 교류활동 (양산시, 서울 강북구, 금천구 등 3개) - 오후 : 1대 ~ 3대에 의원들과의 교류</p>																																											

## 4. 헌법의 이해 (행복의회 6차 전문교육)

## 5. TF팀별 회의 및 회의 결과 발표

1) TF팀 별 1차 정책제안서 제출 : 7.10.(수)

2) 회의 결과

연번	주제
청년복지 TF	- 불참한 TF팀원들이 다수라 별도의 회의 날짜를 잡아 진행할 예정임. - 청년 교통비 지원과 관련 정책 추진 예정
청소년 인권 TF	- 성남시 청소년 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청소년 인권 조례 및 학생인권조례를 검토하고 있음.
청소년 정신건강 TF	- TF팀 방향성에 대한 결정 추진 - wee 클래스 및 또래상담사에 대한 교육 확대 등 논의
흡연부스 TF	- 흡연부스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 - 설문조사를 통해 흡연부스 설치가 필요한 장소 확인 예정
사회적 약자 TF	- 그린앤 플러그 벤치마킹, 미혼모 카페 운영, 점자 매뉴얼, 장애인을 위한 보조도구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제 조사 및 논의
스쿨버스 TF	- 학교별 스쿨버스가 아닌 학교를 정류장으로한 성남시 스쿨버스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논의 추진

회의내용

건의사항 및 기타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5차 회의록

일시	2019. 06. 01.(토) 09:30~12:30	장소	성남시의회 행복의회 회의실
진행자	김대희 의장	기록자	최민석 (총서기)
참석자 (총 21명)	- 의원: 김대희 김서현 김용훈 김지민 박건우 박규남 박성원 신가원 신유림 양현진 유희민 윤태호 이세미 이영진 이유진 이지훈 이해인 임효정 장주빈 정다인 조은영 최민석 최은서 - 간사 및 청년 자문위원: 김마리 김선울 김주환 홍승민		
주요안건	공지사향 전달, 전문교육 7차시, 특별위원회 회의, TF팀별 회의		

회의내용	<p><b>1. 공지사향 전달</b></p> <p>1) 의정활동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토) 시장님 인사회 및 중원청소년수련관 성년의 날 기념행사 참석</li> <li>- 5/25(토) 2019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정책주장대회 본선 참가</li> <li>- 5/27(월)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선포식 참석 및 아동권리헌장 낭독</li> </ul> <p>2) 다음 전체회의에는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 참관 예정</p> <p>3) 다음 전체회의에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행복의회 소개, 한국소개 리허설 예정이며, 전체회의 종료 후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참가자 회의 진행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청소년 예산심의권 보장 방안</li> <li>- 국제 청소년 교류활동 참가 예정 인원: 이지훈 신가원 김대희 장주빈 김서현 김지민 임효정 유희민 정다인 최은서(총 10명)</li> <li>⇒ 다음 전체회의 시 최종 참가자 인원 조사함.</li> </ul> <p><b>2. 7차 전문교육 [삼권분립과 입법기관] 진행</b></p> <p><b>3. 특별위원회별 회의</b></p> <p>1) 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잦은 부재(자격증 시험 및 면접 등)로 인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부위원장 선출(부위원장 : 최민석)</p> <p>2) 정책연구특별위원회: 아동 주거권에 관련된 논문, 기사, 신문 등을 통해 자료 조사, 7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계획</p> <p>3) 행사추진/대외교류/혁신특별위원회: 제안대회 주제 논의(슬로건 ex. 아이디어 블래스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 성남시 예산을 flex해버렸지뭐야, 스카이크캐슬, your dear, idea, 내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슈퍼스타 시장, 정책소년단, 정책 콜리, i want your IDEA, 제안의 추억, 정책제안;엔드게임, 제안해라 두 번해라</li> <li>⇒ 적절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추후 다시한번 논의 예정</li> </ul> <p><b>4. TF팀별 회의</b></p> <p>1) 청년복지 TF팀: 근로 청년 대상 교통비 지원에 대한 방향으로 살펴보고 있으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아 연령대를 정해서 그 범위 내 학생, 미취업자 등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는 청년 정책 연구 중</p> <p>2) 청소년 인권 TF팀: 성남시청소년인권조례 제정 시 방향에 대한 논의 중이며, 부정평가단 운영조례와 청소년 인권 선언 관련 고려하여 이후 방향성 구축</p>
------	--

- 3) 청소년 정신건강 TF팀: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조례를 제안하고자 했으나, 이미 모두 실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 다른 방향으로 정책의제를 변경하고자 논의하고 있음.
- 4) 흡연부스 TF팀: 설문지를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어 SNS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고자 함. 또한 흡연 부스 관련 된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완성된 정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안하고 이후 조례 형태로의 제안을 추진할 예정 임.
- 5) 사회적 약자 TF팀: 점자 메뉴판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안하고, 성남시 문화시설 관련 장애인을 위한 안내 장치나 시설 의무 설치 에 관한 조례로 정책제안서 준비 진행 중
- 7) 스쿨버스 TF팀: 스쿨버스 관련 정책에 많은 한계들이 존재하여 다른 방향으로 정책 의제를 변경할지 그대로 진행할지 방향성에 대한 논의하고 있음.

**5. 다음 전체회의 안내**

- 6차 정례회의: 2019. 6. 8.(토) 09:30~ 성남시의회 회의실

회의내용

건의사항 및 기타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6차 회의록

일시	2019. 06. 08.(토) 09:30~12:30	장소	성남시의회 회의실
진행자	김대희 의장	기록자	청년자문위원 김주환
참석자 (총 21명)	- 의원 : 김대희, 김서현, 김용훈, 김준서, 김지민, 박건우, 박규남, 서청란, 신가원, 신유림, 양현진, 유희민, 윤태호, 이민하, 이서윤, 이세미, 이영진, 이유진, 이지훈, 이해인, 임효정, 장주빈, 정다인, 최윤서 - 간사 및 청년 자문위원 : 김마리, 김주환, 김선울, 홍승민		
주요안건	윤리위원회 칭찬카드, 공지사항 전달, 하반기 교류 워크숍 논의,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 리허설 및 피드백, TFT 별 회의 및 회의 결과 공유		
회의내용	<p><b>1. 윤리위원회 칭찬카드 작성</b></p> <p>1) 의정활동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희 의장 9표, 장주빈 의원 2표, 박건우 의원 2표, 임효정 의원 5표, 김지민 의원 2표, 최윤서 의원 1표, 박규남 의원 2표(자기투표 1), 홍승민 자문위원 1표. 이상 24표</li> <li>- 김대희 의장(전체의의원 선정), 박규남 의원(윤리위원회 선정) 상품 수여 대상자 확정</li> </ul> <p><b>2. 공지사항 전달</b></p> <p>1)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참관 소개</p> <p>2)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24일 15:00 ~ 15:30 성남시청 견학 / 15:30 ~ 16:00 성남시의회 견학</li> <li>16:00 ~ 17:30 남아공 국제 청소년 교류</li> </ul> <p>3) TFT 별 정책 제안서 제출 (7월 10일 수요일 밤 12시 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페에 있는 양식 준수 必</li> <li>- 6월 8일 정례회의 시 TF 별 마지막 회의</li> </ul> <p>4) 국민 생각함 청소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및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회, 행복의회에서 2건 정도 공모할 계획</li> </ul> <p>5) 7월 전체 회의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7월 13일 토요일 정례 회의</li> <li>- 정책제안 토크콘서트 일정 미정, 토크콘서트 진행 시 회의 대체</li> <li>- 일정 변경 시 성남시청소년재단 차오름실에서 회의 진행, 관련하여 추후 공지 예정</li> </ul> <p><b>3. 하반기 교류 워크숍 논의 (7월 26일 ~ 7월 27일)</b></p> <p>1) 그룹 별 주제 토의 안건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 교류 워크숍 그룹 별 주제 토의 안건 : 청소년의회의 대표성 문제, 정책제안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청소년의회 여러 문제점 개선방안, 청소년의회 홍보방안</li> <li>- 올해 교류 워크숍 그룹 별 주제 토의 안건 : 취업난, 환율 안정화 방안(박규남 의원), 패스트트랙, 예멘 난민 문제(이지훈 의원), 미세먼지 대응책(김지민 의원), 청소년 사회적 입지 확대 방안, 청소년의회와 지자체의 연계방안(김대희 의장)</li> <li>- 주제 토의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첨부할 것.다음2) 청소년 인권 TF팀: 성남시청소년인권조례 제정 시 방향에 대한 논의 중이며, 부정평가단 운영조례와 청소년 인권 선언 관련 고려하여 이후 방향성 구축</li> </ul>		

2) 행복의회 소개 발표자

- 이영진 의원, 박건우 의원, 김서현 부의장, 임효정 부의장, 이지훈 의원이 하는 것으로 결정됨.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카페에 행복의회 관련 자료 참고하여 발표 자료 제작할 것.

3) 이후 프로그램 기획

- 작년 워크숍: 주제의의, 요리 경연대회 등
- 올해 워크숍: 수건 돌리기, 축구, 농구, 런닝맨, 요리 경연대회(요리 눈치게임), 스피드 퀴즈, 몸으로 말해요, 종현이 게임(노래 1초 듣고 맞추기), 물풍선 소쿠리로 받기, 영화 맞추기, 초성 퀴즈, 고요 속의 외침.

4.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 리허설 및 피드백

1) 행복의회 소개: 김대희 의장, 장주빈 의원 담당

- 장주빈 의원 발표 내용 중,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로 수정
- 김대희 의장 발표 내용 중, 사회적 약자 : social disadvantaged

2) 대한민국 소개: 김지민 의원, 이지훈 의원 담당

5. TFT 별 회의 및 회의 결과 공유

1) 어린이 통학버스 TF : 6월 9일 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1차 수정 이번 주말까지.

입법추진활동 계획: 시의원님과 컨택 및 간담회 조례 피드백 -> 시의원님과 함께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 공론화 -> 정민훈 자문위원 기사 작성 -> 조례안 발의 캠페인

2) 휴먼부스 TF : 지난 시간까지 설문조사지 만들. 이번 회의에서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릴 문구 작성. 설문조사 대상은 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으며 그 중 10명 정도 기프트콘 발송 예정. 정책제안서는 조례보다 정책으로 만들 계획임,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전에 참가 예정이고, 내일(6월 9일)까지 행복의회 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예정.

3) 사회적 약자 TF : ‘공공기관 장애인 보조기구 의무화 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 중. 누구에게도 장벽이 없게끔, 차별없이 다 함께 누리는 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함. 점자 메뉴판, 그린맵 플러스 정책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예정.

4) 청년복지 TF : 내일(6월 9일)까지 초안 완성 예정. 오늘 회의에서 교통비 지원 현황을 살펴봄. 서울 중구, 수원시, 광주광역시 교통비 지원 현황에 대한 조사.

5) 청소년인권 TF : 지난번 회의에서 청소년 인권위원회, 청운위 조항 관련 토론을 진행함. 청소년 인권 조례 초안을 만들 예정. 조만간 만나서 회의 예정. 서울시, 동해시 인권 조례를 참고할 예정임.

6) 청소년법률지원(정신건강) TF : 정신건강 -> 청소년 법률 지원센터 설치로 TF의 방향성이 변경됨. 관련 조례안 작성 및 정책안 6월 9일까지 작성 예정.

7) 미래카드(스쿨버스) TF : 스쿨버스 -> 미래카드로 TF팀의 방향성이 변경됨. 문제점, 현황, 개선방안, 기대효과에 대한 조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 문화 체험 등 지원 미비한 문제를 해결할 것. 지원금액 연간 8만원, 체험 보고서 작성 후 지원 연장 여부 결정하는 정책

결정사항	회의 내용 참고
건의사항 및 기타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청소년 회의 참관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7차 회의록

일시	2019. 07. 13.(토) 09:30~12:30	장소	성남시청소년재단 차오름실														
진행자	김대희 의장	기록자	최민석 (총서기)														
참석자 (총 21명)	- 의원: 김대희 김서현 김용훈 김준서 김지민 박건우 박규남 박성원 서청란 신유림 양현진 유희민 윤태호 이서윤 이세미 이유진 이해인 장주빈 최민석 최윤서 신가원 허지웅 - 간사 및 청년 자문위원: 김마리 김선울 김주환																
주요안건	향후 일정 및 성남시 청소년 토크콘서트 안내, 하반기 교류 워크숍 리허설 및 피드백, TFT 별 회의 및 회의 결과 공유																
회의내용	<p><b>1. 윤리위원회 칭찬카드 작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반기 교류 활동: 7. 26.(금) ~ 27.(토)</li> <li>- 8차 정례회의: 8. 10.(토)</li> <li>- 성남시청소년토크콘서트: 8. 17.(토)</li> <li>- 청소년 주간: 9. 7.(토)</li> <li>- 9차 정례회의: 9. 21.(토)</li> </ul> <p><b>2. 성남시 청소년 토크콘서트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8. 17.(토)</li> <li>- 장소: 성남시청 한누리홀</li> <li>- 대상 및 인원: 성남시 관내 청소년 및 지도자 300명</li> <li>- 주최: 성남시 청소년 토크콘서트 추진위원회 (가칭)</li> <li>- 참여기관: 수정·중원·서현·정자·판교 및 은행동·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분당지역고등학교 학생회연합 블루,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성남시차세대위원회, 금광청소년문화의집, 오늘도행복한청소년 등 13개 기관</li> <li>- 내용: 성남시청소년정책에 관한 평가 및 제안, 의견수렴 등</li> <li>- 추진계획: 추진위원회(가칭)를 조직하여, 청소년이 직접 주제 및 내용 등 세부 내용을 논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할 예정이며,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6. 22.(토), 2차 회의를 7. 14.(일) 17:00 진행함. 추후 결정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공유 예정임.</li> <li>- 주제제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해결방안</li> <li>2) 입시교육 문제 및 특성하고 취업 문제</li> <li>3) 최저임금 문제</li> <li>4) 학생 자치권</li> </ol> </li> </ul> <p><b>3. 하반기 교류 워크숍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시간</th> <th>내용</th> <th colspan="2">비고</th> </tr> </thead> <tbody> <tr> <td>00:00 ~ 08:00</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사전준비</td> <td>주제토의</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어울림실</td> </tr> <tr> <td>08:00 ~ 09:00</td> <td>세면 및 준비</td> </tr> <tr> <td>09:00 ~ 10:00</td> <td>아침식사 및 토의결과발표</td> </tr> <tr> <td>10:00 ~ 11:00</td> <td>귀가</td> </tr> </tbody> </table>			시간	내용	비고		00:00 ~ 08:00	사전준비	주제토의	어울림실	08:00 ~ 09:00	세면 및 준비	09:00 ~ 10:00	아침식사 및 토의결과발표	10:00 ~ 11:00	귀가
시간	내용	비고															
00:00 ~ 08:00	사전준비	주제토의	어울림실														
08:00 ~ 09:00		세면 및 준비															
09:00 ~ 10:00		아침식사 및 토의결과발표															
10:00 ~ 11:00		귀가															

11:00 ~ 12:00	교 류 활 동 ①	환영사 참여기구 별 소개	공연장
12:00 ~ 13:00		점심식사(도시락)	개별장소
13:00 ~ 15:00		그룹별 주제토의	
15:00 ~ 16:00		토의결과 발표 단체사진 촬영	공연장
16:00 ~ 18:00		TF팀별 발표 준비	어울림실
18:00 ~ 21:00	교 류 활 동 ②	바비큐파티 & 요리경연대회	연못가앞
21:00 ~ 22:00		TF팀 별 진행사항 공유 및 피드백	어울림실
22:00 ~ 24:00		교육 및 토론	

- 하반기 교류 워크숍 관련 배부한 일정 및 안내문 반드시 부모님께 전해드리고, 사전 허락 받을 수 있도록 전달 부탁

- 주제토의 배정

구분	주제	명단
1	아동, 청소년의회 활성화 방안 (지자체의 연계방안 등)	양현진, 김서현, 박건우
2	청소년의 원활한 정치참여 및 사회적 입지 확대 방안	장주빈, 이영진, 서청란
3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 관련 정책 제안 (미세먼지 대응책 등)	최윤서, 이민하, 임효정
4	취업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	허지웅, 유희민, 이서윤, 김용훈
5	패스트트랙 입법지정 개혁인가 문제인가? (찬반논의)	김대희 이유진, 이지훈
6	게임중독은 질병인가?	이세미, 김준서, 최민석
7	자유학년(기)제의 학교별 추진현황 및 찬반 논의	박규남, 조은영, 신유림, 김지민
8	청소년의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방안	윤태호, 신가원, 이해인

- 공동체활동 및 요리경연대회 조 배정

조	팀원	게임	
1	은영, 해인, 준서, 서윤, 유진, 지훈	비빙냉면	마피아
2	윤서, 유진, 지민, 지웅, 민석, 청란	콘치즈, 떡볶이	고요속의 외침
3	희민, 건우, 세미, 가원, 민하, 영진, 대회	스테이크 덮밥	미정
4	규남, 태호, 효정, 현진, 서현, 용훈	제육볶음	복불복 음료수

- 행복의회 소개 발표 및 피드백

- 1) PPT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음. PPT배경을 조금 더 진하게 해야 할 것 같다.
- 2) 1,2,3대 사진이 없고, 슬로건들만 나와 있어 몇 대의 활동인지 전혀 알수 없다.
- 3) 4대 슬로건이 PPT안에서 깨짐
- 4) PPT내용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 늘어지는 느낌이 들고, 이해가 안된다.

#### 4. TF팀별 소그룹 회의

- 청소년,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및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안내
- TF팀별 정책제안서 제출 수정 및 보완 진행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8차 회의록

일시	2019. 08. 10.(토) 09:30~12:30	장소	성남시의회 행복의회 회의실															
진행자	김대희 의장	기록자	최민석 (총서기)															
참석자 (총 21명)	- 의원: 김대희 김서현 김용훈 김준서 김지민 박건우 박성원 서청란 신가원 양현진 유희민 윤태호 이민하 이서윤 이유진 이해인 장주빈 정다인 조은영 최민석 최윤서 - 간사 및 청년 자문위원: 김마리 김선울 김주환 변호용																	
주요안건	토크 콘서트 안내 및 추진사항 보고,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추진사항 보고, 청소년·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현황,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현황, 정책제안서 피드백 보완 2차 제출 기간 안내, 추후 일정 안내																	
회의내용	<p><b>1. 성남시 청소년 토크콘서트 안내 및 추진사항 보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참가 신청 현황 확인 (약 120명)</li> <li>- 행복의회 의원 출석체크 및 필수 참석, 사전신청 완료</li> <li>- 출석체크 9시 55분, 성남시청 3층 한누리</li> </ul> <p><b>2.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추진사항 보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 아이디어를 입력하세요 WWW -</li> <li>- 일 시: 2019. 11. 9.(토) 14:00 ~ 18:00(본선)</li> <li>· 제안대회 설명회: 2019. 8. 31.(토) 13:00~14:00</li> <li>· 참가 접수: 2019. 10. 16.(수) ~ 23.(수) 18:00까지</li> <li>- 장 소: 성남시청 한누리홀</li> <li>- 대 상: 관내 청소년(만9세 이상 24세 이하) 개인 또는 팀                      ※ 팀 인원 제한 10명 이내</li> <li>- 인 원: 5,000명(네티즌 투표 및 본선대회 포함)</li> <li>- 내 용                      · “내가 만약 시민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부터 주요 정책까지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li> <li>· 제안내용 서류(예선) 및 본선심사, 시상 등</li> <li>- 주최·주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li> <li>- 후 원: 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가천대학교(예정)</li> </ul> <p><b>3. 청소년·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현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일자: 7. 13.(토) ·</li> <li>- 제출방법: 인터넷 신청</li> <li>- 내 용</li> </ul> <table border="1" data-bbox="350 1564 1229 1760"> <thead> <tr> <th>구분</th> <th>팀명(대표자)</th> <th>공모제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Green girl(양현진)</td> <td>그린 맨 플러스</td> </tr> <tr> <td>2</td> <td>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사회적 약자TF팀(김지민)</td> <td>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운영</td> </tr> <tr> <td>3</td> <td>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시나브로(임효정)</td> <td>시각장애인 점자 메뉴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제안</td> </tr> <tr> <td>4</td> <td>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어린이 학버스TF팀(김주환)</td> <td>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td> </tr> </tbody> </table> <p><b>4.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현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일자: 7. 31.(수)</li> </ul>			구분	팀명(대표자)	공모제목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Green girl(양현진)	그린 맨 플러스	2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사회적 약자TF팀(김지민)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운영	3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시나브로(임효정)	시각장애인 점자 메뉴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제안	4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어린이 학버스TF팀(김주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구분	팀명(대표자)	공모제목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Green girl(양현진)	그린 맨 플러스																
2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사회적 약자TF팀(김지민)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운영																
3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시나브로(임효정)	시각장애인 점자 메뉴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제안																
4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어린이 학버스TF팀(김주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 제출방법 : 인터넷 신청
- 내 용

구분	단체명(대표자)	사업제목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교통안전 TF팀(양현진)	성남시 교통약자를 위한 그린맨 플러스 카드 도입
2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점자메뉴판 TF팀(임효정)	성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뉴판 설치 지원
3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흡연부스 TF팀(이지훈)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
4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사회적 약자TF팀(김지민)	성남시 공연장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지원

### 5. 정책제안서 피드백 보완 2차 제출 기간 안내

- 2019. 8. 19.(월)까지 간사선생님께 검토 받은 후 카페 제출

### 6. 추후 일정안내

- 성남시청소년토크콘서트 : 8. 17.(토), 성남시청 한누리
- 제안대회 설명회: 8. 31.(토), 중원청소년수련관 공연장
- 청소년 주간: 9. 7.(토)
- 9차 정례회의: 9. 21.(토), 재단 사무국 차오름실
- 10차 정례회의: 10. 12.(토), 성남시의회 회의실
- 11차 정례회의: 10. 26.(토), 성남시의회 회의실
- 제9회 성남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 11. 9.(토), 성남시청 한누리
- 학교 별 중간고사 일정 확인

학교	기간	학교	기간
야탑중	9/25~9/27	이매중	9/30~10/2
효성고	10/7~10/11	복정고	10/7~10/11
송신여고	9/30~10/2	분당고	9/30~10/2
성일중	10/10~10/11	이우고	10/22~10/24
태원고	10/7~10/11	성일정보고	10/10~10/11
성남고	10/7~10/11	풍생고	10/7~10/11

### 7. TF팀별 회의 및 결과 발표

- 청년복지 TF팀 : 정책제안서 출처에 대한 보완 진행 중
- 청소년 인권 FT팀 : 성남시 청소년 인권조례 제안서 수정·보완이 완료되어 다른 정책 의제를 발굴하려고 검토중임. 현재 까지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고 있으나, 상위 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청소년 법률 지원 TF팀 : 부천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연락을 해 기관방문을 추진하여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정책제안서 수정 보완을 추진하고자 함.
- 흡연부스 TF팀 : 표에 대한 부가 내용, 자료 설명내용 추가 등 자료를 다듬는 작업 추진
- 사회적 약자 TF팀 : 주민참여예산 등 추진하면서 수정·보완된 내용에 맞춰 제안서 보완 작업 진행 추진중
- 청소년 미래카드 TF팀: 8월 12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를 시행한다는 공지가 있어, 정책의 중복성이 정책의제 변경이 필요함. 미혼모를 위한 정책 검토중
- 어린이 통학버스타입: 성남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추진, 현재 100명 참여 완료, 청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예정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9차 회의록

일 시	2019. 09. 21.(토) 09:30~12:30	장 소	성남시의회 세미나실
진행자	김대희 의장	기록자	청년자문위원 김주환
참석자 (총 21명)	- 의원: 김대희 김용훈 김준서 김지민 박건우 박성원 신가원 신유림 양현진 유희민 윤태호 이민하 이서윤 이세미 이유진 이지훈 이해인 임효정 - 간사 및 청년 자문위원, 3대 의원: 김마리 김선울 김주환 최선웅 김정하		
주요안건	1. 공지사항 전달 2. 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가능 요일 및 시간 조사 3. 제3회 국제청소년컨퍼런스 IN 성남 참석자 수요 조사 4. 권위된 특별위원장직 보궐 선거 5. TF팀 별 회의 결과 보고 6. 각 상임위원회 별 회의 결과 보고		
회의내용	1. 공지사항 전달 (1) 2019 국민생각함 청소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2등(1건), 체험상(3건) 2. 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가능 요일 및 시간 조사 (1) 수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5시 반이 현실적인 시간 3. 제3회 국제청소년컨퍼런스 IN 성남 참석자 수요 조사 (1) 신가원 의원, 국제청소년컨퍼런스 참석 예정 (2) 2박 3일 참석자: 김지민, 이해인, 임효정, 양현진, 윤태호, 이민하, 김용훈, 이서윤, 이유진 의원 등 참석 ① 컨퍼런스 전체 참가 희망 청소년 별도 신청(판교청소년수련관) 필요 (3) 10월 31일 참석자: 김대희, 김준서, 이세미, 박건우, 유희민 의원 등 참석 ① 김마리 간사님께 연락드리면 참석 가능 4. 권위된 특별위원장직 보궐 선거 (1) 대외교류특별위원회 - 참석 위원: 총원 6명 중 김대희, 유희민, 이세미, 이유진 의원 등 4명 - 후보자: 이세미 의원 - 선거 결과: 이세미 의원(4표) - 당선자: 이세미 의원 당선 (2) 정책연구특별위원회 - 참석 위원: 총원 8명 중 이해인, 양현진, 신유림, 임효정, 김지민 의원 등 5명 - 후보자: 임효정 의원, 신유림 의원 - 선거 결과: 임효정 의원(3표), 신유림 의원(2표) - 당선자: 임효정 부의장 당선 5. TF팀 별 회의 결과 보고 (1) 사회적 약자 TF팀 - 간담회 발표자: 임효정, 김서현 의원 - 희망 상임위원회: 공연장-교육문화 / 점자 - 인권권익 / 그린맨 플러스 - 환경복지 - PPT 제작: 공연장 - 김지민 / 그린맨 플러스 - 이민하 / 그린맨 플러스 - 양현진 (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TF팀 - 간담회 발표자: 김지민 의원 - 희망 상임위원회: 교육문화 상임위원회		

- ppt 제작: 김주환 자문위원

(3) 청년복지 TF팀

- 간담회 발표자: 유희민 의원
- 희망 상임위원회: 환경복지 상임위원회
- ppt제작: 김대희 의장, 김준서 의원

(4) 청소년 법률지원 TF팀

- 간담회 발표자: 신가원 의원
- 희망 상임위원회: 인권권익 상임위원회
- ppt 제작: 이유진 의원, 최민석 의원

(5) 청소년 인권 TF팀

- 간담회 발표자: 이해인 의원
- 희망 상임위원회: 인권권익 상임위원회
- ppt 제작: 추후 역할 분담

(6) 흡연부스 TF팀

- 간담회 발표자: 이세미 의원
- 희망 상임위원회: 환경복지 상임위원회
- ppt 제작: 이서윤 의원, 김용훈 의원

(7) 거점센터 TF팀

- 추후 내용 변경 후 결정

**6. 각 상임위원회 별 회의 결과 보고**

(1) 인권권익상임위원회

- 안건: 점자, 청소년 법률, 청소년56년 인권조례 등 3건
- 10월 12일 일정: 각자 조사할 것, 12일에 모여서 정책보완 사항 논의 할 것.
- 역할분담: 사실여부- 조은영, 법제실무- 김대희, 김지민, 이지훈  
법률위배-임효정, 박성원 / 타지자체사례: 박성원

(2) 교육문화상임위원회

- 안건: 어린이통학버스, 공연장 보조 조례 등 2건
- 역할분담: 사실여부-최윤서 / 법률위배-김서현, 윤태호 / 법제실무-장주빈, 정다인  
타 지자체-이민하, 정책보완-김준서 / 총평은 나중에 할 것.

(3) 환경복지상임위원회

- 안건: 그린맨플러스,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길거리 흡연부스 조례 등 3건
- 10월 12일 일정: 10월 12일까지 자료조사 완료, 이후 다른 사항 논의
- 역할분담: 그린맨플러스 - 이세미, 이서윤, 김용훈 / 길거리 흡연부스: 유희민, 양현진, 이해인  
청년복지: 박건우, 최민석, 이유진

결정사항

회의 내용 참고

건의사항 및 기타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0차 회의록

일시	2019. 10. 12.(토) 09:30~11:10	장소	성남시의회 행복의회 회의실
진행자	김대희 의장	기록자	최민석 (총서기)

참석자 (총 21 명)	- 의원: 김대희 김서현 김지민 박건우 박성원 신가원 신유림 양현진 유희민 윤태호 이민하 이지훈 이해인 장주빈, 정다인, 최민석, 최윤서 - 간사 및 청년 자문위원: 김마리 김선울 김주환
-----------------	--

주요안건	1. 공지사향 전달 및 향후 일정 안내 2. 상임위원회 심의 3. 칭찬카드 결과
------	--

회의내용	1. 공지사향 전달 및 향후 일정 안내 (1) 행복의회 향후 일정 안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일시</th> <th>장소</th> </tr> </thead> <tbody> <tr> <td>자문단 간담회</td> <td>10. 23.(수) 18:00</td> <td>성남시청 모란관</td> </tr> <tr> <td>10월 2차 전체회의</td> <td>10. 26.(토) 09:30</td> <td>성남시의회 회의실</td> </tr> <tr> <td>국제 청소년 컨퍼런스</td> <td>10. 31.(목) 09:00</td> <td>국립국제교육원</td> </tr> <tr> <td>성남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본선)</td> <td>11. 9.(토) 14:00</td> <td>성남시청 한누리</td> </tr> <tr> <td>11~12월 전체회의</td> <td>11. 23.(토), 12.7.(토), 12.14.(토)</td> <td>성남시의회 회의실</td> </tr> <tr> <td>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td> <td>12.20.(금) 16:00</td> <td>성남시의회 본회의장</td> </tr> </tbody> </table>	구분	일시	장소	자문단 간담회	10. 23.(수) 18:00	성남시청 모란관	10월 2차 전체회의	10. 26.(토) 09:30	성남시의회 회의실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	10. 31.(목) 09:00	국립국제교육원	성남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본선)	11. 9.(토) 14:00	성남시청 한누리	11~12월 전체회의	11. 23.(토), 12.7.(토), 12.14.(토)	성남시의회 회의실	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	12.20.(금) 16:00
구분	일시	장소																			
자문단 간담회	10. 23.(수) 18:00	성남시청 모란관																			
10월 2차 전체회의	10. 26.(토) 09:30	성남시의회 회의실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	10. 31.(목) 09:00	국립국제교육원																			
성남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본선)	11. 9.(토) 14:00	성남시청 한누리																			
11~12월 전체회의	11. 23.(토), 12.7.(토), 12.14.(토)	성남시의회 회의실																			
제4대 행복의회 본회의	12.20.(금) 16:00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2) 자문단 간담회 안내																				
	- 일시 및 장소: 10. 23.(수) 18:00 성남시청 모란관, 17:50분까지 입실 완료																				
	- TF팀별 피피티 제출일 10.16.(수)까지 행복의회 카페 게시																				
	- 주요 전달 정책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주제</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성남시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td> <td>-성남시 공공 공연장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좌석 지정 -민간운영시설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권장 및 지원</td> </tr> <tr> <td>2</td> <td>「성남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 점포 점자 메뉴판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신설</td> <td>-성남시에 위치하는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점포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뉴판을 설치 및 운영 •점자메뉴판 제작 지원 •점자 메뉴판 구비 점포 혜택</td> </tr> <tr> <td>3</td> <td>「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td> <td>- 그린맨 플러스 카드 정책 도입 제안 •신호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신호등의 간이 횡단보도의 길이에 따라 최저 3초에서 최고 13초까지 연장되어 교통약자의 통행권 보장 도모</td> </tr> <tr> <td>4</td> <td>「성남시 어린이통합버스 안전기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td> <td>-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기준 설정 •3점식 안전벨트, 승객 자동보호장치 6개 이상 설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후방 감지기 및 후방 카메라 설치, 12인승 초과 차량의 경우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실내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 등 - 안전기준 충족 장려</td> </tr> <tr> <td>5</td> <td>「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조례」 신설</td> <td>-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 •연간 최대 600,000원으로 반기별 말일 지급 원칙에 따라 2번으로 분할 지급</td> </tr> </tbody> </table>	연번	주제	세부내용	1	「성남시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성남시 공공 공연장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좌석 지정 -민간운영시설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권장 및 지원	2	「성남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 점포 점자 메뉴판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신설	-성남시에 위치하는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점포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뉴판을 설치 및 운영 •점자메뉴판 제작 지원 •점자 메뉴판 구비 점포 혜택	3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그린맨 플러스 카드 정책 도입 제안 •신호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신호등의 간이 횡단보도의 길이에 따라 최저 3초에서 최고 13초까지 연장되어 교통약자의 통행권 보장 도모	4	「성남시 어린이통합버스 안전기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기준 설정 •3점식 안전벨트, 승객 자동보호장치 6개 이상 설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후방 감지기 및 후방 카메라 설치, 12인승 초과 차량의 경우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실내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 등 - 안전기준 충족 장려	5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조례」 신설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 •연간 최대 600,000원으로 반기별 말일 지급 원칙에 따라 2번으로 분할 지급		
연번	주제	세부내용																			
1	「성남시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성남시 공공 공연장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좌석 지정 -민간운영시설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권장 및 지원																			
2	「성남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 점포 점자 메뉴판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신설	-성남시에 위치하는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점포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뉴판을 설치 및 운영 •점자메뉴판 제작 지원 •점자 메뉴판 구비 점포 혜택																			
3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그린맨 플러스 카드 정책 도입 제안 •신호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신호등의 간이 횡단보도의 길이에 따라 최저 3초에서 최고 13초까지 연장되어 교통약자의 통행권 보장 도모																			
4	「성남시 어린이통합버스 안전기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기준 설정 •3점식 안전벨트, 승객 자동보호장치 6개 이상 설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후방 감지기 및 후방 카메라 설치, 12인승 초과 차량의 경우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실내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 등 - 안전기준 충족 장려																			
5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조례」 신설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 •연간 최대 600,000원으로 반기별 말일 지급 원칙에 따라 2번으로 분할 지급																			

6	「성남시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	-성남시 청소년 법률 지원 센터 운영제안 -청소년 대상 법률지원 및 회복 프로그램, 통합적 법률 사무에 대한 보조 추진
7	「성남시 청소년 인권 조례」 신설	-청소년이 성장하는 데에 있어 보호받을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표현·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사회에 참여할 권리, 복지를 받고 문화 예술을 즐길 권리, 청소년 노동을 보호받을 권리, 가정과 사회 내에서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 등 성남시 청소년이 존중받아야 할 권리들에 대한 보장 제안
8	「길거리 흡연 부스 설치」 제안	-성남시 길거리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및 흡연부스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후 흡연부스 설치

(3) 국제청소년컨퍼런스 안내

- 일시 및 장소: 10. 31.(목) 09:00 국립국제교육원

- 참석인원

- 일정 풀 참석: 김서현, 이민하, 윤태호, 김지민, 양현진, 신가원, 이해인
- 당일 참석: 김대희, 박성원, 박건우, 이지훈

2. 상임위원회 심의

상임위원회	정책	심의내용
환경복지 상임위원회	청년복지	- 기사에 첨부된 사진 등 링크를 거는 것보다 사진을 첨가하여 내용 전달이 쉽게 수정 필요 - 서울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조례를 벤치마킹 하였으나, 성남시 특색을 반영한 내용이 필요
	흡연부스	- 간접흡연에 대한 구체적 용어 정의 필요 - 논문의 경우 캡처보다는 원문 삽입이 필요하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가독성을 높여야함. - 간접흡연과 사망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 제시와 출처 필요 - 설문조사의 다양한 연령확보를 위해 통계 추가 필요 - 성남시 내 구체적인 수치 제시 필요 - 지금까지의 흡연부스와의 차이점 명시 필요
인권권의 상임위원회	점자메뉴판	- 영업자에 대한 용어정의 필요 - 타지자체 사례 추가 확인 - 점자메뉴판 지원 신청 방식에 대한 내용 조례 삽입 필요
	법률지원센터	- 법률위배 및 실무위반사항 없음
교육문화 상임위원회	어린이 통학버스	- '경주', '2점식', '3점식'에 대한 용어정의 필요 - 타지자체 사례 추가 확인 - 3점식 벨트관련 청원자료 내용 추가 필요
	공연장 보조기기	- 부칙 수정 - '증강현실', '투·용자 심사', '예산심사', '설계심사'에 대한 용어정의 필요 - 국외 사례 추가 확인 - 현행법률 추가를 통한 조례 보완 필요

3. 칭찬카드 결과

- 이해인 의원님, 김지민 의원님, 임효정 의원님 (3표)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1차 회의록

일시	2019. 10. 26. (토) 09:30~11:30	장소	성남시의회 행복의회 회의실
진행자	김대희 의장	기록자	최민석 (총서기)
참석자 (총 21 명)	의원: 김대희, 김서현, 김용훈, 김지민, 박건우, 신가원, 양현진, 유희민, 이민하, 이서윤, 이세미, 이유진, 이해인, 임효정, 장주빈, 최민석 간사 및 청년 자문단: 김주환 김마리		
주요안건	공지사향 전달, 상임위원회 심의		

회의내용	1. 공지사향 - 2019.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운영 및 제안서 전달 진행 · 일시 : 10. 23.(수) 18:00 ~ 20:00 · 장소 : 성남시청 모란관 · 내용 : 활동보고, 정책제안 발표, 자문 및 피드백 등 · 주요 전달 정책		
	연번	주제	세부내용
	1	「성남시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성남시 공공 공연장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좌석 지정 -민간운영시설 내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권장 및 지원
	2	「성남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 점포 점자 메뉴판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신설	-성남시에 위치하는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점포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뉴판을 설치 및 운영 ·점자메뉴판 제작 지원 ·점자 메뉴판 구비 점포 혜택
	3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그린맨 플러스 카드 정책 도입 제안 ·신호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신호등의 간이 횡단보도의 길이에 따라 최저 3초에서 최고 13초까지 연장되어 교통약자의 통행권 보장 도모
	4	「성남시 어린이통합버스 안전기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기준 설정 ·3점식 안전벨트, 승객 자동보호장치 6개 이상 설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후방 감지기 및 후방 카메라 설치, 12인승 초과 차량의 경우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실내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 등 - 안전기준 충족 장려
	5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조례」 신설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 ·연간 최대 600,000원으로 반기별 말일 지급 원칙에 따라 2번으로 분할 지급
	6	「성남시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	- 성남시 청소년 법률 지원 센터 운영제한 - 청소년 대상 법률지원 및 회복 프로그램, 통합적 법률 사무에 대한 보조 추진
	7	「성남시 청소년 인권 조례」 신설	-청소년이 성장하는 데에 있어 보호받을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표현·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사회에 참여할 권리, 복지를 받고 문화 예술을 즐길 권리, 청소년 노동을 보호받을 권리, 가정과 사회 내에서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 등 성남시 청소년이 존중받아야 할 권리들에 대한 보장 제안
	8	「길거리 흡연 부스 설치」 제안	- 성남시 길거리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및 흡연부스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후 흡연부스 설치
- 제3회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 in 성남- 전문가컨퍼런스			

- 일시 : 2019. 10. 31.(목) 09:00~12:35
- 장소 : 국립국제교육원(성남시 정자동 소재)
- 내용 : 개회식, 기조연설, 토론 등  
 ⇒ 김대희 의장님 세션 1 Youth, Social Participation and 4th Industrial Revolution 토론 진행(행복의회 사례발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추진)
- 참석자  
 1) 풀참석 : 김서현, 이민하, 윤태호, 김지민, 양현진, 신가원, 이해인  
 2) 당일참석 : 김대희, 이지훈, 임효정, 이세미, 박건우
-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본선)
- 일시 : 2019. 11. 9.(토) 14:00~18:00 (※ 사전 리허설 및 행사준비로 사전에 모임, 모임시간 추후 공지)
- 장소 : 성남시청 한누리(3층)
- 내용 : 본선진출팀 제안발표, 심사 및 시상 등  
 ⇒ 행복의회 의원 전원 청중평가단 참가(사회자 임효정 부의장 제외)

상임위원회	정책	심의내용
환경복지 상임위원회	그린맨 플러스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지난 2009년 '그린맨플러스' 카드를 도입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 카드의 유심칩을 이미 사용 중인 카드에 탑재하여 번거로움을 더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흡연부스	- 담배 관련된 사망자의 10%가 간접흡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의 출처 존재하지 않음 - 현황 조사에서 자체 설문조사 외에 다른 통계 결과를 넣어 사실성을 더 확보했으면 함 - 성남시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 3항에 따르면 흡연 구역에는 흡연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한다. ⇒ 흡연 부스에도 표지판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 지금까지의 흡연부스와 그 개수를 늘리는 것 말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드러나지 않음. 앞서 말한 흡연부스 안의 시설 개선과 사람들이 어떻게 모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제안에 나타나지 않음. 현황 중에 흡연부스가 존재해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보완 할 정책 내용이 있다면 더 추가하였음 함. - 조려화 했을 좋겠다. - 환기팬 시설 설치 및 유지 비용 비쌌음 ⇒ 사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대책 부족
인권권익 상임위원회	청소년인권	- 서울특별시의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중 제4장부터 제5장 '어린이 청소년 인권위원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성남시의 특색에 맞춰 추가 검토 바람
	청소년인권	- 법률지원센터 지원 대상 확대 검토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법률구조 대상자) ①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 / 2. 근로자 및 영세상인 /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4. 국가보훈대상자 5.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 헌법재판소가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7. 법원이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8. 국내 거주 외국인 /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이나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교육문화 상임위원회		- 기존 1차 심의내용을 기반으로 취합 및 총평 작성

-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11/2(토)까지 카페 게시
- 심의결과를 기반으로 11/16(토)까지 TF팀 최종본 카페 게시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2차 회의록

일시	2019. 11. 23. (토) 09:38~11:30	장소	성남시의회 행복의회 회의실
진행자	김대희 의장	기록자	최민석 (총서기)
참석자 (총 21 명)	의원 : 김대희, 김서현, 김용훈, 김지민, 박건우, 신유림, 양현진, 유희민, 윤태호, 이서윤, 이세미, 이유진, 이해인, 임효정, 장주빈, 정다인, 조은영, 최민석, 최윤서 간사 및 자문위원 : 김마리 김주환 김선율		
주요안건	공지사항 전달, 본회의 준비 일정 안내, 원탁토론 안내, TFT 별 회의 및 회의 결과 공유		

회의내용	<p><b>1. 공지사항 전달</b></p> <p>1) 향후 일정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 7일 (토) 제 13차 정례회의 : 본회의 리허설 및 준비</li> <li>- 12월 14일 (토) 제 14차 정례회의 : 본회의 최종 리허설</li> <li>- 12월 20일 (금) 제 4대 행복의회 본회의</li> <li>- 2020년 1월 18일 (토) 제 15차 정례회의 및 해단식 논의</li> <li>- 2020년 중에 해단식</li> </ul> <p><b>2. 본회의 준비 일정 안내</b></p> <p>1) 11월 30일 (토) 까지 제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F팀별 최종 의안 발의 원고 및 발표자 명단</li> <li>- 개회사 : 의장</li> <li>- 활동 경과보고 : 행사추진 특별위원장</li> <li>- 활동소감 : 부의장 (1)</li> <li>- 폐회사 : 부의장 (2)</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소속상임위</th> <th>TF팀명</th> <th>제안명</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교육문화</td> <td>사회적 약자 TF팀</td> <td>성남시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td> </tr> <tr> <td>2</td> <td>인권권익</td> <td>사회적 약자 TF팀</td> <td>성남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 점포 점자메뉴판 지정설치 및 조례</td> </tr> <tr> <td>3</td> <td>환경복지</td> <td>사회적 약자 TF팀</td> <td>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성남시 교통약자를 위한 그린맨 플러스 카드 정책에 관한 제안</td> </tr> <tr> <td>4</td> <td>교육문화</td> <td>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TF팀</td> <td>성남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 </tr> <tr> <td>5</td> <td>환경복지</td> <td>청년 복지 TF팀</td> <td>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td> </tr> <tr> <td>6</td> <td>인권권익</td> <td>청소년 법률지원 TF팀</td> <td>성남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td> </tr> <tr> <td>7</td> <td>인권권익</td> <td>청소년 인권 TF팀</td> <td>성남시 청소년 인권조례</td> </tr> <tr> <td>8</td> <td>환경복지</td> <td>흡연부스 TF팀</td> <td>길거리 흡연부스 설치</td> </tr> <tr> <td>9</td> <td>환경복지</td> <td>가정 밖 청소년 TF팀</td> <td>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조례</td> </tr> </tbody> </table> <p>2) 12월 2일 (월) 까지 제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발언 발의 원고</li> </ul> <p>3) 12월 6일 (금) 까지 제출사항</p>			구분	소속상임위	TF팀명	제안명	1	교육문화	사회적 약자 TF팀	성남시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인권권익	사회적 약자 TF팀	성남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 점포 점자메뉴판 지정설치 및 조례	3	환경복지	사회적 약자 TF팀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성남시 교통약자를 위한 그린맨 플러스 카드 정책에 관한 제안	4	교육문화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TF팀	성남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환경복지	청년 복지 TF팀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6	인권권익	청소년 법률지원 TF팀	성남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7	인권권익	청소년 인권 TF팀	성남시 청소년 인권조례	8	환경복지	흡연부스 TF팀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	9	환경복지	가정 밖 청소년 TF팀
구분	소속상임위	TF팀명	제안명																																							
1	교육문화	사회적 약자 TF팀	성남시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인권권익	사회적 약자 TF팀	성남시 일반음식점 및 식음료 점포 점자메뉴판 지정설치 및 조례																																							
3	환경복지	사회적 약자 TF팀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성남시 교통약자를 위한 그린맨 플러스 카드 정책에 관한 제안																																							
4	교육문화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TF팀	성남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환경복지	청년 복지 TF팀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6	인권권익	청소년 법률지원 TF팀	성남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7	인권권익	청소년 인권 TF팀	성남시 청소년 인권조례																																							
8	환경복지	흡연부스 TF팀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																																							
9	환경복지	가정 밖 청소년 TF팀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조례																																							

- 본회의 발표 PPT
- 4) 자유발언 희망 의원 조사
  - 희망 인원 : 징주빈
- 3. 시민과 함께하는 성남FC 활성화를 위한 성남 시민 300인 원탁토론
  - 일시 : 2019년 11월 30일 (토) 10:30~14:30 (약 4시간)
  - 장소 : 탄천 종합운동장 이벤트 홀
  - 대상 : 330명 (토론 참가자 300명, 토론 테이블 진행자 30명)
  - 주제 : 시민과 함께하는 성남 FC 활성화 방안
    - 제 1의제 : 성남FC 전용 경기장 건립
    - 제 2의제 : 성남FC를 통한 하나된 성남 구현
  - 주요내용 : 식전행사 및 퍼포먼스, 원탁토론 ※ 행복의회 의장, 부의장 참석
-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참가자 조사
  - 일시 : 2019년 12월 15일 (일) 13:30~17:30 (약 4시간)
  - 장소 : 성남시청 한누리
  - 대상 : 120명 (아동 96명, 학부모 16명, 아동관계자 8명) 초등 32명, 중등 32명, 고등 32명
  - 주제 :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아동 친화 도시
  - 혜택 : 자원봉사시간 4시간 인정 (1365 가입 필수)

TF팀명	발표자	역할분담	발표형식 특이사항
사회적 약자 TF팀	김서현	각자 원고와 PPT 작성	PPT, 연극 (그린맨 플러스)
	이민하		
	이현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TF팀	김지민	원고, PPT: 김주환	미정
청년 복지 TF팀	임효정	PPT : 유희민 원고: 김대희	PPT
청소년 법률지원 TF팀	미정	미정	연극 없음, 영상 자료 활용
청소년 인권 TF팀	미정	연극: 박건우 윤태호 대본: 이해인 PPT: 간담회 자료	연극, PPT
흡연부스 TF팀	이세미	PPT: 김용훈, 이서운 원고: 이세미	연극, PPT
가정 밖 청소년 TF팀	최윤서	미정	X

결정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3차 회의록

일시	2019. 12. 07.(토) 09:30~11:30	장소	성남시의회 행복의회 회의실
진행자	김대희 의장	기록자	홍승민(청년자문위원)
참석자 (총 21명)	의원 : 김대희 김용훈 김지민 신가원 신유림 윤태호 이민하 이서윤 이세미 이유진 이해인 임효정 정다인 조은영 최운서 간사 및 자문위원 : 김마리 김주환 김선울 홍승민		
주요안건	공지사향 전달, 본회의 관련 공지 및 결정, 본회의 리허설, TFT 별 회의 및 회의 결과 공유		
회의내용	<p><b>1. 공지사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남 시립 박물관 건립 관련 시민 공론장 ; 청소년 대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남시 청소년 대표로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원 참석 :</li> <li>(2) 예정 일시 : 1월 4일 토요일</li> <li>(3) 장소 : 의회 세미나실, 50명</li> <li>(4) 희망 시간 : 오전 : - / 오후 : 다수</li> <li>(5) 당일 참석 가능 인원 : 김대희, 김지민, 이해인, 이민하 의원 (단독방 추가 모집)</li> </ul> </li> <li>▶ 본회의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2월 20일 13시까지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집결</li> <li>(2) 정상 출석 불가 : 김지민 의원 (14시까지 출석)</li> </ul> </li> <li>▶ 본회의 역할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개회식 사회자 : 김지민 의원</li> <li>(2) 윤리헌장 낭독자 : 이서윤, 이해인 의원</li> </ul> </li> <li>▶ 본회의 당일 복장 : 교복으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찬반조사 : 교복(제적인원14명/찬성11명), 그 외 복장 (개인적 사정으로 교복 착용이 불가한 의원들은 적절한 자율 복장)</li> </ul> </li> <li>▶ 본회의 질의응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부스 TF : 흡연부스 실효성에 관한 질의 (이유진 의원)</li> <li>(2) 법률지원상담센터 TF : 상담복지센터와 정책 대상이 중복 여부에 대한 질의 (이민하 의원)</li> </ul> </li> </ul> <p><b>2. 본회의 리허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언자는 먼저 의장에게 인사 후, 다음으로 의원석을 향해 인사</li> <li>(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TF/발표자 김지민] : 자연스러운 어투 반영해 대본 일부 수정</li> <li>(3) [사회적약자TF/발표자 김서현] : 발표자 불참</li> <li>(4) [사회적약자TF/발표자 이민하] : 대본 일부 수정 (권리 구제 방지 → 권리 구제)</li> <li>(5) [청소년법률지원상담센터TF/발표자 이유진, 신가원] :</li> <li>(6) [청소년인원TF/발표자 이해인] : 연극 완성되는 대로 진행 순서 알릴 것, 대본 일부 수정</li> <li>(7) [사회적약자TF/발표자 양현진] : 발표자 불참</li> <li>(8) [청년복지TF/] : 발표자 불참</li> <li>(9) [가정밖청소년TF/발표자 최운서] : '가정 밖 청소년' 개념에 대해 추가적인 소개를 할 것, 대본 일부 수정</li> <li>(10) [흡연부스TF/발표자 이세미] : 대본 자연스럽게 전면 재작성, 통계 자료 인용 시 문장 주술 관계 자연스럽게 수정, 정책 세부 사항 보완, 질의응답 준비</li> <li>(11) 질의응답 : [흡연부스TF/이민하 의원 질의]</li> <li>(12) 자유발언 : (대본;기성세대→사회로 단어 변경)(아동 김지민 의원: 11일까지 간사 선생님께 전달!)</li> <li>(13) 소감 및 자문 : 김서현 의원</li> <li>(14) 폐회사 : 임효정 부의장</li> </ul>		
결정사항	1. 본회의 참석 복장은 교복(개인적 이유로 교복 착용 불가 의원은 자율 복장 착용) 2. 본회의 역할 분담		
건의사항 및 기타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4차 회의록**

<b>일시</b>	2019. 12. 14. (토) 09:30~11:30	<b>장소</b>	성남시의회 행복의회 회의실																						
<b>진행자</b>	김서현, 임효정 부의장	<b>기록자</b>	최민석 (총서기)																						
<b>참석자 (총 21명)</b>	의원: 김서현 김용훈 김지민 박건우 신가원 신유림 유희민 이민하 이서윤 이유진 양현진 장주빈 정다인 조은영 최민석 간사 및 청년 자문단: 김주환 김선율 김마리 홍승민																								
<b>주요안건</b>	1. 향후 일정 및 본회의 참가 조사 및 안내 2. 상임위원회 최종 의결																								
<b>회의내용</b>	1. 공지사항 ▶ 향후 일정 안내 - 12. 20. (금) 제 4대 행복의회 본회의 - 2020. 1. 4. (토) 성남 시립 박물관 건립을 위한 청소년 참여 공론장 (13:00~17:00) - 2020. 1. 18. (토) 제 15차 정례회의 및 해단식 논의 - 2020. 2월 중 해단식 ▶ 본회의 참가 조사 및 안내 - 13:00까지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집결 - 본회의 업무 분장확인 • 사회자: 김지민 의원님 / • 윤리헌장 낭독: 이해인, 이서윤 의원님 • 개회사: 김지민 의원님 / • 활동 경과 보고: 이민하 의원님 • 자유발언(5분): 장주빈, 김지민 의원님 / • 참여소감: 김서현 의원님 • 폐회사: 임효정 의원님 / • 의안 발표(7분->6분) -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 TF팀: 김지민 의원님 - 사회적 약자 TF팀: 김서현 의원님(공연장), 이민하 의원님(점자), 양현진 의원님(교통약자) - 청년 복지 TF팀: 임효정 의원님 - 가정 밖 청소년 TF팀: 최윤서 의원님 - 청소년 법률 지원 TF팀: 신가원, 이유진 의원님 (연극 있음) - 청소년 인권 TF팀: 이해인 의원님 (연극 있음) - 흡연 부스 TF팀: 이세미 의원님 (연극 있음) 2. 각 상임위원회 최종 의결																								
	<table border="1"> <thead> <tr> <th>상임위원회</th> <th>조례명</th> <th>의결 결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인권권익 상임위원회</td> <td>성남시 청소년 법률 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td> <td>총원 4명 찬성 4표 반대 0표 기권 0표 최종 가결</td> </tr> <tr> <td>성남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뉴판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td> <td>총원 4명 찬성 4표 반대 0표 기권 0표 최종 가결</td> </tr> <tr> <td>성남시 청소년 인권 조례안</td> <td>총원 4명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0표 최종 가결</td> </tr> <tr> <td rowspan="3">환경복지 상임위원회</td> <td>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td> <td>총원 6명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0표 최종 가결</td> </tr> <tr> <td>「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td> <td>총원 6명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 최종 가결</td> </tr> <tr> <td>흡연부스</td> <td>총원 6명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 최종 가결</td> </tr> <tr> <td rowspan="2">교육문화 상임위원회</td> <td>성남시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td> <td>총원 6명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0표 최종 가결</td> </tr> <tr> <td>성남시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 기준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td> <td>총원 6명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0표 최종 가결</td> </tr> </tbody> </table>	상임위원회	조례명	의결 결과	인권권익 상임위원회	성남시 청소년 법률 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원 4명 찬성 4표 반대 0표 기권 0표 최종 가결	성남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뉴판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원 4명 찬성 4표 반대 0표 기권 0표 최종 가결	성남시 청소년 인권 조례안	총원 4명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0표 최종 가결	환경복지 상임위원회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총원 6명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0표 최종 가결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총원 6명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 최종 가결	흡연부스	총원 6명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 최종 가결	교육문화 상임위원회	성남시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원 6명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0표 최종 가결	성남시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 기준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원 6명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0표 최종 가결		
상임위원회	조례명	의결 결과																							
인권권익 상임위원회	성남시 청소년 법률 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원 4명 찬성 4표 반대 0표 기권 0표 최종 가결																							
	성남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뉴판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원 4명 찬성 4표 반대 0표 기권 0표 최종 가결																							
	성남시 청소년 인권 조례안	총원 4명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0표 최종 가결																							
환경복지 상임위원회	성남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총원 6명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0표 최종 가결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총원 6명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 최종 가결																							
	흡연부스	총원 6명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 최종 가결																							
교육문화 상임위원회	성남시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 보조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원 6명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0표 최종 가결																							
	성남시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 기준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원 6명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0표 최종 가결																							
<b>결정사항</b>	<b>건의사항 및 기타</b>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회의록

일 시	2020. 01. 18. (토) 9:30~11:30	장 소	성남시의회 행복의회 회의실
진행자	김대희 의장	기록자	최민석 (총서기)
참석자 (총 21명)	의원: 김대희 김서현 김용훈 김지민 신가원 유희민 윤태호 이민하 이서윤 이세미 이유진 정다인 조은영 최민석 간사 및 청년 자문단: 김주환 김선울 김마리 홍승민		
주요안건	1. 본회의 평가 회의 2. 제 5대 행복의회 모집 계획, 연임 신청서 작성, 선관위 구성 3. 18세 선거권 확대에 대한 의견 공유 4. 제 4대 행복의회 해단식 논의		
회의내용	<p><b>1. 본회의 평가 회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지민: 처음에는 많았던 내빈 분들이 중간에 모두 가셔서 아쉬웠다</li> <li>- 김용훈: 의안 표결과정에서 의장님의 말 실수가 아쉬웠다.</li> <li>- 윤태호: 값진 경험 했던 것 같다.</li> <li>- 이민하: 개인적으로 의장님께 인사를 하지 않은 실수가 아쉽다.</li> <li>- 신가원: 뜻깊은 시간이었다.</li> <li>- 최민석: 처음에는 많았던 내빈 분들이 중간에 모두 가셔서 아쉬웠다.</li> <li>- 김서현: 준비했던 것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 좋았다.</li> <li>- 김대희: 본회의에서 발의한 제안들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 지 미지수인 상태에서 내용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더욱 홍보했으면 좋을 것 같다.</li> </ul> <p><b>2. 제5대 행복의회 모집 계획</b></p> <p>1) 추진 일정 : 1차 서류 심사 - 2차 면접 심사 및 오리엔테이션 - 3차 청소년 선거 - 최종 당선자 공고</p> <p>2) 대상: 14세~18세 (2003년생~2007년생), 2020년 기준</p> <p>3) 모집인원: (35명) - (제4대 연임 의원 수)</p> <p>4) 선거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온라인: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개별적으로 전자투표 시스템 접속</li> <li>② 오프라인: 상시 오프라인 투표소 설치 (노트북을 통한 전자 투표 시스템 접속) 단기 오프라인 투표소 설치 (노트북을 통한 전자 투표 시스템 접속)</li> </ul> <p><b>3. 제5대 행복의회 연임 신청서 작성</b></p> <p>1) 대상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18세 청소년</li> <li>- 제4대 행복의회 신규 의원 (제3대 연임 의원은 해당 X)</li> </ul> <p>2) 임기: 2020.7. ~ 2021. 6.</p> <p>3) 제출서류: mary922@snyouth.or.kr 이메일 제출</p>		

- 1월 23일 목요일까지 : 연임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 2월 10일 월요일까지 : 정책제안서

4) 유의사항 : 연임의원을 제외한 인원에 대한 신규 모집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할 것

#### 4. 제5대 행복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의장단 및 연임의원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예정

#### 5. 18세 선거권 확대에 대한 의견 공유

#### 6. 제4대 행복의회 해단식 논의

- 1) 일시: 2020년 02월 22일 (토) (오전 11시) (당일)
- 2) 장소: 시의회 세미나실
- 3) 대상 (내빈) : 전미영, 손영민 쌤, 진미석 대표이사님, 마리쌤, 임정미 의원님, 박은미 의원님, 이학현 쌤, 김용기 보도국장님, 신용자 청소년 팀장님, 이재영, 변호용 팀장님, 자문위원님들, 행교체 의원님들, 의장님, 사퇴한 의원님, 친구들, 차세대 위원회 위원장님, 1, 2, 3대 행복의회 의원님, 학교 선생님 등)
- 4) 내용: 상장수여, 경과보고, 활동영상 상영 등
- 5) 업무 분장 (추후 변경 가능)
  - 해단사: 의장
  - 경과보고: 중등, 고등 부의장
  - 초대장 제작: 김지민 의원님
  - 공로자 상장 수여 : 공로자 대상 상장을 수여할 계획, 상 이름은 의원들 전체 분배해서 창의적으로 정해서 제출할 것(의장님이 배정해서 추후에 카톡방에 공지
  - 축사: 사퇴 및 제명등의 이유로 중도에 의회를 그만 둔 의원

결정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정활동보고서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행복의회 부록**



구분	소속			성명	비고
	학교/학년	상임위원회	TF팀		
수정구	북정고등학교 2학년	인권권익상임위원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TF팀 사회적 약자 TF팀	김지민	2명
	송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환경복지상임위원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TF팀 사회적 약자 TF팀	양현진	
중원구	성남고등학교 2학년	인권권익상임위원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TF팀 청년복지 TF팀	김대희	12명
	성일중학교 3학년	교육문화상임위원회	사회적 약자 TF팀	김서현	
	효성고등학교 1학년	환경복지상임위원회	흡연부스 TF팀	김용훈	
	성남고등학교 2학년	환경복지상임위원회	청소년 인권 TF팀	박건우	
	성일정보고등학교 3학년	환경복지상임위원회	청년복지 TF팀	유희민	
	성일중학교 3학년	교육문화상임위원회	사회적 약자 TF팀	이민하	
	풍생고등학교 1학년	환경복지상임위원회	흡연부스 TF팀	이서윤	
	효성고등학교 1학년	환경복지상임위원회	청소년 법률지원 TF팀	이유진	
	성일정보고등학교 3학년	인권권익상임위원회	사회적 약자 TF팀 청년복지 TF팀	임효정	
	성일중학교 2학년	교육문화상임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 TF팀	정다인	
	성일중학교 2학년	인권권익상임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 TF팀	조은영	
	성일중학교 2학년	교육문화상임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 TF팀	최윤서	
분당구	이매중학교 3학년	인권권익상임위원회	청소년 법률지원 TF팀	신가원	7명
	판교중학교 2학년	교육문화상임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 TF팀	신유림	
	이우고등학교 1학년	교육문화상임위원회	청소년 인권 TF팀	윤태호	
	분당경영고등학교 2학년	환경복지상임위원회	흡연부스 TF팀	이세미	
	분당고등학교 1학년	환경복지상임위원회	청소년 인권 TF팀	이해인	
	야탑중학교 3학년	교육문화상임위원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TF팀	장주빈	
	야탑중학교 3학년	환경복지상임위원회	청소년 법률지원 TF팀	최민석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활동보고서

발행일 : 2020년 2월

발행처 :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031-729-9054

<http://www.snyouth.or.kr>